

第234回國會
(定期會)

政務委員會會議錄

第4號(附錄)

國會事務處

日 時 2002年10月22日(火)

場 所 政務委員會會議室

【서면질의·답변서】

(질의서)

(국무조정실)

○趙在煥 委員

정책연구비 관련 질의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각 연구회의 정책연구비 책정은 '00년도부터 '03년도까지 매년 동일한 액수로 반영이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 연구과제 수탁 시 정부의 눈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회가 각 주무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정부부처에 소속되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회제도의 본래 취지는 독립성과 연구자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는데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 현재의 연구회체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정책연구비제도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매년 고정적으로 20~50%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연구회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인문사회연구회 소속 연구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상 외부용역이 적기 때문에 정부 부처의 과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3개 기술연구회처럼 각 부처에 편성된 정책연구비 50%를 연구회예산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묻겠습니다.

- 기초과학기술은 단기과제보다는 중장기과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연구과제는 단기과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 3개 기술연구회는 각 부처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50%를 연구회 예산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수의계약의 한도액인 3000만 원의 한계로 인해 부실연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강릉분원 설립사업 관련해 한국과학기술연구원장에게 묻겠습니다.

- 강릉분원 설립목적은 무엇입니까?
- 설립사업 주요 사업내역은 무엇입니까?
- 현재까지 어느 정도의 진척상황을 보이고 있습니까?
- '01년, '02년 예산 중 이월된 예산이 67억 7800만 원을 이월시켜서 내년 예산 30억 원과 함께 총 97억 7800만 원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데 '01년과 '02년에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 사업변경이 잦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동해안 지역의 기업인프라 부족과 물류경쟁력이 떨어져 종합적인 판단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03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사업수행에 있어서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安大崙 委員

안전관리개선기획단소관 예산관련

다음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소관 예산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국무조정실소관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2003년도 예산안은 4억 2108만 원으로 금년 대비 32.3%가 증가한 1억 263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동 예산이 이처럼 대포 증가한 원인은 연구용역사업비 예산이 2002년도 4000만 원에서 2003년도에는 1억 4000만 원으로 증액되었기 때문이라 봅니다.

특히 안전관리개선기획단의 연구용역사업비 예산 중에 1억 원의 수해방지대책관련 연구비용이 계상되었는데 이 예산은 금년같은 대형급 태풍피해 또는 매년 반복되는 풍수해를 고려한 연구용역사업비라는 점에서 시의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평가합니다.

1. 그러나 연구용역비의 증액 편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연구 용역 결과가 제도개선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면서 재해대책을 보완할 수 있도록 과제선정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보는데 연구용역사업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특히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해복구 대책, 즉 사후대책 연구과제도 중요하지만 댐, 도로, 전기, 통신시설에 대한 사전 수해방지 대책 과제가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전관리개선 기획단의 조직 및 업무집행상의 문제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듯이 기획단의 대부분 조직은 타 부처에서 1년 주기로 파견된 태스크포스(Task-Force) 형태의 임시조직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업무의 연속성, 전문성과 지속적 정책추진을 크게 기대할 수 없다고 봅니다.

더군다나 대부분 조직이 교통안전분야에 집중되고 있어 수해관련 인력 투입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3. 따라서 자연재해대책 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인력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실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崔在昇 委員

국무총리실, '03년 세출예산 전년 대비 9.0% 순증
- 국무조정실, 기후변화협약대책 용역비 700만 원 배정, 산자부·환경부도 계상돼

- 기초과학기술분야 연구회에 대한 예산 반영은 전년 대비 0.3% 순증에 불과해

'03년 국무총리실소관의 세출 예산을 분석한 결과, '02년보다 651억 7100만 원 9.0% 증가한 7875억 2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행정부문의 예산은 '02년 521억 8200만 원보다 5.4% 증가한 550억 1100만 원이 계상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국무조정실의 경우 전년보다 12.8% 감소한 167억 6600만 원이었습니다.

그 주요 감소내용을 살펴보면 주요 사업비 부분의 예산이 '02년 73억 1500만 원에서 42억 5000만 원으로 41.9%가 감소되었는데 구체적인 감소내역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에 신규로 편성된 기후변화협약 대체 예산 7000만 원의 경우 산업자원부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응체제 구축사업으로 25억, 환경부에서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 추진사업으로 4억 5000만 원이 각각 반영돼 있는 등 정부 부처 간 유사예산의 중복 편성이라는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국무조정실소관의 5개 출연연구기관 연구회별 '03년 예산편성 내용을 살펴보면 전년 대비 9.3% 증가한 7325억 1200만 원입니다.

이중 7개 기관을 두고 있는 산업기술연구회가 지난해보다 16.2% 증액된 1692억 500만 원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인문사회연구회(9개 기관)는 13.5% 늘어난 583억 2800만 원, 경제사회연구회(14개 기관)는 12.5% 늘어난 1213억 9700만 원으로 5개 전체 연구회 증가율 9.3%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반면 공공기술연구회(8개 기관)는 8.2% 늘어난 2364억 9900만 원이었고 기초기술연구회는 전년 대비 겨우 0.3% 늘어난 1470억 8300만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기초기술연구회소관의 한국기초과학지원 연구원의 경우 정부 출연금이 지난해 456억 3900만 원에서 17억 9400만 원이 삭감된 438억 4500만 원으로 3.9%가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금년도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일본의 지방대학 학사출신 연구원 『다나카 고이치(田中耕一), 43』씨가 말한 '연구를 위해 다른 동료들이 승진할 때 연구에만 몰두하고자 승진시험조차 거부했다'고 한 사실에 대해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으로 생각됩니다.

한 연구원의 연구 태도가 위대한 발견을 할 수 있었던 원동력이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연구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주변에서 연구 환경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본과 우리의 경우가 다르기는 하겠지만 지방 대학 졸업 후 조그마한 회사실험실에서 세계적인 기술이 개발되고 인류에게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함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특히 우리의 경우 기초과학 기술인력들의 유출이 심각한 실정인 점을 감안 시 국책 연구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원들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필요 예산의 확보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이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국무조정실장은 다른 연구회에 비해 특히 기초기술연구회의 예산 증액 폭이 적은 것은 무엇 때문인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柱宣 委員**

수해방지대책기획단 설치의 문제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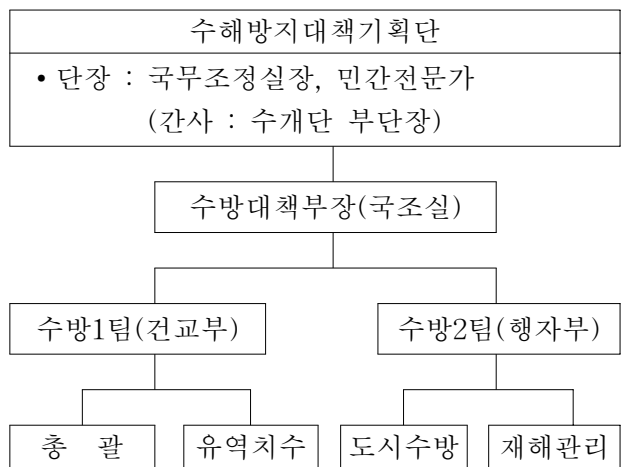
1. 현 황

- 국무조정실은 2003년 3월을 목표로 국무총리 산하에 수해를 근원적·항구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립키로 하고 현재 관계부처와 협의 중
- 수해방지기획단
 - 단장 : 민관공동(국무조정실장, 민간전문가)
 - 간사 : 수질개선기획단 부단장(겸임)
 - 위원 : 관련부처 실국장 및 민간전문가 30명 내외
 - 기능 : 근원적 수해방지특별대책 수립
 - 분과회의 : 분야별 전문가로 유역치수분과, 도시수방분과, 법령·제도분과, 재해관리분과 등 4개 분과회의의 구성
- 사무국
 - 구성 : 관계부처 공무원 및 민간전문가(과전)
 - 기능 : 대책(안) 사전 검토·조정 및 추진상황 지원·점검

구 분	담 당 업 무
수개단 부단장	○기획단 지원업무 총괄

수방대책부장	○사무국 업무 총괄
수방 1팀장 (사무관3, 전문가3)	○사무국 업무 총괄 ○유역치수분과회의 관련업무 지원 ○법령·제도 분과회의 관련 업무 지원
수방 2 팀장 (사무관2, 전문가2)	○도시수방분과회의 관련업무 지원 ○재해관리분과회의 관련업무 지원

<조 직 도>



2. 문제점

- 이미 99년 9월 11일 대통령비서실에 민간전문가와 관계공무원으로 구성된 수해방지기획단을 한시적 조직으로 설치하여 12월 말까지 4개월간 운영한 전례가 있습니다.
- 당시 기획단은
 - 수해에 강한 국토, 안전한 국민생활 보장, 정부에 대한 신뢰 제고라는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면서,
 - 하천유역별 종합치수대책 등 투자사업(47개)과 방재사전심의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64개), 기구개편(8개) 등 총 119개 과제 추진
 - 경기·강원북부지역에 대한 특별대책 추진
 - 향후 10년간(2000~2009) 총 24조 원, 연 평균 2.4조 원 투입을 골자로 하는 수해방지 종합대책 발표합니다.
- 이러한 종합적 진단과 처방에도 불구하고 재해피해는 줄지 않고 복구비만 천문학적으로 늘어나는 기가 막힌 상황이 벌어집니다.
- 올해 자연재해 복구비는 총 9조 358억 원으로 91년~2000년까지 10년치 복구비 총액 9조 5798억 원에 육박하며, 전체 정부예산의(2002

<재해피해 및 복구비 현황>

구 분	98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
전체예산	77조 5,829억 원	83조 6,851억 원	88조 7,363억 원	99조 1,801억 원	109조 6,298억 원	111조 6,580억 원
주요재해관련사업예산	1조 2,275억 원	1조 7,739억 원	1조 7,549억 원	1조 9,873억 원	1조 8,915억 원	2조 2,770억 원
비 중	1.6%	2.1%	2.0%	2.0%	1.7%	2.0%
재해피해액	1조 5,828억 원	1조 2,196억 원	6,454억 원	1조 2,560억 원	6조 1,038억 원	
복 구 비	2조 2,293억 원	2조 1,261억 원	1조 5,330억 원	1조 8,650억 원	9조 358억 원	

년도 예산 109조 6298억 원 기준) 8.2%를 차지하는 천문학적인 규모로 내년도 정부의 문화예산(1조 4266억 원), 정보화예산(1조 6817억 원), 환경개선예산(2조 9687억 원), 수출·중소기업예산(2조 429억 원)을 합친 것보다 많습니다.

- 자연재해예방비가 투입될수록 복구비가 줄어들어야 하는 것이 상식이지만 수해방지종합대책에도 불구하고 복구비가 오히려 2배~5배까지 늘어나고 있어 정책집행과 관리, 감독에 심각한 문제점을 드러냅니다.

(질 의)

국무조정실장, 이미 99년 대통령비서실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설치되어 2009년까지 추진할 종합대책을 내놓았는데 또다시 국무총리 산하에 똑같은 목적과 기능을 가진 기획단을 설립하려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9년 이후 항구복구를 목적으로 막대한 복구비와 예방비가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복구비가 오히려 더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특히 올해 9조 358억 원이라는 막대한 복구비가 소요된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대규모 수해는 기상이변에 따른 불가피한 면도 있으나 예방노력 미흡과 관리 소홀이 더 큰 원인으로 강력한 감독과 관리 권한을 지니는 특별재해관리기구가 필요합니다. 70여 개 법률과 각 부처로 분산·추진되고 있는 재해관련업무의 전문성 부족과 관리 소홀이 가장 큰 원인으로 기획단 설치로 해결

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해예방노력 미흡과 관리 소홀의 대표적 실태를 살펴보면,

1. 하천수해의 95%가 집중되고 있는 지방2급 하천 및 소하천의 정비 방지
 - 최근 새로운 기후 형태에 따른 국지성 호우 집중으로 기존의 최대강우량을 상회하는 경우가 빈발하면서 하천 정비율이 낮은 지방2급 하천과 소하천에 홍수수해 집중
 - 그러나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지방하천의 경우 자치단체의 재정 및 관심부족으로 투자 우선순위에서 뒤떨어집니다.

<시·도별 지방2급 하천개수율 현황>

시·도	개 수 율(%)
강 원 도	57.81%
경 상 북 도	64.16%
경 상 남 도	66.99%
제 주 도	27.57%
전 라 북 도	60 %
전 라 남 도	65.5 %
충 청 북 도	69.00%
충 청 남 도	82.84%
경 기 도	85.54%
울 산	57.78%
광 주	77.43%
대 전	99.92%

시·도	개수율(%)
인천	91.71%
대구	66.48%
부산	96.02%
서울	99.18%

2. 한국 최대의 산림지역인 강원도에 산사태 복구전문기관, 인력 전무

137만 2423ha 산림면적을 가지고 있는 강원도의 올해 산사태 피해면적은 973ha, 복구비용은 924억 9700만 원입니다.

그러나 강원도와 충청남도에는 산사태를 예방하고 복구하는 전문기관과 인력이 전혀 없어 산사태 예방과 복구에 무방비상태입니다.

강원도의 산사태의 예방·복구를 전담하는 산림환경연구소가 97년까지 존속하다가 구조조정으로 해체되었습니다.

<산사태 예방·복구 전문기관 및 인력현황>

도 별	복구전문기관	인원
계		88명
경기	산림환경연구소 (산림토목과)	10
충북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	7
전북	산림환경연구소 (산림관리과)	10
전남	산림환경연구소 (산림보전과)	10
경북	산림환경연구소 (산림사업과, 북부지소, 서부지소)	39
경남	산림환경연구원 (산지관리과)	12

3. 자연재해 예방, 관리복구 전문인력 부족 심각

이번 수해에 가장 극심한 피해를 입은 강원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가 제출한 2002년도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의 근무경력을 보게 되면, 강원도의 경우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인원 6명 중 1년 미만 근무자가 5명으로 전문인력 부족이 극심한 피해를 키운 원인으로 드러납니다.

이밖에 중앙재해대책본부, 하천관리위원회, 유량측정, 홍수에·경보시설에 전문인력이 부족합니다.

4. 전국하천망 및 하천전산화 지도 추진실적 부진

99년 이후 국가하천을 대상 111억 78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전산화사업을 진행하였으나 수해가 집중되는 지방하천은 계획조차 없는 실정입니다.

5. 2000. 1 이후 홍수조절용 저류지 추진실적 전무

댐의 방류로 인한 하류저지대의 홍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홍수조절용 저류지 설치를 의무화하였으나 추진실적이 전무합니다.

(질 의)

국무조정실장,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앞으로 정부정책에서 재해 예방, 관리사업의 우선순위가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의 대규모 재해는 정부정책의 부재보다는 집행체계 혼선과 감독관리기능 부재에 큰 원인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70여 개의 각종 법령, 각 부처에 분산된 재해업무의 중복과 비능률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재해 예방노력 부족에 그 원인이 있습니다.

이는 총리산하의 기획단 설치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보다 강력한 권한과 전문인력을 갖춘 특별기구가 한시적으로 구성되어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유명무실한 선거철 공직기강 점검의 문제점

1. 현 황

- 국무조정실의 정부합동점검반은 공공부문에 대한 감찰 및 기강 점검 활동 등을 통해 공직기강을 확립함은 물론 우리 사회 각 분야에 잔존하고 있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도입된 사업입니다.
- 02년 9월 현재 88건의 비위를 적발, 수집하였고 11회에 걸쳐 공직기강을 점검하였습니다.
- 10. 8일 총리 지시에 의해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를 차단하기 위하여 10. 14~30일까지 정부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부합동점검반 32명이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문제점

-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한철용 5679정보 부대장의 군사기밀 유출사건, 한나라당의 자칭 국정원 도청자료 폭로사건, 前 산은총재의 폭로 사건은 대선을 앞두고 공직사회의 기

강해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를 웅변하고 있습니다.

- 특히 선거철을 앞두고 나타나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공직사회의 기강 해이를 바로잡으라는 국민의 요구가 높습니다.
- 그러나 현재 국무조정실 정부합동점검반이 실시하고 있는 선거철 대비 공직기강 확립은 실적이 거의 없는 유명무실한 사정활동입니다.
- 지난 5월에도 지방선거 대비 공직기강 점검을 실시하였지만 실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질 의)

국무조정실장, 최근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가 극에 달해 공직기강 해이를 걱정하는 국민의 우려가 높습니다.

지금까지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점검이 소리만 요란할 뿐 실제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많은데 그 이유에 대해 답변해 주시고, 특히 지난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에서 어떤 실적이 있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벌어지는 공직사회의 정치권 줄대기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증액보다는 권한 강화를 통해 보다 강력한 공직기강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性憲 委員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독립청사 확보방안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사무실 임차사용에 따른 고질적 문제 발생
 - 임차료 인상으로 2년마다 청사 이전
 - 청사이전 시 적정물건을 확보하기 위해 인력, 시간, 예산이 과다 소요(이전경비 1.5억)
 - 청사이전 시 2개월간 연구업무 수행 지장 초래
- 현 청사로 사용 중인 수협건물 임차상황 열악
 - 연구공간 협소로 연구생산성 저하
 - 1인당 사용면적 7.5평(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 평균면적의 1/3수준으로 최하위)
 - 연구공간 부족으로 인근 오피스텔 임대(132평, 12인 근무)
 - 회의실 부족으로 세미나 등 대내외 회의 개최의 어려움 가중
 - 연구분야 확대 등 신규인력 충원 시 사무실 공간이 절대부족으로 적시에 우수인력 확보

보가 어려움

□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보유 부지 내 청사 신축사업 추진 불가로 독립건물 매입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 IMF사태로 인해 '98년 정부예산 24.3억 전액 삭감되어 신축사업 추진 전면 유보된 상태
- 정부예산이 확보되어도 청사신축사업 추진 애로

- 2000년 건설교통부의 “수도권 난개발 방지 대책”에 따라 용인시가 건축허가를 계속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2.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서울시 강동구 둔촌동 444번지 수협중앙회 둔촌동 청사(백화점 건물)를 매입하려 하고 있는바 이 건물의 매입할 때의 이점은 민간법인 또는 개인소유건물 매입 시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의거 일정한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나, 매입대상 건물은 공공법인건물로서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불필요한 절차상 신속추진의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독립청사를 가질 경우 한국노동연구원 등 3개 정부출연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한다고 하니 더욱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번 기회에 보다 적극적인 예산 편성을 통해,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으로 인한 연구생산성 증대와 △공공기관의 무수익 고정자산의 매입으로 연간 20억 원의 공공 예산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결과적으로 두 공공기관의 융통성 있는 자원배분 활용을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의 국익 창출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과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계속)

<참고>

경제사회연구회 기관별 청사현황

(단위 : 평/명)

기 관 명	보 유 형 태	연면적(A)	총인원(B)	1인당면적(A/B)
한 국 개 발 연 구 원	자체청사	9,000	243	37.0
한 국 조 세 연 구 원	자체청사	3,016	83	36.3
대 외 경 제 정 책 연 구 원	무상임차(한국소비자보호원)	1,876	107	17.5
산 업 연 구 원	무상임차(산업자원부)	2,100	151	13.9
에 너 지 경 제 연 구 원	자체청사	1,500	101	14.9
정 보 통 신 정 책 연 구 원	자체청사	4,196	138	30.4
한 국 보 건 사 회 연 구 원	무상임차(보건복지부)	3,203	127	25.2
한 국 노 동 연 구 원	유상임차(중소기업협동중앙회건물)	1,359	73	18.6
한 국 해 양 수 산 개 발 원	유상임차(수협건물)	1,173	157	7.5
교 통 개 발 연 구 원	무상임차(건설교통부)	1,551	180	8.6
환 경 정 책 평 가 연 구 원	무상임차(환경부)	4,307	79	54.5
한 국 농 촌 경 제 연 구 원	자체청사	2,417	189	12.8
국 토 연 구 원	자체청사	6,038	234	25.8
과 학 기 술 정 책 연 구 원	유상임차(전문건설조합건물)	1,344	65	20.7

※ 총 인원은 비정규직을 포함한 인원임.

인문정책연구사업 관련

1999년 8월 11일 국회 제2006회 임시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인문학의 위기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가”라는 지적에 대해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은 “인문사회연구회에 인문관련 연구기관은 없지만 자체적으로 인문학 위기현상을 진단하고 정책방안을 만들어 정무위원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답변했습니다.

인문사회연구회가 인문학 전반에 걸친 대안을 모색코자 한다면 일회적인 학술대회나 연구용역으로 모양내기에 급급해서는 안 되며 보다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학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연구지원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시행 중입니다. 인문사회연구회는 인문정책연구사업 추진을 위하여 인문학계의 합의와 협력하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의견에 따라 관련학회 인사의 추천을 받아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문 심포지엄 및 포럼 등을 통하여 인문학 위기

의 원인 규명 및 인문학 연구, 교육, 활용상의 대안 발굴에 진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1세기 과학종교 맹신과 물신숭배 앞에 실추된 인문학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인문정책 추진 주체가 전무한 현실에서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인문정책을 발굴하여 법제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집니다.

인문정책위원회는 15회의 전체회의 및 소위원회 회를 개최하여 인문정책연구사업의 방향을 유도하고 48개 용역과제를 발굴 지원하고 있으며, 3회의 인문정책 포럼과 3회의 인문정책심포지엄을 대구와 서울, 광주에서 개최하여 국민의 관심을 유도했습니다.

그런데 2002년도 10억 원이던 인문정책연구 지원예산이 올해 4억 원으로 감액 편성된 것은 인문학 전반의 위기를 대응하고 국가 백년대계를 준비하는 장기적 안목에서 추진되는 동 사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침체된 인문학을 정책적으로 접근 해결하여 국민적 인문수요 창출과 활용 및 인문국제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라고 본다면 10억 원은 오히려 최소한의 액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 예산을 증액하지는 못할지라도 금년도 수준까지는 확보되어야 안정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3~5개년 정도는 연속적으로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소관기관인 국무조정실장 및 인문사회 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朴柱千 委員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강릉분원 설립 관련

2001년도 결산 심의 당시 지적된 문제입니다만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설립예산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KIST 강릉분원은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내에 환동해권 천연물로부터 생리활성물질 연구개발 등을 목표로 설립 추진 중입니다.

이외에도 낙후된 강원지역의 자연과학 연구역량을 강화하고 산업단지 내 벤처기업에 관련기술을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강릉산업단지의 조성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2005년으로 연기되고 물류, 기업인프라 등이 부족한 현지의 여건으로 인해 그동안 예산의 절대액이 차기년도로 이월됨으로써 국회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03년도 강릉분원 설립예산을 보면 30억 원이 계상되었고 누적이월분을 합치면 97억 7800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지적하고 있듯이 강릉산업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2003년 4월로 예상되고, 단지조성 공사 착공이 6월이후로 잡혀 있는 등 추세로 보아 내년에도 미집행 예산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예산 합계액 97억 7800만 원은 총 공사비 180억 원의 57.5%에 달하지만, 내년도 목표공정률이 39.5%인 점을 볼 때, 실제 소요예산액은 67억 1840만 원으로 2003년도 계상분인 30억 원이 없더라도 공정 달성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효율적 집행을 기하는 차원에서 2003년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강릉분원 설립예산 30억 원을 삭감하고 기 누적분인 67억 7800만 원을 집행하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국무조정실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國務調整室長 金振杓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정책연구비와 관련하여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물으셨습니다.

첫째, 각 연구회의 정책연구비 책정은 2000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매년 동일한 액수로 반영이 되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는지?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기초기술, 산업기술, 공공기술)는 부처에 계상된 정책연구비의 50%가 2000년도부터 연구회로 이관되었으나 경제사회 연구회 및 인문사회연구회는 현재까지 부처에 계상된 정책연구비가 연구회로 이관된 바 없습니다.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의 경우 소관연구기관의 기본사업비는 매년 전년 대비 일정비율이 인상되었으나 연구회로 이관된 정책연구비 및 부처 계상 정책연구비는 인상 없이 동액으로 편성되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둘째, 연구과제 수탁 시 정부의 눈치를 볼 여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법에 의해 연구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본 연구과제나 정부 또는 민간으로부터의 용역 연구과제가거나 관계없이 연구기관의 공정하고 객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도출하는 것이므로, 정부수탁 연구과제라고 해서 정부의 눈치가 감안된 연구결과를 내는 것은 아닙니다.

셋째, 연구기관이 각 주무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때도 그랬지만 정부부처에 소속되는 연구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기관들이 부처의 간섭이나 통제 없이 창의적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연구회 체제로 전환하였고 연구회 체제하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는 최소화 되었다고 봅니다.

넷째, 연구회 제도의 본래 취지는 독립성 및 자율성을 보장하자는 것이었는데 각 부처에 소속되어 있을 때와 현재의 연구회 체제와 달라진 점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연구회체제 출범 이후 과거 부처 소관 시보다 원장의 선임, 연구과제 선정 등 많은 부분에

있어 연구기관의 독립성 및 자율성이 대폭 강화되었다고 봅니다.

- 다만, 경제사회연구회 소관기관의 경우 타 연구회 소관연구기관보다 월등히 많은 정책연구비의 부처 예산 책정으로 연구 수행에 애로가 있었으나, 최근 예산당국의 방침에 따라 일부 일반사업비의 기본연구비 이관과 연구기관 활성화대책비의 배려 등 일련의 조치가 취해지고 있어 점차 연구기관의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정책연구비와 관련하여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에게 물으셨습니다.

첫째, 정책연구비제도를 운영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은?

정책연구비제도 운영과 관련한 문제점으로는 부처 의존성 심화로 인한 연구의 자율성 침해, 정책연구비 발주 지연에 따른 연구결과 부실 우려(연구기간 단축), 부처 산하기관에 수의계약으로 인한 연구의 질 저하, 연구기관 재정 악화 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둘째, 매년 고정적으로 20~50%를 반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매년 고정적으로 20~50%가 관련부처 예산에 편성되는 것은 연구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정책연구비 운영 개선과 더불어 연구기관의 특성에 따라 편성비율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연구회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정책연구비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연구회에서는 연구기관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획예산처 등 관계기관에 정책연구비 운영 개선에 대한 정책건의와 함께 정책연구비 조기 집행, 수의계약 자제를 관련부처에 수 차례 요청하는 등 정책연구비제도의 개선·보완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넷째, 인문사회연구회 소속기관은 연구분야의 특성상 외부용역이 적기 때문에 정부부처의 과제 의존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처럼 각 부처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50%를 연구회 예산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지적하신 대로 각 부처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50%를 연구회 예산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면 효율

적인 중·장기정책 연구사업 수행과 함께 출연연구기관 간 협동연구 확대로 종합적인 정책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책연구비와 관련하여 기초기술연구회 이사장에게 물으셨습니다.

첫째, 기초과학기술은 단기과제보다는 중장기과제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연구과제는 단기과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상은?

- 국가연구개발사업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중장기 과학기술기본계획에 따라 시행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각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은 3~10년의 중장기 계획에 따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전 부처에서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17429호, 2001.12.19) 제5조 6항 및 제7조 2항에 따라 3~5년 단위의 다년도 협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소관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의 경우 2001년도에 수행한 정부연구사업 291개 과제(657억 원) 중 72.8%인 212개 과제(465억 원)가 3년 이상의 중장기 과제로 선정되어 수행되고 있습니다.

둘째, 3개 과학기술계 연구회는 각 부처에 편성된 정책연구비의 50%를 연구회 예산으로 이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 '99년 연구회체제로 전환하면서 연구기관의 연구비 일정부분을 정책주관부처의 정책연구비로 계상한 취지는, 부처에서 필요로 하는 정책연구과제를 산·학·연에 공개경쟁방식에 의해 발주함으로써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높이고 정책연구의 질을 높이기 위함이었습니다.

- 과학기술계 연구분야의 경우 수요부처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분야가 많아 2000년도부터 부처에 계상된 정책연구비의 50%를 연구회 예산으로 이관하여 연구기관 평가결과를 토대로 연구기관에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셋째, 수의계약의 한도액인 3000만 원의 한계로 인해 부실연구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대책은?

과학기술계 3개 연구회 소관 연구기관의 경우 정책연구비는 3000만 원이 초과되는 대규모 Project가 대부분입니다.

강릉분원 설립사업과 관련하여 과학기술연구원장에게 물으셨습니다.

- 첫째, 강릉분원 설립 목적은?
- 과학기술연구원의 강릉분원 설립목적은 강원도 동부지역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활용하여,
 - 천연물 생리활성물질연구를 통한 제품화 기술개발
 - 강원지역의 자연과학 연구역량 강화 및 강릉 과학지방산업단지 내 벤처기업 기술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생태환경보호 및 자연재해 예방 관리를 통한 대형재난의 미연 방지 등에 있습니다.
- 둘째, 강릉분원 설립사업의 주요 사업내역은?
- 사업기간 : 2000년 ~ 2005년
 - 사업비 : 총 사업비 180억 원, 건축부지 5만 평 (100억 원) 강릉시 지원
 - 사업규모 : 연면적 4000평(철근콘크리트조)
 - 시설 : 연구동(1400평×2개 동), 기숙사, 기계실 등
 - 인력 : 74명 내외(연구인력 54명, 지원인력 20명)
 - 조직 : 천연물화학연구센터, 생리활성연구센터, 천연물정보연구센터, 환경연구센터, 벤처지원실, 연구지원실
- 셋째, 현재까지의 진척상황은?
- 강릉분원이 입주할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사업계획의 축소·변경에 따른 추진일정 지연을 감안하여 현재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 동 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2003년 초에 착공한 후, 건설공기 단축을 통해 2004년 말까지 조기에 건물을 완공하여 2005년에 개원할 예정입니다.
- 넷째, 2001년과 2002년 예산 중 이월된 예산이 67억 7800만 원으로 내년도 예산 30억 원과 함께 총 97억 7800만 원으로 공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는 데 2001년과 2002년 예산이 거의 투입되지 못한 이유는?
- 강릉분원사업의 예산 집행 부진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사업계획이 지자체의 재정부담능력 및 민원 등으로 인하여 축소·조정(100만 평 → 50만 평)됨에 따른 것으로, 현재 동 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2002년 10월에 확정되었고,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관계부처에 요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에 대

- 한 승인은 2003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현재 강릉분원의 기본 및 실시설계를 기 완료하였으며,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2003년도 초에 건설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 다섯째, 사업변경이 잦은 이유는?
- 강릉분원이 입주할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사업계획 축소·조정(100만 평→50만 평)에 따라 강릉분원 설립 사업기간을 연장함에 따른 것입니다.
- 여섯째, 동해안 지역의 기업인프라 부족과 물류경쟁력이 떨어져 종합적인 판단 후에 이 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에 대한 견해는?
- 강릉분원 설립사업은 풍부한 연구경험이 있는 KIST(한국과학기술연구원)가 지역대학 및 입주기업체와 연계하여 시설, 기자재, 연구인력을 공동 활용하여 대형 연구프로그램을 발굴 수행하며,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전문인력을 지역대학과 공동으로 양성하여 연구기반 구축 및 지역산업구조 고도화에 기여하고자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 추진현황을 보면,
 - 영상테마파크(5만 평)에 (주)버추얼시티21과 투자유치협약이 체결되어 있고,
 - 강릉시 및 강릉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파인세라믹 기술혁신지원센터와 해양수산지원센터가 각 5000평의 부지에 건립될 예정으로, 상기 2개 센터에서 보육 중인 23개 업체가 분양되는 단지에 입주하기로 예정되어 있으며, 강원지역의 벤처업체 및 중소기업의 입주가 계속될 예정입니다.
 - 강릉분원 설립사업은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핵심사업으로 강릉지역의 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방 과학기술 진흥을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강릉분원 건설사업의 착공을 연기할 경우 수해로 인하여 침체된 강릉지역 경제 및 주민의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 일곱째, 2003년도에 30억 원의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내년에 사업 수행에 있어서 삭감되어도 지장이 없다는데 사실인지?
 - 과학기술연구원에서는 강릉분원의 조기 건립을 위해 강릉과학지방산업단지의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2003년도 초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지방과학기술을 진흥하고 침체된 강릉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건설공기 단축으로 2004년 말까지 건물을 조기에 완공하여

2005년도에 개원을 목표로 건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므로 2003년도 예산 30억 원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연구용역사업비 1억 원에 대한 추진계획과, 댐, 도로, 전기, 통신시설에 대해서도 사전 수해방지 대책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자연재해 대책업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별도의 인력 확보가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수해예방분야를 크게 하천유역별 종합 치수대책, 도시·농촌지역의 저지대 침수대책, 재해 관리대책 및 하천 구조물의 설계기준 강화 등으로 나누어 조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이며 이를 토대로 2003년 3월까지 근원적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댐, 도로, 통신시설, 하천 등 모든 시설물에 대한 수해방지대책 연구는 물론 종합적이고 항구적인 수해방지대책을 마련하고자 관계부처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운영 중입니다.
- 앞으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근원적인 수해방지대책을 수립·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2003년 국무조정실 주요 사업비예산이 42억 5000만 원으로 2002년 73억 1500만 원에 비하여 41.9%가 감소되었다고 지적하시면서 구체적인 감소내역이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2003년 국무조정실 주요사업비 예산은 42억 5000만 원으로 2002년도의 73억 1500만 원에 비하여 41.9%(30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 2003년도에 주요 사업예산이 감소한 것은 2002년도에 추진한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이며 구체적인 주요 감소내역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 경기 종료에 따른 월드컵·아시아경기대회 정부지원점검단 운영 사업예산 1억 6500만 원
 -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설립(2002.4.16)에 따른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기획단 운영 사업예산 20억 8900만 원

- 부패방지위원회 신설(2002.1.25)에 따른 반부패특별위원회 운영 사업예산 9억 1800만 원 등

기후변화협약대책 연구용역 예산이 국무조정실과 산자부, 환경부 등에서 모두 포함되어 있어, 정부부처 간 예산 중복계상 논란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처 간 연구예산의 중복과 국가정책 결정상의 혼란을 막기 위해 국무조정실 내 설치된 기후변화대책 실무조정회의에서 기후변화협약 대책 및 예산관련 실무조정회의를 이미 수 차례 개최하여 관련예산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바 있습니다.
 - 동 회의에서 산자부, 환경부 간에 중복 및 갈등의 소지가 있는 청정개발체제(CDM)위원회 설치 및 국내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 등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이 국가 전체적인 시각에서 보다 중립적인 방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하고
 - 구체적인 집행부처인 산자부와 환경부는 각각 개별부처별 특성에 맞는 분야에 한정하여 구체적인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에 한정토록 연구주체와 범위를 조정한 바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 ※ 예를 들면, 청정개발체제(CDM)사업은 에너지부문(산자부), 폐기물부문(환경부), 임업부문(산림청) 등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므로 부처 간 통일된 운영기준 마련을 위해 국무조정실이 전반적인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하되, 각 부처는 분야별 세부 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토록 조정

기초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다른 연구회에 비해 기초기술연구회의 예산증액폭이 적은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우리나라 기초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그 어떤 분야보다 이 분야에 대한 전폭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 2003년도 국무총리실산하 5개 연구회 및 42개 출연연구기관의 평균 예산증가율이 9.3%이나 기초기술연구회 및 소관기관의 증가율이 0.3%로 낮은 이유는, 생명공학연구원의 첨단연구동

완공(△87억 4900만 원),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전자현미경 특수실험실 사업 완료(△19억 3400만 원), 동 연구원 핵융합특수실험동 건설사업비 감소(전년 대비 34억 3500만 원) 등에 기인하며, 위 감소요인들을 제외하면 평균 예산증가율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 당실에서는 앞으로 연구기관의 경쟁력과 연구생산성 제고를 위해 기본적으로는 경쟁체제를 유지하되 연구기관 특성을 감안하여, 기초·공공적 성격의 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연구기관 즉, 외부수탁이 어려운 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본사업비 지원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등 기초과학기술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朴柱宣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점검이 실제 효과가 없다고 하시면서 그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또, 지난 6.13 지방선거 시 실시한 공직기강 점검실적과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강력한 공직기강 확립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선거를 앞두고 실시하는 공직기강 점검 활동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훼손행위는 물론, 금품·향응 수수 등 비리행위와 직무태만 등 선거분위기를 틈탄 기강 해이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에 중점을 두고 실시하는 것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지난 6.13 지방 총선거 시에는 국무조정실과 행정자치부에서 점검활동을 통하여 총 290여건의 기강 해이사례를 적발하여 문책 조치한 바 있습니다.
- 다가오는 제16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서는 지난 10월 초 국무총리께서 전 공직자에게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특별지시를 발령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엄정한 기강 확립을 강조한 바 있으며
 - 앞으로도 국무조정실은 관계기관 간에 긴밀한 협조하에 기강 점검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가고, 적발되는 공직자에게 대해서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조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99년 대통령비서실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이 설치되어 2009년까지 추진할 종합대책을 내놓았

는데 또다시 국무총리 산하에 같은 목적은 가진 기획단을 설치하려는 이유와, 99년 이후 막대한 복구비와 예비비가 투입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해마다 복구비가 늘어나는 이유와 특히 올해는 9조 358억 원이라는 막대한 복구비가 소요된 원인을 물으셨습니다.

- '96, 98, 99년 대규모 수해를 계기로 근원적인 수해방지를 위해 대통령비서실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 119개 과제를 선정한 수해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관련기관으로 하여금 철저한 시행을 지시한 바 있습니다.
 - 그간 행정자치부에서 그 추진실적을 종합관리해 오고 있으나, 금번과 같이 전국적이며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규모 홍수피해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원적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범정부적·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됩니다.
 - 이에 따라 국무총리실에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설치하여 해마다 반복되는 수해를 예방할 수 있는 수해방지 특별대책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금번 수해방지대책은 피해가 발생한 후 복구하는 사후적 복구보다는 예방적 기능과 지속적 관리기능 강화 등 근원적 수해방지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특히 금년에는 우리나라 기상 관측사상 유례없이 쏟아진 폭우로 그 피해액만도 6조 3877억 원이 발생하였는바, 앞으로 수해에 대한 원천적 차단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 세계적 기상이변으로 인해 정부정책에서 재해 예방, 관리사업의 우선순위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최근의 대규모 재해는 정부정책의 부재보다는 여러 부처에 분산된 재해업무의 중복과 비능률 등에 그 원인이 있어 강력한 권한과 전문인력을 갖춘 특별기구가 한시적으로 구성되어야 해결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기상이변으로 인해 재해 예방, 관리사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하며 앞으로 관계부처·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수해방지대책기획단을 중심으로 수해 발생에 대한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수방체계를 재점검하는 등

근본적인 수방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 재해관련 법률과 기관이 분산되고 다양한 것은 재해·재난의 범위가 넓고 복잡다기할 뿐만 아니라 환경변화에 따른 새로운 재난요인이 계속 발생하고 있어 이를 관리하기 위한 법률과 기관의 기능이 분화되기 때문입니다.
- 앞으로 지적하신 중복문제 등에 대하여는 통합성 등을 높여 나갈 수 있게 종합조정기능을 강화시켜 나가겠습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수협중앙회 건물 매입을 통한 해양수산개발원 독립청사 확보방안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해양수산개발원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건물을 매입하여 노동연구원 등 자가청사를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견해를 같이 하였습니다.
- 지난 10월 25일 정부위원회 예산안 심의 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통한 연구생산성 제고, 미활용 건물 매각을 통한 수협의 경영정상화, 공공기관 간 건물의 공동활용을 위해 청사확보 소요예산 69억 원 중 1차년도 사업비로 13억 8000만 원을 반영키로 하였는바, 동 예산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수협중앙회 건물 매입을 통한 해양수산개발원 청사 확보방안에 대한 경제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현재 경제사회연구회 소관연구기관 중에서 자체청사를 보유하고 있지 못한 8개 기관 중 해양수산개발원 등 3개 기관이 건물을 유상으로 임차하여 사용하고 있어 이들 기관의 청사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 위원님이 제안하신 수협중앙회 건물 매입을 통한 해양수산개발원의 청사 확보가 이루어질 경우 자체청사가 없는 기관들이 공동 입주하여 사용할 수 있게 되어 근무환경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며 연구회 차원에서도 동 사안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인문정책 연구 예산이 금년 수준은 확보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인문학을 제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연구회가 주도적으로 인문정책을 발굴하여 법제화를 위한 기초자료를 구축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위원님의 말씀에 공감합니다.
- 당실에서는 인문학 전반에 걸친 대안 모색을 위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금년도에 10억 원의 정부출연금 예산을 확보하고, 산하 인문사회연구회 주관으로 인문정책연구위원회를 설치하고 인문정책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 인문정책연구비가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4억 원으로 축소 조정되었으나 인문사회연구회 및 소속 9개 연구기관의 2003년도 출연금 예산은 교육과정평가원의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개선비(21억 8000만 원) 반영 등으로 5개 연구회 및 소관연구기관 평균 9.3%를 상회하는 13.5%로 책정되었습니다.

인문학의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내년도 인문정책연구예산이 금년도 수준은 확보되어야 하며, 장기적 계획을 가지고 3~5개년 정도는 연속적으로 지원 육성되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먼저 인문학 연구에 대한 위원님의 남다른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연구회에서는 '99년도부터 정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뜻에 부응하여 인문학 위기 대응 및 인문학 발전을 위한 정책대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2년도에 정부출연금 예산으로 인문정책연구비 10억 원을 확보하여 인문학자들의 적극적인 참여하에 인문학 진흥을 위한 단계적인 정책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2003년도 인문정책연구비가 정부의 예산심의과정에서 4억 원으로 축소 조정되어 사업 추진 및 연차사업 수행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위원님의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朴柱千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예산의 효율적 집행차원에서 2003년도 KIST 강릉분원 설립 예산 30억 원을 삭감하고 기누적분 67억 7800만 원으로 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면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KIST 강릉분원 설립사업은 강릉시가 과학지방 산업단지 실시계획을 건교부로부터 '98. 12월에 승인을 얻었으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능력, 민원 등으로 단지규모가 100만 평에서 50만 평으로 축소되는 등 사업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강릉분원 건설공사도 불가피하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 동 단지의 개발계획 변경 승인은 2002. 10월에 확정되었고, 현재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을 관계 부처에 요청하여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실시계획에 대한 승인은 2003년 3월에 완료될 예정입니다.
- 동 사업은 지방과학기술 기반 조성 및 경제활성화를 통한 국가의 균형발전에 시급한 사업으로, 2003년도에 단지 실시계획 승인이 완료되는 즉시 착공하여 동 단지에 강릉분원과 관련된 벤처기업의 유치와 창업을 유도하고, 입주기업에 대한 기술이전 및 지원을 통한 성공적인 단지 조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건설 공기를 단축하여 조기에 완공할 예정으로 이월예산 및 2003년도 예산 30억 원을 전액 집행할 계획입니다.

(질의서)

(금융감독위원회)

○安大崙 委員

금융감독위원회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 세입예산

2003년도 금융감독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 대비 59.6%가 증가한 규모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단위 : 천 원)

구 분	2002 예산	2003예산안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3,828,208	6,110,104	2,281,896	59.6
전대차관 이자 수입	578,208	587,104	8,896	1.5
벌금 및 몰수금	3,250,000	5,523,000	2,273,000	69.9

2) 세출예산

2003년도 금융감독위원회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17.0%(12억 1736만 원)가 증가한 83억 6356만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단위 : 천 원)

구 분	2002예산	2003예산안	증 감 액	증감률
합 계	7,146,198	8,363,556	1,217,358	17.0

○인 건 비	2,947,918	3,608,355	660,437	22.4
○기본사업비	2,667,985	2,866,563	198,578	7.4
○주요사업비	1,530,295	1,888,638	358,343	23.4
- IBRD차관 원리금 상환	1,530,295	1,553,838	23,543	1.5
- 국제증권감독기구 연차총회		150,000	150,000	순증
- 국제금융협력		184,800	184,800	순증

관서운영비 예산의 적정성 관련

금융감독위원회소관 관서운영비의 최근 3개년 간 전용 및 불용내역을 살펴보면, '99년도 52.5%, 2000년도 16.3%, 2001년도 15.2%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1. 이와 같이 전용 및 불용률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관서운영비가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 아닙니까?
2. 따라서 2003년도 금융감독위원회소관 예산안 중 관서운영비 예산에 있어서는 최근 관서운영비의 전용 및 불용비율을 고려하여 실제 필요한 소요분을 제외한 부분을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원 예산 관련

금융감독원의 2000년도 감독분담금은 705억 원이며, 예산집행 후 잔여액 180억 원을 금융기관에 반납하였고, 2001년도에는 862억 원의 감독분담금 중 대규모의 반환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반환금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것은 금융감독원이 예산소요를 부정확하게 예측하고 분담요율을 상향 운영함에 따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금융기관은 감독분담금 이외에 반환금에 해당하는 수익 창출의 기회비용을 추가 부담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따라서 향후 금융감독원은 분담금 요율을 상향 운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될 경우 금융기관이 부담이 증가된다는 측면에서 우리 위원회는 국정감사 시정·처리 요구사항으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을 국회가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정례적으로 보고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금융감독원의 예

산, 결산은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다는 사유로 우리 위원회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2. 우리 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업무 중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한 승인이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하여금 동 업무에 대해 보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예산은 2월, 결산은 4월 임시국회에서 보고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융감독위원장이 금융감독원의 원장을 겸임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금감원의 예산이 방만하게 편성될 우려가 있으며, 금융감독원의 대부분의 수입이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으로 이 감독분담금은 결국 금융기관을 이용하는 국민 부담이란 점을 생각할 때

3.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의 개정을 통해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예산 및 결산 심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마지막으로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회원권(예 : 골프회원권, 콘도회원권, 헬스회원권) 보유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보유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대상선 4000억 대출관련

현대상선 대출 의혹과 관련하여 금감위원장께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1. 위원장께서는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금감원의 현대상선에 대한 계좌추적은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위반으로 불가하다고 밝힌 바 있는데 지금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본 위원도 금융실명법(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 계좌 추적으로 인한 사생활 침해, 재산권 침해 등 국민 기본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만큼 편의적인 운용이나 자의적인 해석을 통한 계좌추적권의 남용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에는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2. 그러나 계좌추적권의 남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극적이고 미온적인 법 해석을 통해 법이 부여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회피해서는 안되지 않습니까?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4호 라목을 보면 금

감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좌추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은행이 산업은행법 제31조(공급자금의 관리)에 따라 현대상선에 대해 대출 및 관리를 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야 하는 만큼 현대상선에 대출된 산업은행 자금에 대한 금감원의 계좌추적은 권한 남용이 아닌 법에 따른 정당한 행위라 생각합니다.

(※ 산업은행법 제31조 - 공급자금의 관리 :

① 한국산업은행은 그 공급하는 자금이 특정한 목적과 계획에 따라 사용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금융실명법 제4조 1항 4호의 라 :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또한 엄낙용 전 산은총재의 증언대로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이 청와대비서실장 등 정권실세의 지시에 따른 외압의 결과일 경우 이는 금융질서 및 국가기강을 문란케 하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더욱이 최근 북한이 걸으로는 남북의 화해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에 주력해 온 사실이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만일 일부에서 제기하고 있는 의혹(4억 달러 대북 비밀 지원설)과 같이 산은의 대출금이 북한으로 흘러가 핵무기 등 대량 살상무기 개발 비용에 사용되었다면, 이는 국민 생명과 국가안보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한 반국가적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의혹사건은 단순한 대출과정의 적정성 차원의 문제가 아닌 우리 금융질서와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사건이라 생각합니다.

3. 따라서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좌추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출된 자금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조사·규명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00년 6월 당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정을 보면 지금까지의 우리 금융계의 관행과 상식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점이 너무도 많습니다.

첫째, 4000억에 달하는 막대한 금액이 대출 신청일로부터 단지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둘째, 대출 사실에 대해 현대상선의 당시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이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셋째, 대출약정서에 김충식 당시 대표이사의 서명이 누락되는 등 대출관련 서류에 비정상적인 오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넷째, 은행정보연합회의 여신정보에 대출 내역이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다섯째, 대출금에 대한 만기연장 시 신규대출 형식의 편법을 동원해 신용위원회의 심의를 회피하고 임원전결(박상배 현 부총재)로 처리하였습니다.

4. 국책은행으로서 대출관행이 엄격하기로 유명한 산업은행의 대출 중 유독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에 있어서만 관행에 벗어난 비정상적인 일들이 발생하고 있는데, 위원장께서는 이러한 사실들이 우연의 중복이나 관계자의 단순 실수로 설명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금까지 밝혀진 정황을 토대로 판단할 때 2000년 6월 당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은 비정상적인 부당대출의 개연성이 높다고 보는데, 당시 대출의 최종적인 결재권자였던 산업은행의 총재 입장에서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이 산업은행 규정에 따른 정상적인 대출이었다고 생각하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性憲 委員

산업은행에 대해 건전성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는 근거는?

금융감독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면 감사원 감사와 중복되어 산업은행에 부담된다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전혀 사실과 다릅니다.

얼마든지 감사원과 금융감독위원회가 그 업무를 조율할 수 있습니다. 지난 99년 2월 23일부터 3월 20일까지 실시된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종합검사는 “재정경제부의 검사 위탁에 따라 감사원과 업무협의를 거쳐” 실시된 바 있습니다. 이때는 감사원의 금융개혁실태 점검이 진행되고 있던 기간이었습니다. 또 작년 11월 12일부터 12월 8일까지 진행된 금융감독원의 건전성 부문검사는 독자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 작년 같은 기간에 이용호게이트와 관련하여

산업은행의 해외CB 매입에 대한 의혹이 일자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부문검사를 실시해 관련자를 문책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주장은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회피하려고 하는 핑계에 불과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지 못하는 것은 바로 금융감독위원장이 ‘검사에 대한 의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검사의 형태도 얼마든지 다양하게 구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종합검사, 부문검사, 현장검사, 서면검사,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판단됩니다. 금융감독원도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200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기간에 대해 “건전성 검사 이외의 부문검사를 총 13회 실시했다”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건전성 검사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당국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라고 산업은행법 제47조제2항과 제49조 그리고 동법 시행령 제35조의11에 그 권한을 명시해 얼마든지 검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법적으로 보장된 ‘건전성 검사’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 부문검사를 실시했다고 변명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제47조제2항 “금융감독위가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며 이에 필요한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제49조 “재경부장관이나 금융감독위원장은 47조의 감독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보고서를 제출토록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 또는 금융감독원의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산업은행의 업무상황, 장부, 서류 기타 필요한 물건을 검사할 수 있다.”

시행령 제35조의11은 금융감독위의 건전성 감독의 감사원법 제22조의 회계검사와 제24조의 직무감찰을 제외한 범위로 정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에 의한 산업은행 감사는 1년에 1회씩 회계연도 기준으로 실시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산업은행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가? 당시 총재로 있었기 때문인가? 아니면 외환은행과 산업은행이 건전성 감독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는가? 그것도 아니면 감사원과 재정경제부의 보이지 않는 압력을 의식해서인가? 금융감독원 노조도 ‘산업은행에 대한 특별검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지 않은가? 답변 바랍니다.

금융감독위원장은 검사 실시에 대한 가부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현대상선 대출금 사용처에 대한 계좌추적을 실시하라!

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 및 감사의 1차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 보는가? 감사원인가 아니면 재정경제부인가? 금융감독위원회입니다. 동의하는가?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당좌대출과정에서 드러난 사항들은 누가 봐도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4000억 원의 대출금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는 4000억 원 △현대상선 상반기 공시자료에는 1000억 원 △은행연합회 여신정보현황에는 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서수발대장에도 첨부해서 기록하지를 않나, 대출서류에 대출자 본인의 서명이 다르지를 않나 온통 의문투성이입니다.

더욱이 2000년 6월 7일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좌차월받은 4000억 원을 7장의 자기앞수표로 인출한 뒤, 이 중 3000억 원이 그 이후 3~5일간 은행에 지급 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되었던 것으로 존경하는 金文洙 위원님의 조사에 의해 밝혀졌습니다. 문제의 3~5일 기간 동안 돈 세탁이 이뤄졌는지 알 길 없는 것입니다.

만약 외환은행에서 이런 상태로 엉터리 대출과정과 대출금에 대한 자기앞수표 유통과정이 발생되었다면 금융감독위원장은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가? 답변 바랍니다. 어떤 형태로든지 감사를 실시했을 것입니다.

또 외환은행이 만약 이런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가. 내부자 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 선발행등 불건전 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동일인 한도 초과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모두에 다 해당될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금융감독위원장의 견해는?

검사가 실시되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시행세칙 제21조에 따르면 “감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 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출금에 대한 계좌추적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검사가 이뤄지면 특정인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을 요구할 수 있어 계좌추적이 가능하

는 것을 알고 있는 금융감독위원장이 이를 회피하기 위해서 계좌추적이 가능한 검사 실시를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제21조(금융거래정보의 요구) ①검사 실시 부서는 감사업무 등과 관련하여 특정거래자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금융기관에 요구할 때에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융거래자의 인적사항과 정보의 사용목적,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내용 등을 기재한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당해 금융기관 특정점포의 장에게 제시하여야 한다.<본항 개정 2001. 11. 1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거래정보 제공요구서를 발급한 때에는 금융거래정보 요구서 발급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여야 하며, 동 발급대장은 정보제공요구서 발급일로부터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본항 개정 2001. 11. 13>

③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에 관한 세부절차 등은 감독위원장이 별도로 정한 바에 따른다.<본항 신설 2001. 11. 13>

제4조제1항4호 재정경제부장관, 금융감독위원회(증권·선물시장의 불공정거래조사의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금융감독원장 및 예금보험공사사장이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하여 필요로 하는 거래정보 등의 제공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조사위원회에 제공하기 위한 경우가. 내부자거래 및 불공정거래행위등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나. 고객예금횡령·무자원입금기표 후 현금인출 등 금융사고의 적출에 필요한 경우
- 다. 구속성예금 수입·자기앞수표선발행등 불건전금융거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 라. 금융실명거래 위반과 부외거래·출자자대출 동일인 한도 초과 등 법령 위반행위의 조사에 필요한 경우

계속되는 산업은행 문서 관련 의혹! 산업은행은 제출했는데, 금융감독원은 해당 문서를 받은 적이 없다?

산업은행이 본 위원에게 제출한 2000년도 인장날인대장사본에 의하면 2000년 4월 1일, 산업은행 신용관리부는 ‘신용공여산도초과 신용공여 감축 계획 승인 신청’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2000년 7월 13일 금융감독원에

승인받은 것을 근거로 다시 산업은행 신용관리부는 ‘동일차주 신용공여 한도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이행상황 보고’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때 동 부서는 ‘거액신용공여 총액 한도 관리현황 보고’ 서류를 함께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어제 금융감독원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업은행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는 2000년 7월 22일 은행감독규정 부칙 제5조제4항을 개정해 2000년 8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해 그 이행여부를 보고받은 것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거액신용공여 총액 한도 관리현황 보고’ 서류 또한 금융감독원에 제출되었다는 것입니다.

산업은행 신용관리부가 당시 총재였던 이근영 위원장의 인장을 날인한 문서, 2000년 4월 1일자와 2000년 7월 13일자가 금융감독원에 보고된 후 사라졌는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 보내지 않았는지 둘 중에 하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2000년도 인장날인대상사본에는 2000년 8월 29일 산업은행 신용관리부가 날인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승인신청서’ 서류와 2000년 10월 20일 동 부서가 날인한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 초과 신용공여 감축계획 이행상황 보고’는 금융감독원에 보내져 보관 중입니다.

날인대장에 기록된 형태는 동일한 형태입니다. 감축계획을 신청하고 이에 대한 이행상황을 보고하면서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 관리 현황’을 함께 제출했습니다.

여기에는 2000년 3월 4일자로 현대계열과 삼성계열의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금액과 이에 대한 감축계획이 있으며, 이 감축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이 보고되어 있었습니다.

당연히 같은 형태의 문서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내졌을 가능성이 큰 것입니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렇다면 위의 두 문서는 어디로 사라졌는가? 위 두 문서의 작성 및 발송 추정시기는 공교롭게도 위원장이 산업은행 총재로 있던 기간입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에 보관 중인 두 문서는 위원장이 금융감독위원장으로 재임하던 시기입니다.

보관되어 있는 산업은행 신용관리부가 발송한 문서의 내용으로 볼 때, 여기에는 현대계열 신용공여 내역이 담겨 있었을 것입니다. 이 문서가

산업은행에도 없다고 한다면 이는 공문서 파기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된 것인지가 밝혀져야 합니다.

이 시기에 작성되었던 현대상선 대출부서의 문서수발대장 내역이 유독 현대상선 당좌대월 관련한 사항과 관련하여 첩필되었던 점을 고려할 때, 우연의 일치처럼 상식을 벗어나는 일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융감독위원장은 오늘 회의 끝나기 전까지 이 두 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해 그 진위 여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의 동일차주신용공여한도제가 2000년 3월 4일자로 시행되도록 산업은행법시행령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금융감독위원회는 관련 은행업감독규정을 무려 4개월 뒤인 7월 22일에 개정해, 8월 말까지 신용공여초과 한도 감축계획을 내도록 했는가?

금융감독위원회는 일반은행에 대한 동일인 및 동일차주·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를 2000년 1월 1일 시행일을 기준으로 3월 10일에 34개 일반은행에 대한 초과신용공여한도 감축계획을 신청받아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준비기간이 약 두 달 조금 넘게 걸렸습니다.

이 당시 현대계열의 신용공여한도 초과 금액은 26개 은행에 총 14조 6813억 원이었습니다. 일반은행들이 3월 10일 시점 이후부터는 14조 6813억 원을 줄여야 하는 상황에서 현대상선, 현대건설을 비롯한 현대계열사들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곳은 산업은행 등 특수은행 밖에 없는 상황에 놓였던 것입니다.

따라서 일반은행 기준으로 준비기간을 잡는다면 산업은행의 신용공여한도제 시행일인 3월 4일 기준으로 두 달을 잡는다면 금융감독위원회가 산업은행에 대한 신용공여한도제 시행 시기를 늦어도 5월 말에 잡았어야 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지만 금융감독위원회는 무려 일반은행 준비기간의 2배인 4개월이 넘는 시점인 2000년 7월 22일에서야 개정합니다. 산업은행이 신용공여한도 감축계획을 2000년 8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다는 의혹을 갖게 하는 대목입니다.

특히 2000년 3월 4일 시행일 기준으로 산업은행의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에 해당되는 그룹은 현대계열과 삼성계열 단 2곳이었습니다. 현대계

열은 4710억 원, 삼성계열은 3512억 원, 총 8222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감축계획 시행일을 늦추고 있는 동안 2000년 3월 4일 이후부터 2000년 8월 31일까지 산업은행이 현대계열에 추가로 제공한 신용공여액은 6400억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초과신용공여액이 무려 4710억에서 1조 1100억 원으로 급증했으며, 당초 3월 4일 시행일 기준 4710억의 약 150%로 급증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2000년 1월부터 8월까지 초과신용공여액이 무려 150%나 급증하는 등 산업은행의 건전성 부문에 적신호가 켜졌음에도 불구하고 금융감독위원회가 금융감독원은 동 기간 동안 10여차례에 걸쳐 부분검사를 포함해 71회에 걸친 현장지도 및 부분검사를 실시했다고만 답변할 뿐, 건전성 부문검사에 대해서는 묵묵부답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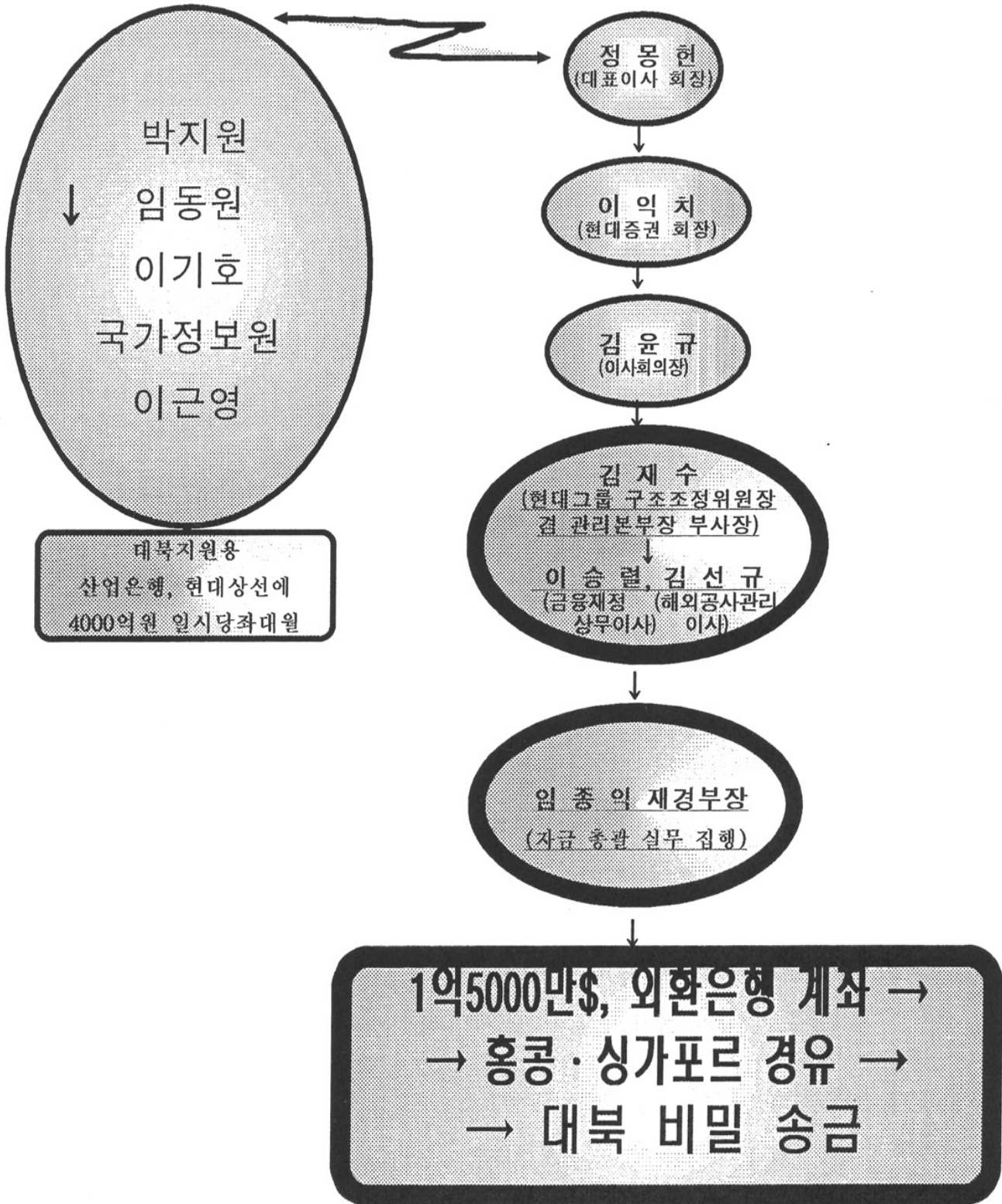
금융감독위원장은 일반은행에 비해 산업은행의 신용공여액이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유로 그 실시시기를 늦췄는지 답변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볼 때, 금융감독위원회가 산업은행이 현대계열사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었으며, 반대로 현대상선, 현대건설 등 현대계열사들은 산업은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나아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이 현대건설, 현대상선 등 현대계열사에 대한 특혜 지원”을 묵인 내지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즉각 금융감독위원장은 00년 1월부터 9월까지 산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검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의혹을 해소해야 할 것입니다.

현대건설 1억5천만\$ 대북 송금 경로



○崔在昇 委員

금융감독원 국제금융협력 직원 파견 1억 8500만 원

한편 금융감독위원회는 세계은행에 중간 간부 1인을 파견해 세계은행과 선진외국의 개발 구조 조정 관련 정책과 노하우를 습득할 목적으로 1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신규로 배정하였습니다.

우리나라 IMF 당시 세계은행으로부터 직·간접적인 기술지원을 받는 등 기업 및 금융권 구조 조정에 상당한 도움을 받는 등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것은 의미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려되는 것은 의미 기업 및 금융권의 구조조정 작업이 마무리 단계에 와 있고 금감위의 기능 중 구조조정 사업의 비중이 점차 줄어들고 있는 시점에 해외 파견이라는 편법을 동원, 인력을 운영하려고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되는데 금융감독위원장은 파견자의 구체적인 자격요건과 운영계획 등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金融監督委員長 李瑾榮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관서운영비의 전용 및 불용률이 매년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관서운영비가 실제 필요한 금액보다 높게 책정되어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우선 2001년도 관서운영비의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

○ 당초 예산액은 15억 4861만 원이며, 예산액의 84.6%에 해당하는 13억 1350만 원을 집행하고, 2억 405만 원을 인건비 및 여비로 전용하였으며, 나머지 3105만 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 관서운영비에서 2억 405만 원을 인건비 및 여비로 전용한 사유는

○ 먼저 인건비에서 당초 예산과 달리 별도정원이 일부 증가(5명→9명)하고,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명예퇴직수당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인건비 지급을 위해 1억 9505만 원을 전용하였고,

○ 외국 금융감독당국과의 협의 등을 위한 국외출장 증가에 따른 여비 부족액 900만 원을 전용한 데 기인합니다.

□ 그리고 관서운영비에서 3105만 원이 불용처리된 사유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집행잔액을 불용처리한 데 기인합니다.

□ 이처럼 타 비목에 비해 관서운영비의 전용과 불용이 비교적 많이 발생한 것은

○ 금융감독위원회의 예산은 인건비와 기본사업비로 편성되는데, 관서운영비가 기본사업비의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전용과 불용이 발생할 경우 관서운영비에서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1년 기본사업비 25.3억 원 중 관서운영비가 14.4억 원으로서 기본사업비의 56.9%를 차지

2003년도 관서운영비를 적정한 수준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우선 2003년도 금감위 관서운영비 예산편성내역을 말씀드리면,

○ 2002년도의 10억 3534만 원 대비 10.0% 증가(1억 364만 원)한 11억 3898만 원입니다.

□ 이와 같이 기본사업비 중 경상적 기본사업비의 관서운영비 예산이 증가한 사유를 말씀드리면,

○ 2002. 2. 4일 직제개정(1실 2국 10과→1관 1실 2국 10과)으로 홍보를 전담하는 공보담당관실이 공보관실로 격상되었으며, 증권시장의 불공정거래 근절을 전담하는 조사기획과가 신설(9명 증원)됨에 따라

○ 기관의 기본운영경비인 관서운영비에 조직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를 반영한 데 기인합니다.

□ 따라서 2003년도 금감위 예산에 관서운영비가 과다편성된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금융감독원이 매년 감독분담요율을 상향조정하여 분담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매년 금융기관 앞으로 초과징수 분담금을 반환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앞으로 감독분담요율을 올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예산재원은 금융감독기구의설치등에관한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거, 한국은행출연금, 금융회사의 감독분담금,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발행분담금 등으로 조달하고 있습니다.

□ 또한 금융감독원은 결산결과 수지차익이 발생하면 예산재원별 납부비율에 따라 분담금 납부자에게 반환하거나 차기 이월하여 다음연도 분담금 부과 시 이를 감안하고 있습니다.

- 2002년에 금융기관에 대하여 202억 원의 분담금을 반환한 이유는 감독분담요율의 인상보다는 예산절감(56억 원)과 회사채 발행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이 수입예상액을 크게 초과한(346억) 데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 유가증권 발행분담금은 시중 자금사정 및 경제 상황에 따라 매년 유동적이어서 예산편성 시 적정 수입금액을 산정하는 데 어려운 점이 있으나 앞으로 예측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금융감독원의 예산이 방만하게 집행될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이 증가될 수 있다고 염려하시면서

- ① 국회는 임시국회(2월, 4월)에서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을 금융감독위원장으로 하여금 보고토록 할 수 있고
- ② 필요 시 감독기구설치법령의 개정을 통해서라도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을 심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금융감독원은 정부조직이 아닌 무자본특수법인으로 법령에 의거 국회의 예·결산 보고 및 심의 대상기관이 아님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예산은 회계연도 개시 60일 전까지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 받고 있으며 결산은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고 있습니다.
 - * 근거법령 : 금융감독기구설치등에관한법률 제45조
 - 참고로 금융감독원과 같은 무자본특수법인인 한국은행도 경비예산은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받고 있고 있을 뿐 국회보고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있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금융감독원의 예산심의를 위해 상임 및 비상임위원 등으로 구성된 예산심사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약 2개월에 걸친 실질 심사를 하고 있으며
 - * 근거법규 : 금융감독위원회운영규칙 제14조의2
- 동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감독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승인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 상임위원, 재경부차관, 한국은행부총재, 예금보험공사사장 및 재경부·법무부·상공

- 회의소가 추천하는 비상임위원 참석
 - 아울러 금융감독원의 예·결산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위원회의 심의·의결 이외에 국회 국정감사, 감사원 감사 등에 의하여 예산의 편성·집행·결산 등 일련의 과정에 대한 엄격한 사전·사후통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감독원의 방만한 예산 운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작동되고 있으므로 금융감독원 예·결산은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부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보다 심도 있게 심의·의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참고로 주요 외국의 통합금융감독기구도 정부조직이 아닌 경우에는 예·결산에 대한 의회의 승인절차가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는 각종 회원권 보유현황 및 사유를 물으셨습니다.

- 임·직원의 체력단련 등을 위하여 2002. 9월 말 현재 콘도회원권 53구좌, 골프회원권 5구좌 및 헬스회원권 6구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 이 중 콘도, 골프회원권 전부 및 헬스회원권 1구좌는 4개 기관 통합당시 인수한 것이고, 헬스회원권 5구좌는 이용률이 저조한 골프회원권 1구좌를 매각한 금액 이내에서 구입하였습니다.

2000년 6월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 관련하여

- ① 현대상선 계좌추적에 대한 견해
- ② 계좌추적을 하지 않는 것이 소극적, 미온적 법 해석을 통해 부여된 정당한 권한 행사를 회피하는 것은 아닌지
- ③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계좌추적 등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출자금의 사용내역을 조사, 규명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금감위원장의 견해
- ④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과정에 관행에 벗어난 일들이 있었다고 지적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
- ⑤ 당시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대출이 정상적인 대출이라고 생각하는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현행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에 따르면 금융거래에 대한 예금자 비밀보호를 위해 금

용감독기관 등이 계좌추적을 할 수 있는 경우를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상 금융기관이 아닌 일반기업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객관적 혐의가 드러나지 않은 한 계좌추적이 허용되지 않으며
 - 단순히 차입금의 사용처를 확인해 보기 위한 계좌 추적은 실시할 수 없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현재 금융감독원에서는 현대상선에 대해 회계감리를 실시 중이며
 - 감사원에서 산업은행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한편 산업은행에 따르면 2000년 6월 당시 현대상선에 대한 4000억 원 일시당좌대출은 산업은행 내규에 따라 본부장 전결로 처리되었으며
 - 대출과정에 문제점이 있었는지는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과정에서 밝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금융감독원은 산업은행법 제49조에 의거, 산업은행에 대해 건전성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현대상선대출과 관련, 산업은행에 대해 감사를 실시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고 감사를 하게 되면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계좌추적이 가능함에도 이를 회피하기 위해 감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현행 법령상 산업은행에 대한 포괄적인 검사 및 감찰권한은 감사원이 보유하고 있으며(감사원법 제22조 및 제24조) 금융감독원은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건전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그 범위는 감사원의 회계검사 및 직무감찰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항에 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산업은행법 시행령 제35조의11)
 - 감사원은 2002. 10. 14.부터 산업은행에 대하여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동 감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장은 국회 법사위원회 국정감사 시 현대상선대출금도 감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감사원의 감사진행과정 및 그 결과를 지켜보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의 계좌추적은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에 규정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 위원님이 지적하신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시행세칙 제21조는 금융감독원의 내부 규정으로서 금융거래정보제공요구서의 기재사항 및 발급절차 등 실무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오니 이 점 헤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은행의 현대상선에 대한 당좌대월(4000억 원)과 같은 사례가 외환은행에서 발생되었다면 감사를 실시했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 물으셨고 또 외환은행이 산업은행과 같은 상황에 처해 있다면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제4호가~라목에 모두 해당될 개연성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금융감독원의 검사는 은행에 따라 차별적이거나 임의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이는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업은행이 문서수발대상상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2건의 문서가 사라졌다고 하시면서 그 경위를 밝히고 그 문서를 찾아 제출할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문제를 제기하신 2건의 문서는 '00. 3. 4일자로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금감위가 산업은행에 대한 건전성 감독을 수행하게 됨에 따라 동일 차주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초과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하는 업무에 관한 문건으로서
 - '00. 4. 1의 문서는 당시 신용공여한도 초과 2건(현대계열 및 삼성계열)에 대해 감축계획을 수립하여 금감위의 승인을 요청하는 문서이고
 - '00. 7. 13일자의 문서는 '00. 6월 말 현재 위 감축계획에 따른 이행실적을 보고하는 문서입니다
- 당시 금융감독원은 한국산업은행을 포함한 5개 특수은행의 시행령 개정 이후 이의 시행을 위한 세부사항을 반영하기 위하여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었는데
 - 이와 같이 세부시행사항이 마련되지 않은 상

황에서 '00. 4. 1일자의 신용공여한도초과 감축계획 승인신청을 공식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으며

○ 나아가 감축계획에 대한 승인절차를 거치지 않은 상황에서 '00. 7. 13일자의 '00. 6월 말 기준 감축계획 이행실적보고를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 그러나 당시 금융감독원에서는 한국산업은행 등 5개 특수은행의 건전성 감독업무를 재경부로부터 이관받아 구체적인 업무수행방안과 관련 부서 간 업무분장방안을 검토 중에 있었으므로
 - 산업은행이 제출한 것으로 되어 있는 동 문건이 당시 여러 관련 부서 중 한 부서의 실무담당자에게 직접 제출되었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 당시 실무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동 문건의 수령 및 보관여부를 현재 확인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00. 3. 4일자로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이 개정되어 동일차주 신용공여한도제도가 시행되었으나 금융감독원은 세부시행사항을 정한 은행업감독규정을 4개월이나 지난 '00. 7. 22에야 개정하여 신용공여한도 초과 감축계획을 8월 말에 제출토록 그 실시 시기를 늦췄는바 그 사유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한국산업은행법시행령이 개정·시행된 이후 개정된 내용의 세부시행을 위해 은행업감독규정을 개정하면서 4개월여의 시간이 소요된 것은
 - 당시 개정내용이 업무성격이 상이한 5개 특수은행과 관련된 것으로, 신용공여한도 관련 사항 이외에도 경영지도비율·경영건전성평가 등 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전반적인 사항을 포함하고 있어 그 내용이 방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 세부시행사항 마련 시 동 시행령 개정 취지와 대상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재경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었으며
 - 규정 개정을 위해서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금융감독위원회 부의 등 행정절차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기 때문입니다.
- 한편 산업은행의 현대계열 여신에 대해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와 관련해서는
 - 현재 감사원에서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금감원이 별도로 특별감사

를 실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금융감독위원회가 세계은행에 파견할 파견자의 구체적인 자격 요건과 운영계획 등을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한국의 성공적인 외환위기 극복과 금융·기업구조조정 경험을 한국과 유사한 금융위기를 겪은 개도국들의 정책에 활용할 수 있도록
 -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중간간부 1인을 파견할 예정입니다.
- 금융감독위원회는 파견 공무원 선정 시
 - 금융구조조정 업무와 금융감독업무에 대한 충분한 경험과 지식을 보유하고
 - 국제기구 및 외국 정부 등과 원활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를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 파견 공무원은 파견기간 중 세계 각국의 정책 결정자들과 정책경험 등을 공유함으로써
 - 정책 노하우, 국제금융기법 등을 습득하고 세계은행의 주요 정책수립 시 우리나라의 이익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며,
 - 개도국들과 금융부문의 협력관계를 증진하여 향후 우리나라 금융회사의 해외진출 기반을 구축하는 데 역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

○趙在煥 委員

상담위원 보상금 관련

- 민원상담위원제 운영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 행정상담의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 최근 3년간 행정상담위원 중 상담실적이 전무한 위원의 수가 50% 이상을 상회하고, 올해 역시 8월 말 현재 당초 예산의 40%도 안 되는 실적을 거두고 있어 동 사업의 예산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행정상담내용은 지방의회 의원이나 마을 이장 등을 활용하면 처리할 수 있는 사안이 대부분인데 굳이 따로 뽑아 예산의 낭비를 초래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행정상담위원제도를 폐지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입니까?

- 현재 전문상담위원에게 지급되는 보상금 규모는 어느 정도입니까?
- 행정상담위원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문상담위원 예산에 확대 편성하여 주민들에게 필요한 법률서비스나 세무서비스 강화를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보는데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습니까?

○朴柱千 委員

국민고충처리위원회 행정상담위원제 운영 내실화 관련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현행 행정상담위원제는 중소도시나 농어촌지역의 명망 있는 인사나 퇴직 공무원 등이 고충민원절차를 안내하거나 상담해주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체 위촉인원의 절반 이상이 연간 단 한 건의 상담실적도 없거나 단순안내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나 신속한 위·해촉 및 운영의 내실화를 강구하도록 국정감사 시 지적된 바 있습니다.

2003년도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은 단가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함으로써 금년 대비 45.8% 증액된 1억 1550만 원이 계상되고 있으나, 현실에 맞게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연도별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집행내역을 보면 2000년 78.9%이던 것이 2001년 58.4%, 금년 8월 말 현재 36.8%에 그치고 있습니다.

결국 매년 상담실적이 전무한 위원이 늘어남에 따라 보상금 지급요인이 축소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전체 행정상담위원 숫자만큼 일률적으로 예산을 계상함으로써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방도시나 농어촌지역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는 취지에 비추어볼 때, 실적만을 갖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친 감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성과 없는 사업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배정하는 것도 시정되어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 간 형평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정상담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수요 있는 곳에 공급 있다는 원칙하에 고충민원의 수요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상담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에 대한 고충처리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상담위원 보상금 예산관련

고충처리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을 보면 상담위원 보상금 등 즉, 행정상담위원, 전문상담위원 등에 보상금 지급 명목으로 편성된 예산이 2002년 대비 280.7% 증액된 2억 7464만 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1. 여기에는 그동안 실적이 있는 행정상담위원 보상금을 월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한 부분도 포함되어 있지요?

※ 행정상담위원 : 중소도시 및 농촌지역거주 퇴직공무원 또는 덕망 있는 인사로서 선정됩니다.

전문상담위원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 직업인으로 선정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이긴 하지만 상담위원들의 활동실적과 이에 따른 예산 집행실적이 저조하여 사업추진의 실효성 자체를 의심받게 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지역행정 상담위원들의 실적을 살펴보면 총 275명 상담위원 중 절반이상이 연간 단 한 건도 상담실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고, 상담내용도 대부분 단순업무 안내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예산 집행실적도 저조하여 당초 편성된 예산이 타 용도로 전용되는 사례가 허다했습니다.

<참고> 행정상담위원 연도별 활동실적

연도	상담위원수	0건	1~10건	11~20건	21~50건	50건이상
2001	275명	155명	36명	20명	26명	38명
2000	275명	161명	31명	16명	20명	47명
1999	275명	176명	25명	14명	22명	38명

2. 따라서 행정상담위원제 활성화 대책 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을뿐더러 예산 조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떤 견해를 갖고 있습니까?

3. 본 위원이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언급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되었듯이 행정상담위원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대신, 전문상담위원제도를 광역자치 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國民苦衷處理委員長 李沅衡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민원상담위원(행정상담위원, 전문상담위원) 제도 운영의 목적과 동 위원들에 대한 보상금은 어느 정도이며, 행정상담위원제도를 폐지하거나 행정상담위원제도에 들어가는 예산을 전문상담위원제도 예산으로 편성하여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우리 위원회에서는 행정절차나 민·형사 등 법률지식이 취약한 주민들을 돕기 위하여 행정상담위원제도와 전문상담위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행정상담위원제도는
 -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시·군·구 지역단위로 퇴직공무원, 행정사 등을 상담위원으로 위촉하여
 - 각 행정기관의 업무에 대하여 상담에 응하고 안내·조언하며, 민원사항을 우리 위원회나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하고 그 처리결과를 민원인에게 통지하는 직무를 행하도록 함으로써
 -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 서민들을 도와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 전문상담위원제도는
 - 변호사, 세무사 등 전문직을 서울과 대전센터에 위촉하여
 - 민원업무 및 일상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법령에 관한 국민의 상담에 응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 현재 행정상담위원들에게는 실적에 따라 월 3만 원의 보상금과 실적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전문상담위원들에게는 1일 5만 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최근 지방자치제 실시 등 행정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행정상담위원의 역할이 다소 감소된 점은 있으나
 - 마을 이장이나 지방의회 의원과는 달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시각을 견지할 수 있고,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의식하지 아니하고 바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나 중앙행정기관에 민원을 안내할 수 있다는 점에서
 - 행정상담위원제도를 당장 폐지하기보다는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먼저 적극적인 노력

- 을 기울여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한편, 현 행정상담위원 예산을 전문상담위원 확보에 전용할 경우 시·도청 소재지별로 1일 1인 정도의 전문상담위원 밖에 상담하게 할 수 없는바,
 - 이 경우 상담·안내를 받기 위하여는 해당분야 전문상담위원의 상담일 까지 기다려야 하고,
 - 또한 상담일에 시·도청 소재지까지 가야 하는 관계로 시·군 지역에 거주하는 민원인들은 상담·안내혜택을 받기가 더욱 힘들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시·군 지역의 서민들을 위해 현지에서 상담·안내 서비스를 하기 위한 행정상담위원제도와 대도시를 중심으로 전화나 방문하는 국민들에게 전문적인 법령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현재와 같이 병행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참고로, 현재까지는 전문상담위원제도를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별도로 연구를 진행한 사실이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朴柱千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실효성이 의문시되는 행정상담위원제도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야 할 것이며 형평성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행정상담위원제도를 운영하고, 고충수요가 많은 광역자치단체에 전문상담위원을 확대하는 등의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견해?

-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지급을 실적급으로 전환한 이래 보상금 집행실적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 이는 행정상담위원이 원래 자원봉사자로서 실적의 작성·제출 등 행정통제에 익숙하지 않고,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비보상액(1인 월 3만 원 기준)이 실적을 유인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더욱 우수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 행정상담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액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월 3만 원 → 월 5만 원 기준), 보상금의 집행을 실적위주로 지급하며,
 - 연찬회를 개최하여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고취하고,

-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정부포상 수여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민원상담실적이 없고 자원봉사정신이 낮은 행정상담위원들은 과감히 교체하는 등
 - 현 행정상담위원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전문상담위원을 두는 방안은
- 보다 전문적인 상담기회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시·군내에서 행정상담위원들에게 상담·안내 받던 민원인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상담위원이 근무하는 날에 맞추어 먼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됩니다.
 -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상담위원제도 확대방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행정상담위원제도의 활성화 대책 없이 예산을 증액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예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며, 행정상담위원제를 대폭 축소하거나 아예 폐지하는 대신, 전문 상담위원제도를 광역자치단위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용의는 없는지?

- 행정상담위원 보상금 지급을 실적급으로 전환한 이래 보상금 집행실적이 감소된 것은 사실입니다.
- 이는 행정상담위원이 원래 자원봉사자로서 실적의 작성·제출 등 행정통제에 익숙하지 않고,
 - 현재 지급하고 있는 실비보상액(1인 월 3만원 기준)이 실적을 유인하는 데 미흡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 앞으로 더욱 우수한 자질을 갖춘 분들이 행정상담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 행정상담위원에 대한 실비보상액 지급기준을 현실화하여(월 3만원 → 월 5만원 기준), 보상금의 집행을 실적위주로 지급하며,
 - 연찬회를 개최하여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고

- 취하고,
 - 실적이 우수한 위원에게 정부포상 수여 등 사기진작책을 강구하여 위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 민원상담실적이 없고 자원봉사정신이 낮은 행정상담위원들은 과감히 교체하는 등
 - 현 행정상담위원제도를 보완·발전시켜 그 본래의 역할과 기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한편, 광역지방자치단체 단위로 전문상담위원을 두는 방안은
- 보다 전문적인 상담기회를 민원인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만,
 - 시·군 내에서 행정상담위원들에게 상담·안내 받던 민원인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상담위원이 근무하는 날에 맞추어 먼 광역지방자치단체 소재지까지 가야 하는 불편이 예상되고,
 - 전문상담위원에 대한 보상금, 상담공간 확보, 관리인력 확보 등에 필요한 예산을 감안할 때 현재 행정상담위원을 운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문상담위원제도 확대방안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 등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연구·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서)

(비상기획위원회)

○李訓平 委員

비상기획위원회는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을 포함한 4개의 계속사업에 11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 지난 6월 ‘서해교전’에서 경험하였듯이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국가위기상황에 국민들이 과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요령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보는데 그동안 해당사업의 연구실적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이와 관련하여 2003년에 편성된 예산내용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2. 평시 일반국민들의 안보의식 고취와 비상시 혼란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침을 제공하기 위하여는 책자 및 영상물을 통한 대국민홍보가 중요하다고 보는데 비상기획위원회의 평소 의지와 달리 관련예산이 증액 편성되지 못한 것은

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과 노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보는데 적극적인 대국민홍보대책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서)

○非常企劃委員長 金石右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비상시 국민행동요령사업의 연구실적과 2003년 예산안 내용 및 향후 대국민 홍보대책은?

- 우리 위원회에서는 국민의 안보의식을 제고하여 비상 대비태세를 확립하고자 2000년부터 예산을 편성하여 비상시 국민행동요령 홍보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비상 대비와 국민행동요령」 홍보책자는 2000년부터 현재까지 21만 부를 제작,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공중다중시설 등에 배포하였고 안보영상물은 비상시 정부의 역할과 국민의 행동요령을 시사성 있는 내용으로 제작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중점관리업체 등에 4500개를 배포하여 민방위훈련, 을지연습 등 각종 교육훈련 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 또한 2002년 7월부터는 책자내용과 영상물을 인터넷 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관심 있는 분들이 손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하여 교육·홍보의 폭을 넓히는 등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03년도에는 홍보를 활성화하기 위해 홍보책자는 각급 학교 등 교육기관, 공중다중시설, 수도권 및 접적지역주민 등에 1세대당 1부씩 배포하고, 안보영상물은 연간 5000개를 제작하여 중점관리업체까지 배포할 계획으로 예산요구하였으나 금년과 동일수준(1억 1000만 원)으로 동결되었습니다.
- 내년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홍보책자, 영상물, 홈페이지를 통한 대국민홍보 외에도 을지연습, 민방위훈련, 기타 각종 교육훈련 시에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아울러 신문, TV, 라디오 등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도 병행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서)

(청소년보호위원회)

○趙在煥 委員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위탁운영 관련

- 청소년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위탁운영과 관련

하여 민간시설 1곳을 중앙센터로 지정해 보호 및 치료를 위탁하는 사업이라는데, 병원과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 사업계획 단계에서는 중앙센터 1곳과 지역센터 두 곳을 시범운영하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지역센터 두 곳은 빠지게 되었나? 예산상의 문제입니까?
- 이 사업으로 인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어느 정도로 예상하십니까?
- 청소년의 보호와 재활을 위해서 운영되는 다른 시설은 없었습니까?
- 5억 원 정도의 예산으로는 그다지 큰 효과를 낼 수 없다는 판단이 드는데 위원장은 어느 정도의 성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 새로운 사업인 만큼 다소 어려움도 예상되지만 앞으로 꾸준히 지원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보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 관련

- 현재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어느 정도입니까?
-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서는 높은 편입니까, 낮은 편입니까?
-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제 교육입니까?
- 강제 교육이 아니라면 이 교육의 실효성도 없어 보이는데 어떤 방법으로 교육의 참여율을 높일 생각입니까?
-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해 본적이 있습니까?
- 고의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 미국의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하고 있는 FOPP (First Offender Prostitution Program)라는 제도를 알고 있습니까?
- 검찰이 초범자에 한하여 John'School Program 수료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한다는데, 이 제도는 성범죄 재범률을 낮추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일부의 주장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습니까?
- 이 사업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일 텐데 앞으로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가 있습니까?

-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앞으로도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중점적으로 시행해야 할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장기적인 플랜을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의견은 무엇입니까?

○金允式 委員

- 정보통신의 발달 등 매체환경이 다양화됨으로써 음란·폭력매체물이 질적·양적으로 확대되고, 이러한 환경은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에 심각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다각적인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서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는 음란·폭력매체물 추방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2003회계연도에는 금년 2억 7900만 원 대비 13.6% 증가한 3억 1700만 원이 책정되었는데 이는 위탁사업 용역비가 3000만 원에서 8000만 원으로 167% 급증하였기 때문이며, 그 외 운영비 업무추진비 등은 전년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 속도 및 인터넷 보급 확산과 인터넷으로 인한 범죄 증대경향을 감안할 때, 동 음란·폭력매체물 추방사업 예산이 과연 충분한 것인지 매우 우려되는 실정인데 위원장께서는 관련 예산의 적정수준을 어떻게 보시는지, 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인터넷 유해사이트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노력을 펼치고 있지만, 실제 현실에서는 그런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청소년들은 유해사이트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추세와 관련하여 보호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므로 청소년 스스로 유해매체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전문가들로부터 집중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도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유해매체물 추방사업 관련 예산은 거의 단속과 보호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프로그램 개발예산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위원회의 청소년보호정책에 대한 발상의 전환

과 그에 따른 예산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위탁운영 예산 관련

청소년보호위원회의 2003년도 예산안 중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 개선사업 예산이 23억 9782만 원으로 전년 대비 47.3%가 증액되었는데 그 증가 원인은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위탁운영 예산 5억 원이 신규사업비로 편성되었기 때문이라고 봅니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청소년들의 흡연과 음주, 그리고 약물 오·남용으로 인한 탈선을 차단하는 한편 치료와 재활의 공간을 마련해 준다는 측면에서 환영할 만한 사업이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몇 가지 의견을 제시한다면,

1. 청소년보호위원회는 당초 민간 기존시설을 지정하여 중앙센터와 지역센터 그것을 시범 운영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사업시행 초기인 만큼 중앙센터 1곳만을 우선적으로 운영해 볼 그 성과를 재점검한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그리고 사업 추진 초기단계에는 전국에 산재해 있는 치료·보호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과 함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우선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우리의 미래요 희망입니다. 청소년 보호위원회가 각종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고 이 나라의 동량지재로 만드는 데 그 역할을 다해야 하는 만큼 청소년 보호사업 예산 투입에 인색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3. 따라서 이러한 사업성과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민간시설이 아닌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영시설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 예산관련

청소년 성 보호정책 추진사업과 관련하여 2003

년도 예산에 신규사업안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 시범운영비 5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정상적인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사업예산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사안이 있습니다.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상담치료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나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교육·상담·치료가 임의사항이기 때문에 성범죄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가 문제입니다.

1. 따라서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는 현행 명단공개를 유예하여 유인책을 마련한다든가 또 장기적으로 이러한 치유프로그램 이수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미국에서는 성범죄자가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기소유예 방침을 세워 성범죄율의 감소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청소년보호위원회에서 이러한 방법도 장기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또 이 사업에서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치유프로그램을 적용하고 있으나 향후에는 성매매를 행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프로그램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崔在昇 委員

청소년보호위, 치료재활센터 위탁 및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 운영에 5억 5000만 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의 음주·흡연과 환각물질 등 약물 오·남용으로부터 보호하고 치료하기 위해 기존의 민간단체가 운영하는 청소년 보호시설을 지정, 위탁 운영하기 위해 청소년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위탁운영비 5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는 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청소년보호센터 등)에 규정된 청소년 보호 및 재활센터를 설치, 시범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취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로 현재 민간이 운영하는 많은 청소년 재활시설들 중 컴퓨터의 경우 전국에 71개소 중 약물 오·남용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할 시설들은 전무한 실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의 시설 이용도에 대한 최소한의 기초 자료조차 파악되지 않는 등 정보공유시스템 구축 등 1차적으로 문제 해결이 우선돼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인데 이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 제33조의2(청소년보호센터등) ①청소년폭력·학대등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임시로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보호센터를 둘 수 있다.
- ②청소년보호센터에는 피해를 당한 청소년에게 법률 상담, 소송업무 대행등의 법률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전문변호사를 둘 수 있다.
- ③청소년폭력·학대등의 피해·가해청소년 및 약물로부터 고통을 받는 청소년의 재활을 위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에 청소년재활센터를 둘 수 있다.
-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99. 2. 5]

○李訓平 委員

운영수당의 적정성에 대하여

청소년 건전 문화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각계 전문가들을 위촉하여 구성되었으며 경상적 기본사업비 운영수당에는 조사연구비 1억 1880만 원, 회의참석수당 5940만 원 등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는 지역사회분과, 가출 및 가족분과, 청소년 참여분과, 건강 및 약물분과 등 8개 분과위원회로 분과당 8~12명씩 총 80명으로 평균 10명이 위촉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회의참석수당 예산 대 실적을 보면 2000년도 4560만 원의 82.8%인 3775만 원, 2001년도 5940만 원의 51.8% 3075만 원, 2002년 8월 현재 5940만 원의 37.1%인 2205만 원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무엇이고 향후 자문위원 수의 재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청소년보호위원장의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답변서)

○青少年保護委員長 李承熙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첫째 청소년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질의를 주셨습니다

- ① 중앙센터 위탁사업은 병원과 계약하는 것인지?
- ② 중앙센터 1곳만 지원되는데 예산상의 문제인지?
- ③ 이 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예상 인원은?
- ④ 청소년보호와 재활을 위한 다른 시설 여부는?
- ⑤ 5억 원 예산으로 어느 정도 효과를 기대하는지?
- ⑥ 꾸준한 지원이 필요한데 앞으로의 계획은?

○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센터는 민간단체 시설을 활용, 위탁하는 형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므로 병원과 직접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치료재활센터 내에 전문의사를 위촉 형식으로 확보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중독 수준이 심한 청소년을 치료하는 경우 등과 같이 필요한 경우 병원과 연계하여 입원치료 등을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중앙센터 1곳만 시범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 위원회 계획으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3곳(중앙센터 1개소, 지역센터 2개소)을 설치 운영할 계획이었으나, 2003년도 예산편성과정에서 1곳만 예산 반영되었기 때문입니다.

○ 혜택인원의 경우 청소년 보호센터나 치료재활센터 내에 수용되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인원은 시설규모(각 최대 수용규모 30명) 및 예산·관리인원 등의 문제로 그리 많지는 않지만, 중앙센터로서 당초 계획대로 정보 제공,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평가가능까지 수행하는 경우 직·간접적으로 혜택을 보는 인원(시설관계자, 청소년, 부모 등)은 상당수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청소년 보호와 재활을 위한 시설과 관련해서는 각 개별법의 규정에 의거, 많은 시설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주로 성인을 위한 시설이고 청소년만을 위한 전문적인 보호재활시설은 그리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효과여부와 관련해서는 5억 원의 예산은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중앙센터를 운영하기에는 부족한 예산입니다.

참고로 5억 원은 4개월 운영예산임을 말씀드리며 관계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 등을 거쳐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최대한 성과를 거

둘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 앞으로의 계획으로는 청소년들의 약물문제 등과 관련한 보호 및 치료재활사업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우선 내년도에 중앙센터 1개소를 운영하고 그 효과여부에 따라 점진적으로 지방에까지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 둘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 관련하여 질의해 주셨습니다.

- ① 현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률과 선진국들과 비교한 재범률 비율은?
- ②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은 성범죄자들에 대한 강제 교육인지, 아니라면 참여율을 높일 계획은, 법적으로 강제성을 띠는 방안에 대한 연구는?
- ③ 고의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청소년에 대한 대책은?
- ④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시행하는 FOPP라는 제도를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위원장의 견해는?
- ⑤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사업은 단년도 사업으로 계획되어 있는지, 계속 사업으로 추진할 용의는, 앞으로도 중점적으로 시행할 사업으로 장기적인 플랜카드는?

○ 현재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의 재범률은 우리 위원회에서 실시한 신상 공개관련 자료에 의하면 1~2회의 동종 전과를 가진 사람이 10.4% 비율을 보이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 신고율이 매우 낮아 선진국과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을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단속·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현재 치유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2003년도에는 우선 교도소 수감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민간단체(2개 내외 공모 예정) 주관하에 동 프로그램을 시범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이 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법규정을 마련할지의 여부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검토·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미국의 FOPP프로그램이나 John'School Program은 청소년대상 성

범죄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시
준점이 된다고 생각되므로 향후 동 프로그램
의 구체적 운영실태 등을 연구하여 제도 개
선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성매수 대상 청소년에 대해서는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선도 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을 소년
재판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하
고 있으나, 이들 청소년을 선도하는 역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여론
을 반영하여 성매수 대상 청소년의 선도교육
등 사회복지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
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노
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성매수 대상 청소년이나 청소년대상 성범죄
자의 정상 사회생활을 유도하기 위한 프로그
램 운영은 청소년 성보호 정책의 핵심사안
이라고 생각되며, 시범사업 운영, 효과성 평
가, 제도화 등의 계획을 가지고 장기적·체
계적으로 동 사업을 연구·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金允式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첫째, 음란·폭력매체물 추방사업 예산의 적
정수준 여부와 예산 부족에 따른 대책은 무
엇인지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보통신기술
의 발전속도 및 인터넷 보급 확산과 인터넷
으로 인한 범죄 증대경향을 감안할 때, 청
소년보호 정책 수행을 위한 우리 위원회의
음란·폭력매체물 추방사업의 예산은 적
정수준에 크게 부족한 실정으로,
 - 우리 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에 음란·
폭력매체물 추방사업 예산을 최대한 효
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청소년 유해매
체물의 전문 모니터링, 청소년·학부모
대상 미디어 교육, 인터넷 피해 청소년
지원시스템 구축사업 등 현재 가장 시
급한 사업에 집중하여 집행할 계획입
니다.
- 부족한 예산은 정보통신부 등 관련 부
처와 청소년 보호를 위한 목적이 적극 반
영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갈 것이며, 정
보이용 보호를 위한 정책 추진 및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청소년 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조장하는 방향으로 추진
할 계획입니다.
- 둘째, 유해매체물 관련 예산이 보호와
단속에 집중되어 있는데, 청소년 보호
정책의 발상전환에 따른 프로그램 개발
의 예산대책이 마련되

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
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 청소년들의 유해사이트에의 노출을
효과적으로 막을 방법이 현재로서는
없는 상황이며, 이러한 추세에서는
보호와 단속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청소년 스스로 유해매체물로부터 자
신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
하다는 위원님의 지적에 전적으로 동
감하는 바입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2003년도 청소년
유해매체물 관련 대책으로 집중 추진
하고자 하는 청소년·학부모대상 미
디어 교육, 인터넷 피해 청소년 지
원시스템 구축사업은 모두 청소년들
이 스스로 미디어를 비평적으로 수
용하고, 인터넷 피해를 미연에 예방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과
정이 주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정보통신부 산하의 정보문화센터
등 관련 전문기관에서 개발된 프
로그램을 적극 활용하는 동시에 청
소년 보호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다
양하게 개발하는 데 지속적으로 노
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첫째, 청소년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위탁운영 예산관련
 - ① 중앙센터 1곳만을 우선적으로 운
영해 보고 그 성과를 재점검한 후
확대여부를 검토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② 사업초기 단계에는 전국에 산재
해 있는 치료·보호시설에 대한 정
보 제공과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이
우선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 대
책은?
 - ③ 청소년보호위원회 직영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는?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선
중앙센터 1개소를 시범적으로 운
영하고 그 효과여부에 따라 지역
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방향에 대
해 전적으로 동감하며 우리 위원
회에서 지적하신 대로 추진할 계
획입니다.
- 우리 위원회가 추진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센터의
기능에는 청소년 보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 제공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며 동 시설 등과 협조체제를
갖추어 중앙조정센터로서의 역
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임을 말씀드리며, 청소년 보호
및 치료

재활센터가 개설되는 경우 동 센터 내에 별도 팀을 두어 자료 수집 및 DB화, 협조체계 구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운영을 직접 운영하는 것도 한 방안일 수 있으나 예산, 인원, 전문성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 위원회보다는 전문적인 민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 둘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 시범 운영예산 관련

- ① 동 프로그램에 참여한 성범죄자에게는 명단공개를 유예하는 방안과 법적으로 강제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② 미국에서는 성범죄자가 치료 및 상담프로그램을 수료하면 기소유예 방침을 세워 성범죄율을 감소시킨다는데 이러한 방법의 검토 방안은?
- ③ 성매매를 행하는 일부 청소년들에 대한 치유 프로그램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청소년 성범죄자의 명단공개 유예하여 유인책을 마련하는 방안과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이 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할지의 여부는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검토·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미국의 FOPP 프로그램이나 John'School Program은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좋은 시준점이 된다고 사료되므로 향후 동 프로그램의 구체적 운영실태 등을 연구하여 제도 개선 시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 아울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 대한 치유프로그램 운영뿐 아니라 성매매를 행하는 일부 청소년에 대한 치유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 형사처벌을 면제하고 선도조치가 필요한 청소년을 소년재판부에 송치할 수 있도록 현행법에 규정하고 있으나, 이들 청소년을 선도하는 역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는 여론을 반영하여 성매매를 행하는 일부 청소년의 선도교육 등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첫째,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센터 설치 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보호할 시설이 전무한 실정이며, 시설 이용도에 대한 기초 자료가 파악되지 않는 등 문제 해결이 우선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 개별법에 의한 시설들의 경우 시설별로 운영되다 보니 정보 제공기능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상호 중복 및 프로그램 등이 미비하여 청소년들의 이용률이 다소 저조한 면은 있으나, 우리 위원회가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청소년 보호 및 치료재활센터의 경우는 중앙센터로서 개별 시설이나 운영 프로그램 등을 수집 및 DB화하는 등 정보 공유 및 제공기능은 물론 개별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보급까지는 별도 팀에서 수행할 계획입니다.

□ 둘째, 청소년대상 성범죄자 치유프로그램을 마련 성범죄의 재범률을 낮추겠다는 것은, 당초 정책취지와는 다르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 청소년대상 성범죄의 방지를 위해서는 범죄자의 단속·처벌과 함께 재범 방지를 위한 치유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현재 치유프로그램 이수를 강제할 수 있는 법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 2003년도에는 우선 교도소 수감 성범죄자들을 대상으로 전문민간단체(2개 내외 공모 예정)주관하에 동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토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장기적으로 청소년대상 성범죄자들이 치유프로그램을 반드시 이수할 수 있도록 법 규정을 마련할지의 여부를 시범사업의 효과성을 평가한 후 검토·추진토록 할 예정입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수당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 자문위원 수의 재조정 필요성에 대한 청소년보호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 및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규정된 청소년보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1983. 3. 16 대통령령 제11074호) 및 청소년

년보호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운영규정(1999. 12. 17 예규 제27호)에 의거, 청소년유해매체·약물·업소, 유해행위, 비행, 폭력, 성매매 등 8개 분야별로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 동 자문위원회에서는 1300만 명이나 되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 약물 오·남용, 폭력, 왕따, 가출 등 다양하게 야기되는 청소년 문제와 특히 최근에는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급변하고 있는 사회 환경과 신세대 청소년의 생각과 의견까지 고려하여야 하는 등 사회 전반에 걸쳐 다종 다양한 분야를 정책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각 자문위원은 분야별로 대학교수, 법률가, 시민운동가 등 청소년보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인사로 구성되어 있는바,
 - 2002. 8월 현재 자문위원들의 분과위원회 참석률은 평균 70.0% 정도이나,
 - 예산집행실적이 37.1%로 저조하게 나타난 이유는 변호사에 대한 법률 자문 등 각종 자문수당과 수시로 발생하는 청소년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Task-force식으로 구성 운영되는 임시 위원회 수당까지 포함된 예산의 총액 대비 정책자문위원회의 수당만을 운영수당 집행실적으로 집계한 것이며,
 - 동 운영수당 항목은 정책자문위원들의 출석률 제고 노력과 이상에서 말씀드린 기타의 내용으로 연말까지는 거의 집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동 자문위원회가 복잡·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환경에 시의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정책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적·재정적 뒷받침을 지원하되, 금년도에 참석률이 낮은 자문위원은 2003년도 자문위원 선정시 제고하는 등 자문위원회 활동이 효율적이고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참고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서)

(공정거래위원회)

○朴柱宣 委員

신용카드시장의 독과점화와 진입 제한문제

- 2001년 말 현재 신용카드시장에는 7개의 전업카드회사와 19개 겸영카드회사 등 총 26개사가 영업하고 있습니다.
 - 겸영카드회사(은행) 중 12개사는 공동출자로 BC카드(주)를 설립하여 가맹점 관리, 가맹점 공동이용, 카드대금 공동결제 등의 업무를 공동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7개사는 각자의 고유브랜드를 사용하면서 국민카드와 외환카드의 가맹점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BC카드, 엘지카드, 삼성카드, 국민카드 등 4개사가 국내시장의 91.1%를 차지(2000년 기준)하고 있는 독과점시장입니다.
- 또한 전업카드회사와 겸영카드회사로 구분해 보면, 7개 전업카드 회사들의 시장점유율이 65.1%를 차지하고 있는데 겸영카드회사들의 수수료율이 전업카드회사들에 비하여 3% 정도 낮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이 시장점유율이 높은 것은 전업카드회사들의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서 기인
- 그런데 국내 신용카드 시장규모는 대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업의 허가제로 인하여 신규사업자의 진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기존의 신용카드회사들의 당기순이익이 대폭 증가하고, 수수료율 결정 등 신용카드회사 간의 품질 및 서비스 가격경쟁을 제한하여 독과점 시장구조를 고착화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내 신용카드시장은 사용자(소비자)의 신용서비스 가격에 대한 수요탄력성이 낮아 신용카드회사들의 시장지배력 행사가 용이하며, 신용서비스 가격이 하방 경직적인 성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 이러한 특성으로 가격경쟁보다는 무이자 할부행사나 마일리지, 서비스 할인 제휴 등을 통한 비가격 경쟁으로 시장점유율의 확대를 모색
- 신용카드업은 회원 및 가맹점, 전산시스템 등의 인프라 구축 등을 위한 자본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주로 대기업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울러 자금 운용이 신용에 의존하는 까닭에 리스크 관리능력이 기업의 수익성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어 이러한 고위험이 높은 수수료율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금년 6월 현재 신용카드회사들의 조

달금리가 5.5~7.3%인 반면, 현금서비스 수수료율이 11.9%~23.6%에 이르고 있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 신용카드사들은 이러한 독과점적 시장특성하에서 과당경쟁은 물론 담합 등의 각종 불공정행위를 자행하여 왔습니다.
 - 수수료 등의 담합인상 등 부당공동행위, 지나치게 높은 수수료율의 유지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 정부의 신용카드업 허가제는 국내카드산업을 보호·육성하는 데 있어 긍정적인 효과도 있으나, 허가 받은 기업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가 초래되고, 이로 인하여 가격담합과 같은 경쟁제한적인 행위를 조장하여 치열한 경쟁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경쟁력이 약화되고 소비자에게도 피해를 주게 되었습니다.
 - 신용카드시장에서 비가격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재벌계 카드사가 계열 관계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경쟁카드사에 대해서는 제공하지 않거나 차별적으로 이용하게 하는 등으로 구속조건부거래행위나 차별적 취급행위 등을 자행하여 경쟁을 저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또한 신규 신용카드회사의 시장진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기존의 신용카드회사들이 가맹점들에게 신규 신용카드회사와 거래하지 못하도록 부당하게 구속하고, CD망을 가지고 있는 겸영카드회사들이 공동으로 전업카드회사들에게 은행의 CD망 이용을 거부하거나, 은행들이 전업카드회사들에게 은행의 CD망 이용수수료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CD망의 이용을 공동으로 거부하는 등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 기타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소비자를 상대로 광고를 하면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허위·과장·기만 등의 광고, 또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를 상대로 회원을 모집하면서 회원규약 조항에 신용카드회사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상대방인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조항을 설정하는 등 공정거래법이나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약칭 “표시광고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약칭 “약관법”) 등을 위반한 사례도 있습니다.
- 따라서 신규진입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러한 허가제가 오랜 기간 지속하는 경우 시장이 고착

화되어 나중에 이를 폐지하더라도 기존 참여자들이 담합 등으로 신규참여자의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경쟁제한적 시장구조의 형성을 초래하는 허가제의 폐지가 바람직합니다.

(질 의)

현재 신규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신용카드업 허가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신용카드회사 수를 늘리거나 허가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등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하여 왔는지 위원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신규진입 장벽이 완화되면 신용카드회사 간의 경쟁이 촉진되어 수수료 등의 인하는 물론 다양하고 특화된 서비스상품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기함과 아울러 소비자선택의 기회를 확대함으로써 소비자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는데 금감위원장은 신용카드업의 허가제를 고수하고 있는 사유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최근 금감원은 신용카드사들이 백화점물품 구매시 할인, 가맹점수수료율 면제 등의 과당·출혈경쟁을 하면서 외형 확대를 도모하여 경영부실화 및 카드회원의 과소비를 부추기고 있다고 하면서 신용카드시장의 왜곡을 방지하고, 경영의 내실화 등을 위하여 카드사들의 공정경쟁을 위한 자율결의와 건전경영 등을 주문하고, 과당경쟁을 지속할 경우 이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10. 15)

(질 의)

이와 같은 카드업체 간 과당·출혈적 경쟁에 따른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는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유인하거나 강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 23조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므로 행위자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 의)

카드사들은 금융당국이 사장단회의나 실무자회의 등을 자주 소집하여 과도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금융감독원장의 견해는?

- 최근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업계가 가격을 올리거나 서비스를 제한하는 것에 대해 공정위는

담합이므로 제제가 당연하다는 입장인 반면 관련 부처는 결국 소비자를 보호하거나 특정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가피한 조치라고 맞서 업계만 피해를 보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예컨대 카드사들은 최근 백화점과 할인점에 적용하는 카드수수료의 차등 적용이 구 재무부의 권고에 의한 것인데도 공정위는 담합혐의로 과징금을 부과처분하였다고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질 의)

이와 같은 정부의 행정지도나 행정명령 등에 의한 과도한 시장 개입은 결국 공정경쟁을 저해하게 될 것이므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와 대책은?

○朴柱千 委員

사업예산 관련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세출예산안 중 주요사업비와 관련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주요사업비 내역을 보면, 독과점 시장개선 사업비 등 12개 계속사업을 위해 전년도 대비 15.4%가 증가한 29억 2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신규사업으로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지원비 1억 1200만 원,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 심판 경연대회 개최비 7015만 원, 총 1억 8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기관 특성상 인건비 대 사업예산 비율이 통상 7 대 3으로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많지 않은 사업예산을 최적 편성하고자 하는 공정위의 남다른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까.

먼저 대학생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 개최비 7000만 원은 납득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취지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공정위가 주관이 돼서 경연대회를 개최한다는 것이 사리에 맞지를 않습니다. 대학이 알아서 할 일이며, 대학생 자율에 맡겨야 할 일입니다.

효용과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국가기관마다 경연대회를 주최한다면, 나라 전체가 경연대회장이 될 것이며, 경연대회로 날을 지새도 모자랄 것입니다.

둘째, 공정위는 경연대회 예산 7000만 원 중 대회 개최경비 4100만 원, 시상금 29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그 세부내역을 보면 15개 대학 준비 지원금으로 1500만 원, 6개팀 시상금으로 2900만 원 등등의 소요경비를 예산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대학 중 15개 대학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 지원금을 줄 것인지, 시상금이 꼭 6개 팀이 돼야 하는지, 학생신분에 시상금 500만 원 안팎이 합당한지, 정부기관의 사업비로는 극소단위에 속하는 7000만 원에 불과한 사업비 지출에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공정위가 안 해도 되는 사업을 하고자 하기 때문입니다.

학생들에게 공정거래제도를 이해시키고자 하고,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자 하는 공정위의 의지가 그렇게 간절하다면 굳이 예산사업을 통하지 않더라도 방법은 있습니다.

공정위 소속 분들이 대학에 출강이라도 나가고, 관련 학술세미나 등에 참여를 확대한다면 나름대로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봅니다.

또 경연대회를 통해 공정거래정책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정부정책에 자발적인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사업 추진 배경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순히 경연대회를 통해 인식이 확산되고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히 비합리적인 사고입니다.

공정위가 공정거래의 표준을 제시하고 시장질서를 바로잡아가는 역할을 잘 한다면, 그보다 더 큰 인식의 확산과 협력 유도수단은 없습니다.

이상과 관련해서 위원장의 견해를 말씀 바라며, 동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 볼 의향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신규사업 중 2003년도 예산안에는 없지만 공정위가 당초에 요구했던 불공정약관 규제사업비와 같은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고 봅니다.

공정위가 밝히고 있듯이 불공정약관 규제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했던 표준약관 보급, 주요 사용약관 실태조사와 같은 일들은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현재 국내 통용 약관이 33만여 개에 이르고, 불공정거래약관사건 접수건수가 매년 증가추세에 있는 점들을 감안할 때,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해야 하는 필요성은 더욱 증대된다고 보겠습니다.

비록 소비자보호제도 운영사업 중 표준약관보

급 확대 예산이 22.1% 증가함으로써, 예산상 당초 공정위가 구상했던 불공정거래약관 규제사업 중 일부를 흡수했다고 볼 수는 있으나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불공정거래 약관 규제를 위해 예산 추가확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장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보화기반 확충사업 예산이 4억 8543만 원으로 전년도(4억 9566만 원) 예산과 대비해 2.1%가 오히려 감소한 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정보화기반 구축으로 공정위 업무의 생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됨은 물론 국민 편익을 위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는 등 그 효과는 기대 이상이라는 사실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공정위가 요구했던 전년도 대비 122.4%가 증가한 11억 원의 사업예산에는 물론 전년도 동일사업 예산에도 못 미치는 예산 편성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관련 법령에도 도입을 명시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으로 이송된 전자문서의 보존, 검색 및 활용기능과 기록물 관리기능, 목록 관리기능, 서로 관리기능 등을 가능하도록 하는 자료관시스템이 예산 미확보로 구축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정보화기반 확충 사업예산 중 부족예산에 대비해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신지, 부족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어떤 노력을 해주실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安大崙 委員

소비자피해 관련 분쟁조정 지원 보조금 예산문제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2쪽의 전자상거래·특수판매 시장질서 확립사업과 관련하여 동 사업은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법의 제정 및 전문 개정에 따라 200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1억 9593만 원 대비 155.0%가 증가된 4억 9953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① 동 예산안 중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및 방지활동 지원을 위한 보조금 예산 2억 6043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예산 중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지원 보조금으로 1억 500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 돈을 어디에 사용하실 것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지원 보조금을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및 방문판매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기구에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② 우리나라의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어느 단체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여기에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는 한국소비자보호원,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시·도지사가 설치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기구가 있습니다.

③ 이중 한국소비자보호원의 경우에는 소비자보호법에 의해 이미 전자상거래 및 특수판매분야를 포함한 소비자분쟁에 대한 상담 및 분쟁조정결정을 수행하고 있으며, 국가·지방자치단체·소비자단체는 피해구제 청구를 할 수 있고, 동 업무를 위하여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이미 정부로부터 2002년도의 경우에는 131억 원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굳이 공정거래위원회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이 재정경제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정부부처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한 부처 이기주의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⑤ 이미 130억 원 이상의 정부출연금을 지원 받고 있는 한국 소비자보호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이므로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한국소비자보호원에게 예산을 지원할 생각입니까?

⑥ 또한 예산안을 보면, 현재 설치·운영되지도 않고 있는 시·도지사가 설치한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어떠한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분쟁조정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 내용과 어느 지방자치단체에게 예산을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 공정거래위원장께서는 말씀해 보세요.

⑦ 따라서 아직 세부적인 예산집행 계획이 없이 분쟁조정 지원 보조금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년도에 예산 계상 신청을 받아 이를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는 보조금의예산및 관리에관한법률의 취지에 벗어나는 것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며, 세부적인 예산 집행에 대한 계획 없이 국회에서 예산 심의를 받으려는 것은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

는 것이므로 동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삭감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출한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18쪽을 보면,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소개되고 있으며, 동 대회를 위하여 7015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1.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를 보면, 모의 심판 경연 대회는 2002년에 처음으로 실시하였으며, 2002년도 예산 집행실적은 3234만 원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우선 2002년도에는 동 사업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예산을 사용하여 동 사업을 추진하였는데 이는 국회에서 정한 바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지 아니한 사례로 생각되며, 동 대회가 국회에서 편성한 예산과 달리 예산을 집행할 만큼 시급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적절한 예산 집행이었는지 공정거래위원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동 대회와 관련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에 비해 116.9%가 증가하였는데 증가한 사유는 참가대학 경연대회 준비를 지원하기 위해 1500만 원이 계상되었고, 입상팀 시상금이 2배 이상 증가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장은 다른 정부의 어떤 부처가 경연대회에서 경연대회 참가 준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예산을 계상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 사례가 있으면 밝혀 주시겠습니까?
3. 참가대학의 경연대회 준비를 위하여 참가비를 지원하는 것은 참가대학의 범위를 대폭적으로 증가시켜 예산지원의 효과를 저하시키고, 각 참가대학별로 참가 준비를 위한 비용 소요를 파악할 수 없고 각 참가대학별 소요금액도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따라서 동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4. 또한 시상금의 금액을 2002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증가시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동 경연대회에서 입상할 경우 임용에 있어서 특전이 부여되고 있으며, 대회의 취지상 시상금 증액을 통한 경제적인 유인보다는 공정거래법에 대한 대학생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참여

를 통해 동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단순히 참가 대상인원이 다수라는 이유로 시상금 예산을 100% 이상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되는데 공정거래위원장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세입예산안과 관련하여

세입·세출예산안 개요 2쪽을 보면,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소관 세입예산안은 2002년도 예산 1351억 1235만 원에 비해 3.6%가 감소된 1302억 7406만 원이며, 이중 과징금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2003년도 과징금 예산안의 산정방식은 2002년도 미납이월액 중 수납예상액과 2003년도 과징금 신규 부과액 중 수납예상액, 집행정지액 중 2003년도 승소가능예상액을 합한 것으로 다소 복잡한 산출방식에 의해 과징금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1. 이중 집행정지액 중 2003년도 승소가능예상액은 현대자동차(주)의 12개사에서 제기한 부당내부거래사건밖에 없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승소가능예상액을 52억 8000만 원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소가능예상액의 산출사유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52억 8000만 원이 현대와 관련된 집행정지액으로 정확한지 말씀해 주세요.
2. 2002년도 9월 말 현재 과징금 집행정지 계류사건은 총 45건에 미수납된 과징금이 850억 565만 원이며, 이중 대부분이 '98년도에 제소된 사건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들이 언제쯤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3. 또한 가산금의 산정에 있어서는 과징금 산출방식과 다르게 통계수치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군납유류 부과분 1211억 7900만 원을 제외하지 않아 가산금의 수납률을 크게 낮추고 있어 적절한 산출방식이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향후 공정거래위원회는 과징금 산출에 있어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李性憲 委員

현대상선, 현대건설의 자료 제출이 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시행을 위한 목적의 위반인가?

본 위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2000년도와 2002년도 현대그룹계열사로부터 제출받은 내부거래조사표 사본과 그 사본 제출 시 법적 하자가 없는 자료를 특정하기 위해 열람 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일언반구 답변이 없다가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심사를 앞두고 어제 메일로 답변 자료를 보냈습니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시행을 위한 목적에 위배된다’는 것이 그 요지였습니다.

본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시행을 위한 목적외의 이용’에 해당하는가? 답변 바랍니다.

- 1)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에게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가 위법행위란 말인가? 지난 10월 1일과 2일 양일에 걸쳐 본 위원은 “00년 8월 16일부터 10월 14일까지 실시된 4차 4대 현대그룹 조사 시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당좌 대출 받은 4900억 원’의 내역을 파악하고 있었나”를 물었습니다.
- 2) 그때 위원장은 “회사에서 제출하지 않는 자료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는 요지의 답변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실제로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이 실제로 산업은행으로부터 얼마나 신용공여를 받았는지, 그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입니다.
- 3) 지금 위원장은 일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법 적용을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위원장이 지난 7월에 기존 4대 그룹 계열사에 대한 조사를 ‘대규모 부당내부거래공시 이행 실태’ 점검이라고 하면서 대기업집단에게 자료를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4)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정공시에 관한 규정 제14조 자료의 제출 규정을 보면 “수탁기관 (금융감독위원회) 및 공정거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내부거래공시대상회사에 대해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규정에 의거해 자료를 요구했는가? 아니지 않는가? 왜 위원장은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제도를 점검할 수 있고 이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7월 22일 각 기업들에게 보낸 공문서에는 왜 “공정거래법 23조1항7호에 의거,

부당하게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에 대해 가지급금, 대여금, 인력, 부동산, 유가증권 등을 제공하거나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해 계열회사를 포함한 특수관계인 또는 다른 회사를 지원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조항을 들어 자료를 요구하는가?

지난 번 본 위원이 공개한 문서에 언급되어 있던 SK그룹 계열사 20개를 예로 들겠습니다. 총 20개 중에서 99년 8월 1일부터 02년 8월 11일까지 내부거래 공시건수가 전혀 없는 회사인 넷츠고, 부산도시가스, 와이더덴닷컴, 대한도시가스, 스텔라해운, 에스케이엔론 등 모두 7개나 서면조사대상업체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어떻게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건수가 전혀 없는 회사들에 대해 “공시관련 자료 제출 규정”에 의거해 자료를 요구한 것도 아니고, 적반하장격으로 부당내부거래규정을 적용해 그것도 처벌조항까지 언급하면서 광범위한 자료를 징구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를 답변 바랍니다.

적용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으면 몰라도 명백히 있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행위를 적법하다고 볼 수 있는가? 적법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위원장의 답변대로 공정거래법 시행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보는가? 답변 바랍니다.

- 5) 현재 현대상선이 산업은행으로부터 4900억 원을 당좌차월 등 대출을 받는 과정에서 서류 조작, 서류 허위 기재, 대출금 용처 불분명 등 위법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은 과연 현대상선, 현대건설 등 현대계열사들이 제대로 된 자료를 제출했다고 확신하는가? 아니면 제출된 자료의 진위여부에 대해 허위 또는 누락 기재여부를 확인해야 된다고 판단하는가?

※ 현대상선과 현대건설의 산업은행에 대한 신용공여현황에 대해 묻겠습니다. 그 내역이 기재되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 2000년 6월 7일 현대상선이 현대건설에 1000억 원 CP를 인수한 것과 관련하여 현대건설이 현대상선에게 1000억 원을 상환했는가?

대우그룹 김우중 회장에 대해서는 제보자가 누구인지도 모르며 가공인물일 수도 있는 사람으로부터 배달된 자료만 보고, 그 자료가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위장계열사 조사를 벌여, 허위자료 제출로 검찰에 고발까지 한 공정

거래위원회가 아닌가?

그런데 허위 기재 및 누락여부를 확인해 공정거래법 위반사실이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 확인하고자 하는 본 위원의 요구에 대해 공정거래법 시행을 위한 목적 외 사용이라고 주장한다면 누가 공정거래법 시행을 목적 외로 사용하고 있는 것인가? 바로 공정거래위원장 아닌가!! 내부거래 공시제도 규정에 나와 있는 자료 요구 규정도 옳게 적용하지 못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아닌가!

오늘 중으로 자료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부당내부거래 조사 예산을 반액 삭감하고, 대신 대규모 내부거래공시제도를 활성화시켜라!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의결정공시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얼마든지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해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관련 규정에 의거, 대대적인 대기업집단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이 건과 관련한 몇 건의 공시내용을 확인해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실제로 대기업집단에 대한 조사의 효율성을 따져 봅시다. 대규모내부거래 공시제도는 관련 기업들이 건별로 공시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여겨지는 공시 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의결정공시에관한규정 제14조에 의거, 얼마든지 공시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요청해 제출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공시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대기업에서 자료 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해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평가하고 있지 않은가?

더불어 금융감독원 또한 이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어 감독기관 간의 업무 공조가 가능해 업무량을 줄일 수 있습니다. 기업들도 건별로 대응하는 것이 낫지 가을철 토끼몰이식 대규모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저인망식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계속 받을 수는 없는 일입니다.

담당 직원이 건별로 이 공시에 대한 매일 매일의 분석 작업을 한다면 굳이 이제까지 대대적으로

로 진행시켜 온 대기업에 대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는 진행시킬 필요성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당초 이 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기업들의 해마다 진행되는 대규모 부당내부거래의 부담을 덜고자 도입했던 것입니다.

특히 대기업집단들의 경우 최첨단 금융기법을 동원해 건설업, 해운업 등 수출주력업체를 통한 비자금 조성, 이를 통한 계열사 우회 지원이 진행되고 있으나 이에 대해서는 전혀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국회가 부여했던 것은 역외펀드 등을 통한 최첨단 금융기법을 통한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라는 취지였습니다.

그런데 공정거래위원회는 3차 현대기업집단 계열회사에 대한 부당내부거래에서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컨티넨탈 그로스 인베스트먼트 엘티디”를 통한 해외채권 고가 매입 부당지원행위 단 1건에 그쳤습니다. 99년 7월 8일 요청한 금융거래 정보는 당시 거래자 인적사항 “컨티넨탈 그로스 인베스트먼트 엘티디, 고객명 COGE와 COGE2”였습니다.

2000년 6월 말 현재 30대 기업집단 소속기업의 역외펀드는 모두 18개였습니다.

당시 동양증권·동양생명 글로벌 벤처 테크펀드(00. 6. 20 설립 케이만군도 소재) 등 7개, 삼성증권 프로덕티브 링크 유니버셜 스페닝 펀드(97. 02. 22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1개, 현대증권 코리아옴티마 인베스트먼트(96. 05. 24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등 3개, 엘지증권 하이테크놀로지 벤처 인베스트먼트(00. 02. 28 설립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 등 엘지증권·엘지화재·엘지캐피탈 투자한 3개 펀드, SK증권 글로벌 프라임 인베스트먼트 엘티디(95. 05. 08 말레이시아 라부안 소재)가 있었습니다.

현재는 그 수가 더 늘어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현황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공정거래 위원장은 무작위 추출식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조사보다 부당내부거래 가능성의 확률이 높은 역외펀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 고도화되는 대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형태에 대해 유형별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 낫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테마식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할 의향은 없는가? 특히 역외펀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라고 부여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정작 이제까지 단 1건밖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가 당초 하려했던 서면 조사를 차후로 미루고 오히려 역외펀드를 이용한 과거 대기업집단과 현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조사라는 테마형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장의 견해는? 또 이를 위해 기술적 보완을 하기 위한 금융감독원과 업무 협조의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대대적인 현장주의 조사를 줄이기 위해 조사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관련 예산을 반액 삭감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지난 7월 본 위원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이번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 이행실태 점검을 빙자한 부당내부거래 조사라는 것이 이번 공정거래위원회의 내부 문서를 통해 밝혀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상임위원 3인, 비상임위원 4인 등 총 9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로 구성 운영되고 있는 독특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조사기관입니다. 공정거래법소관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 없이는 검찰도 고발할 수 없는 막강한 권한이 부여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은 향후 공정거래위원회의 모든 조사계획들도 위원회 안건에 정식으로 회부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자 합니다. 이렇게 할 때만이 공정거래위원장 1인의 독단적인 조사권 남용을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제7조(금융기관에 대한 상시 감시) ① 감독원장은 금융기관에 대한 상시감시를 통하여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는 금융기관 또는 취약부문을 조기에 식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감독원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감시 결과에 따라 감독 및 검사업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조치의 종류는 감독원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8조(검사실시) ① 감독원장은 감독기구설치법 제37조의 규정 및 금융업관련법과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금융기관의 업무 및 재산상황 또는 특정부문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② 관계법령에 의하여 금감위가 감독원장으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는 금융기관에 대하여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감독원장이 검사를 실시한다.

③ 검사의 종류는 종합검사와 부문검사로 구분하고, 검사의 실시는 현장검사 또는 서면검사의 방법으로 행한다.

제9조(자료제출 요구 등) ① 감독원장은 검사 및 상시감시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기구설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금융기관에 대하여 업무 또는 재산에 관한 보고 및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보험업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자 등에 대하여 진술서의 제출, 증언 또는 장부·서류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1.11.13)

② 제1항에 의한 자료의 제출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망을 말한다)을 이용한 전자문서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신설 2001. 11. 13)

연구개발비 중 과다 전용문제와 삭감

□ 질의사항

2003년도 각 국별 연구개발비 세부과제 및 예산액을 살펴보면 기관운영비에서 1억 4300만 원, 정책국에서 3011만 7000원, 독점국에서 1억 33만 1000원, 독점국 기본사업비에서 3014만 4000원, 소비자보호국이 4억 3641만 7000원, 하도급국이 1억 175만 8000원으로 모두 25개 연구과제에 8억 4176만 7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 규모는 공정위의 2003년도 예산안 271억 3093만 6000원 중 인건비 190억 1657만 원을 제하고 남은 기본사업비와 주요사업비 중 주요사업비 31억 707만 원의 27%에 해당하는 예산입니다. 공정위 예산 중 막대한 규모가 연구개발비에 투입되고 있는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안 중 가장 많은 연구개발비 예산을 계상하고 있는 소비자보호국의 경우, 주요사업인 소비자보호운영(1141-211) 및 전자상거래·특수판매 시장질서 확립(1141-212) 사업에 연구용역비가 각각 3억 2016만 원, 1억 1626만 원 등 소비자보호국 주요사업비에 총 4억 3642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동 연구용역비의 내용은 중요정보공개제 운영

을 위한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표준약관 보급, 소비자안전법률 제정 연구, 특수판매분야 소비자 보호지침 작성 연구 등입니다.

하지만 동 연구개발비에 대한 '00년~'01년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표>와 같이 전용 금액이 대규모로 발생하는 등 당초 계획과는 달리 집행되며, 연례적으로 전용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표> '00~'01년도 연구개발비 결산내역
(단위 : 천 원)

연 도	예산액	전용액	예산현액	집행액	불용액
2000	479,942	△101,584	378,358	378,310	48
2001	535,787	△103,291	432,496	424,120	8,376

소비자보호국의 연구개발비는 <표>와 같이 '00년 및 '01년도에 각각 1억 158만 원, 1억 329만 원의 전용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현상은 동 예산이 실제 필요한 소요금액보다 과다 편성되어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므로 동 예산규모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소비자보호국의 경우를 볼 때 본 위원은 연구개발비가 공정위의 싹짓돈으로 쓰여 전용에 이용되고 있다는 판단에 이르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매년 예산안 심의 때 반복되는 지적이지만 연구개발비에 대한 적절한 배정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불요불급한 연구개발은 지양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본 위원은 특히 연구용역계획 중 소비자안전법률 제정 연구(2498만 원) 용역 과제를 통하여 공정위가 소비자안전법률(가칭)을 추진하려 하고 있으나, 소비자안전에관한법률은 직제상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보호국보다는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에서 담당하는 것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전액 감액돼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01년도부터 소비자보호국 연구개발비에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조사 과제가 1500만 원 또는 20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그 집행실적은 20%대 수준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표시·광고의 부당성 판단은 보는 입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필요 시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인성 여부를 직접 실태조사를 할 필요가 있어 '01년부터 예산에 계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집행실적은 '01,

'02년도에 각각 1건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03년도 예산안에도 3회에 걸친 소비자 오인성 조사예산(1500만 원)을 계상하고 있으나 현재까지의 실적을 고려하여 동 예산규모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 위원은 공정위의 연구개발비가 매년, 불용과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 비쳐 적절한 사업성과를 위해 집행이 저조한 매년 반복된 연구용역 부문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訓平 委員

행정소송 비용관련

지난 17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가 자동차 보험료 인상 담합을 이유로 11개 손해보험사에게 74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됐다며 과징금 부과를 취소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당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보험료 인상이 담합에 의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 이번 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2. 행정소송 수행을 위한 공정위의 예산은 2001년 2억 7000만 원, 올해 3억 4000만 원에서 내년에는 4억 2000만 원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년간 소송수행 비용을 보면 매년 당초 예산액을 훨씬 초과하여 집행되었고, 행정소송 제기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내년도도 소송비용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행정소송 비용 관련 내년도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의문이 드는데 편성 근거를 밝혀 주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최근 공정위의 행정처분에 대한 해당 기업들의 소송 제기와 공정위의 패소판결이 증가하고 있어 공정위의 위상과 신뢰성에 큰 타격을 주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공정위의 예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의 증가로 인한 예산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기 위해서는 소송제기 원인

을 사전에 제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과징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좀더 철저하게 법률을 검토하고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 관련

공정위가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는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제도는 부당공동행위의 예방 및 근절이라는 당초의 목적을 전혀 달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보상제도의 운영을 위해 올해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현재까지 보상금을 지급한 실적은 단 한 건, 600만 원에 불과합니다.

1. 이처럼 보상제도의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2. 보상제도와 관련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하게 5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어떠한 근거로 편성된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3. 올해의 저조한 집행실적으로 볼 때 내년도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합니다.

따라서 동 예산을 삭감 조정하거나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대학생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관련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향후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모의 공정거래위원회 심판 경연대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공정거래법 및 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고,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1. 동 사업은 올해의 경우 14개 대학에서 250여 명이 참여하였으며, 예산 집행실적은 3200만원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대회가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보고 있는지 평가 결과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2. 동 사업의 내년도의 예산은 올해보다 2배 증가한 7015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가항목을 보면, 입상팀에 대한 시상금이 1400만 원에서 1900만 원으로 증가하였고

참가대학 준비 지원금 1500만 원이 신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내년 대회의 일정 및 참가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또한 내년 대회의 참가규모를 어떻게 예상하는지 답변 바라며, 공정위의 예상보다 많은 수의 학생들이 참여할 경우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3. 시장경제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행위자인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모의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최도 중요하지만 직접 당사자인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 공정위에서 마련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부당지원행위 조사 관련

부당내부거래는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여 결과적으로 국가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만큼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는 것은 공정위의 가장 중요한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부당지원행위 조사를 위한 예산은 지난해 2억 9000만 원에서 올해는 2억 1600만 원으로 감액되었고, 내년에도 올해와 동일한 예산액이 편성되었습니다.

1. 그러나 예산의 집행실적을 보면 집행 비율의 경우 지난해가 77.4%, 올해는 7월까지 35.4%에 불과하며 당초 계획과 다른 용도로 집행이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또한 조사 횟수도 예년의 세 차례 정도에서 지난해와 올해는 각각 두 차례로 감소하였습니다.

결국 부당내부거래를 방지하기 위한 공정위의 정책적 의지가 약화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부당지원행위 조사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집행실적 또한 저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지 답변 바랍니다.

그리고 내년도 부당내부거래의 구체적인 조사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2. 부당내부거래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공정위의 부단한 감시와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현재 공정위는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혐의를 잡고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崔在昇 委員

세입예산안 산정의 일관성과 적정성 문제
 - 과징금 예상 수입 산정과 과징금 폭증에 대한 대책은?
 - '03년 과징금 승소 예상 가능액이 급감하는 이유는?

'02년도 예산결산에서도 지적된 바가 있습니다만, 공정거래위원회 예산 수립 및 편성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문제는 세입예산안 산정입니다.

즉, 세입예산의 대부분(2003년의 경우, 96.9%)을 차지하는 과징금 수입이 일관되게, 그리고 적정하게 예측 산정되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03년도 공정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약 48억이 감소한, 1302억 7406만 원으로, 이중 과징금 예상 수입이 1262억 9800만 원, 체납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39억 4050만 원, 기타 경상이전수입 3400만 원입니다.

이중 1262억 9800만 원에 이르는 과징금 수입은 위원회의 2003년 세출예산 총액 271억 3094만 원의 거의 5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과징금 예상 수입의 구체적인 내역은 '02년도 미납이월액(집행정지액 제외) 중 수납 예상액, '03년도 과징금 신규부과 예상액 중 수납예상액, 소송계류 중이어서 집행정지된 금액 중, '03년도 확정판결에서 승소하여 징수가 예상되는 승소 가능액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각각의 항목에 대하여 최근 3개년 동안의 평균 과징금 부가액, 수납률 및 미수납률, 승소율 등을 종합하여 산정한 방식을 보면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02년도 과징금 예상부과액(9~10월)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과징금부과액이 비정상적으로 큰 군납유류 건(약 1211억)이 포함된 '00년도 통계를 제외했지만, 평균 과징금 수납률 산정 시에는 '00년도 통계를 포함(이중 군납유류부과분은 제외)하여 산정하는 등 일관된 기준이 없습니다.

'00년도에 부과된 과징금이 비정상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는 세입예산안 산정에 있어서 일관된 기준이 없거나 또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비록 공정위의 세출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더라도 이는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예산에 대한 계획성 있는 집행에 차질을 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

위원장께서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 바라며, 아울러 이에 대한 제도적 방안이나 대안이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03년도 과징금 예상수입 산정에 있어서 또 하나 문제는 '03년도 과징금 승소 예상액이 지나치게 적게 산정된 것은 아닌가 하는 점입니다.

소송 계류로 인하여 집행 정지된 과징금 중, 공정위가 '03년도에 승소하여 징수가 가능하다고 예상한 내역을 보면, 현재 계류 중인 전체 45건(과징금 총액은 약 850억)중, 유일하게 현대자동차 외 12개사 부당내부거래 건(과징금 추산액 52억)만이 승소 판결이 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3년간 과징금관련 소송기간이 평균 2년 3개월임을 감안하면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은 대부분 98년도에 제소한 사건으로서 상당수가 '03년도에 확정판결이 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공정위의 승소율(일부 승소 포함 80%를 상회함)과 최근 3년간 과징금 관련 소송에서 확정판결 이후 결정된 과징금액이 애초 소송 과징금액의 평균 94.1%에 이릅니다.

따라서 현재 계류 중인 사건의 과징금 총액 850억 원 중, 50억만을 징수한다는 전망은 '03년도 확정판결 실적을 지나치게 축소하거나 승소율을 매우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는 지적을 면키 어렵습니다.

위원장님, 이러한 전망의 근거가 무엇입니까? 혹시 수납할 과징금이 해마다 늘어나는 것이 부담스럽기 때문은 아닙니까?

공정위가 스스로 승소 비율을 낮게 전망하고 있다면 과징금 업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02년 예산 결산심사에서 과징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현실에서 과징금 징수, 과징금 관련 소송, 세입예산 산정 등에 있어서 종합적인 정책과 대안이 없는 한 늘어나는 과징금이 부담이 되어 공정위 내·외부적으로 이에 대한 일종의 심리적 기피와 거부감이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 바가 있습니다.

'03년도 과징금 예상 수입을 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일관성이 떨어지고 승소예상액을 비관적

으로 전망하는 모습을 보면서, 혹시 이러한 기우가 현실화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저조한 과징금 수납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공정위의 고육지책은 아닌가 하는 우려를 감출 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 기회에 과징금 관련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나 대책 수립의 의향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출예산 증감분에 대한 집행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 예산 전용 감액 및 불용 관행 근절을 위한 대책과 의지는?
-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금제도 실질화 방안은?

2003년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예산 대비 7.7%(19억 3650만 원)가 증가한 271억 3094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전체의 70.1%(약 190억), 나머지 사업비(주요사업비, 기본사업비)는 약 81억 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처럼 이중 7.7% 증액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역시 큰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나머지 사업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예산편성 취지와 구성에 찬성하면서 확인 차원에서 질의하겠습니다.

'03년도 사업비 예산 증액현황을 보면, 기본사업비가 전년 대비 3.4%(1억 6477만 원) 증액된 50억 730만 원이며, 주요사업비는 전년 대비 22.6%(5억 7287만 원) 증액된 31억 707만 원입니다.

주요사업비의 증액현황 중,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지원사업(1억 1200만 원), 전자상거래 및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 및 방지활동 지원예산(2억 6043원)등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먼저 이들 신규사업의 의의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고,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의지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지난번 예산결산에서 소비자 보호가 향후 공정위의 주요 업무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질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여러 위원들이 이러한 시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보호국이 계획 사업을 강력히 집행하지 못해서 예산 전용 및 불용의 문제가 발생했

다고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03년도 소비자보호국의 주요 사업비 내역을 보면 연구용역비가 4억 3642만 원으로 여전히 높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의 연구개발비 예산 전용액이 해마다 1억 원을 넘고 있고, 불용액도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다면 이러한 예산 집행 관행이 반복될 소지 또한 충분하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위원회 차원의 강력한 집행의지가 필요할 것입니다.

위원장님, 소비자보호국의 내년도 연구개발사업의 주요 내역과 그 의의 및 필요성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이 전용 및 불용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이 자리에서 강력한 집행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부당공동행위 제보자 보상금제도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부당공동행위는 물증을 찾기가 매우 어려운 불법행위라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올 2월 제도가 실시된 이후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 실적은 단 한 건(600만 원)으로 전체 예산(5000만 원)의 12%만이 집행되었습니다.

따라서 일부에서는 동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며 예산감액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이러한 지적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본 위원은 현재의 보상금제도가 부당공동행위에 가담한 내부자가 아닌 제3자만을 보상금 지급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제3자가 핵심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동 제도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많다는 점에서 반대합니다.

앞서 말씀 드린 바와 같이 부당행위 적발 자체가 매우 어렵고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사안이라는 점 그리고 동 제도가 지니는 심리적, 예방적 기능을 생각한다면 오히려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다만 동 제도가 현재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활성화되기 위해서 위원회 차원의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자의 기준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하거나 결정적인 제보 및 증거자료의 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제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동 제도의 긍정적인 측면을 계속 확대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현재처럼 제도 시행 초기의 문제점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서 현재 배정된 예산 5000만 원을 보상금 지급에만 국한하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동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을 국민과 언론에 적극 홍보하는 사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위원장님의 견해와 향후 의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田瑢源 委員

과학적인 부당 표시광고 심사의 필요성

2001년도부터 소비자보호국 연구개발비로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에 조사 관련 비용이 계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동 비용의 집행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에 의하면 부당한 표시광고는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네 가지 유형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이중 허위·과장의 표시·광고나 부당 비교광고 등의 경우 객관적인 사실 등에 기초한 조사를 통해 위법성 여부가 판단될 수 있으나 기만적인 표시·광고의 경우는 위법성 판단 시 기만성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이 선행되어야 하며, 심사관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 예산에 계상된 소비자오인성 조사비 예산은 그동안의 집행규모에 비추어 볼 때 5~6건 정도의 조사만이 가능한 최소한의 규모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았다는 것은 공정위의 표시광고 심사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수행되고 있다는 점을 보여 준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표시광고 심사의 과학화를 위해 소비자오인성 조사비 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는 공정위의 표시광고 심사 과학화의 노력이 선행되어야 하는 것일 것입니다.

공정위가 지금까지 소비자오인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한 이유와 앞으로 표시광고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公正去來委員長 李南基

(朴柱宣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신용카드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신용카드사 신규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는 허가 기준 등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정위가 이를 위해 현재까지 어떠한 노력을 하였는지 물으셨습니다.

□ 공정위는 금년도 신용카드업에 대한 시장구조 개선대책을 추진 중이며 상반기에는 주로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거래행위 시정에 주력하였습니다.

※ 금년도 5월에 신용카드 4개사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신용카드사들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 향후 신용카드시장의 경쟁 촉진을 위해 신용카드업에 대한 허가요건을 완화하는 문제 등에 대해서는 관련부처(금감위, 재정부)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카드업체 간의 과당·출혈적 경쟁이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공정거래법 제23조의 ‘부당한 고객 유인’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과다한 경품의 제공이나 기만적인 방법 등에 의한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어야 합니다.

□ 최근 카드업체 간의 과당·출혈적 고객 유인행위는 동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 1차적으로 카드업체가 자체적으로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금감위와 협의(2002. 10. 17)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신용카드업체가 자율규약을 제정하여 공정위에 심사요청할 경우 동 규약의 적법성을 심사하여 이를 시행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최근 금융당국을 포함한 행정지도나 행정명령 등에 관한 과도한 시장 개입은 공정경쟁을 저해하므로 억제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견해와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에 따른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의 행위가 담합요건을 갖출 경우 원칙적으로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는 기본입장을 지난 '99. 8월 공표한 바 있습니다.
- 행정지도에 의한 가이드라인 등 통일적인 기준의 제시가 있는 경우 담합의 성립도 용이해진다는 측면에서 공정위는 위와 같은 기본입장을 마련, 공표하고 이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행정지도가 개입된 담합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법 집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 향후에도 공정위는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지도에 의한 담합에 대하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여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

(朴柱千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는 국가가 추진해 기보다는 대학이 자율적으로 개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하시면서 동 대회를 국가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는 이유를 물으셨습니다.

-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제국들의 경우를 보면 경쟁법이 도입된 지 40년 내지 100년을 넘을 정도가 되어
 - 그동안 경쟁법에 대한 인식 확산과 함께 많은 학문적·법률적인 발전으로 상당한 수준에 이르고 있어 기업들이 국경 없는 경쟁시대에 잘 적응해 가고 있습니다.
- 이에 비하면 우리나라는 공정거래법이 도입된 지 20년 정도로 아직도 경쟁질서에 대한 공감대 확산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선진제국의 기업들과 경쟁하여 이기기 위해서는 공정거래질서 준수에 대한 인식 확산은 물론 동 제도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합니다.
 - 특히 미국의 경쟁법이 미국 대학의 연구인프라에서 제공되는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우리 대학에서도 공정거래법·제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한바, 본 대회를 통하여 진정한 시장경제질서 구축을 위해 공정거래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확산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 참가대학에 대한 지원금 제공방식, 시상팀이 꼭 6개 팀이 되어야 하는 이유 및 시상금 액수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경연대회 참가 준비를 위해 자료수집·연구검토비, 교통비·숙식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시상팀 수는 2002년도 대회에 준하여 결정하였으나 참가대학 규모, 경연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정할 계획이며,
 - 시상금액은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 금년 집행액 수준으로 삭감·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단순히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를 통해 공정거래제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기업과 국민들의 협력을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지적하시면서 본 사업을 전면 재검토할 의향이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시장경제질서 구축의 핵심법률인 공정거래법에 대한 교육·인식 부족으로 기업들의 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공정거래 조사를 방해하는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 본 대회는 향후 글로벌 경쟁시대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시장경제질서 구축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의 경쟁법이 미국 대학의 연구인프라에서 제공되는 이론적 성과를 바탕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우리 대학에서도 공정거래법·제도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며,
 - 대학(원)생들은 향후 수년 내 우리 경제·사회 각계에 진출하여 활동할 주역들인바, 본 대회를 통해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한편, 행사의 대외 홍보 및 관람을 통해 기업 및 일반국민들에게 시장경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켜 공정거래질서 의식을 제고하는 효과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불공정거래 약관 규제를 위해 예산 추가확보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시면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 2003년도 불공정약관 규제분야 예산은 올해보

다 4000만 원 증액된 총 2억 2000만 원으로 편성되었는바,

- 동 예산은 내년도에 추진할 25개 표준약관(2002년은 15개 예정) 보급 및 주요 거래분야 실태조사에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되었습니다.

□ 다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새로운 불공정약관 시정을 위한 직권조사와 표준약관의 보급·확산을 위한 교육·홍보예산의 반영은 미흡하다고 할 수 있으나,

- 편성된 예산을 최대한 내실 있게 집행하여 동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정보화기반 확충사업 예산이 4억 8543만 원으로 전년도(4억 9566만 원) 예산과 대비해 2.1%가 오히려 감소되어 당초 요구했던 자료관시스템 구축 등의 예산 미확보로 인한 사업 차질 우려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 우리 위원회는 정보화 기반 확충을 위하여 2001년부터 예산을 편성·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01년 : 1억 6400만 원, '02년 : 4억 9500만 원, '03년 : 4억 8500만 원)

□ 다만, 2003년도 예산이 2002년도 예산보다 다소 감소한 것은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 구축 예산이 정보화촉진기금에 일괄적으로 편성(500억 원)됨에 따른 것으로 이를 포함할 경우 실제적으로 예산은 대폭 증액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위원회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 구축 예산(5억 1700만 원)

□ 2003년도 예산으로 전자문서시스템 및 자료관시스템 구축, 홈페이지 서버 교체, 정보보안시스템 구축, 지식경영시스템 유지 보수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지원 보조금 1억 5000만 원을 어디에 사용할 계획인지와,

□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전자상거래 및 특수판매분야를 포함한 소비자 분쟁조정을 하고 있으며 이미 정부로부터 131억 원(2002년)의 예산을 지원 받고 있는데 굳이 공정위가 별도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성은 무엇인지,

- 공정위가 추가로 예산 지원을 하는 것은 부처 간 업무 협조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한 부처이기주의가 아닌지,
- 소보원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중복지원에 해당하는데 그래도 소보원에 예산을 지원할 것인지,

□ 현재 설치·운영되고 있지도 않은 소비자 피해 분쟁조정위원회에 어떻게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할 계획인지, 현재까지 지자체와의 협의내용과 어느 지자체에 얼마나 배정할 것인지에 대해 물으시면서,

□ 세부적인 예산 집행계획이 없이 예산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것이므로 삭감하여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 금번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예산은 산자부·재경부 등으로부터 지원을 받는 전자거래진흥원·소보원보다는 주로 지자체의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지원을 위한 것입니다.

- 분쟁조정기구는 각 지자체와 협의하여 설치를 희망하는 지역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 따라서 기존 소보원·전자거래진흥원에의 예산지원과 중복될 우려는 없습니다.

□ 또한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방문판매법에 따른 소비자피해 분쟁조정은 공정위 또는 지자체가 시정조치에 앞서 동 법률과 관련된 분쟁조정을 의뢰하는 것으로,

- 공정위가 수행해야 할 업무의 일부를 타 기관에 수행하도록 의뢰하면서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정위의 제한된 조직과 인력으로는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분쟁조정업무를 감당하기 곤란하며, 분쟁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함으로써 소비자 피해구제를 강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구체적인 예산 집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면,

- 현재 방문판매법, 전자상거래법의 집행과 관련하여 공정위-지자체 간 업무 범위 조정과 그 처리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 중에 있으며, 동 지침에 지자체 업무처리상 분쟁조정기구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각 지자체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 분쟁조정기구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분쟁조정 건수가 많으리라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설치토록 할 예정입니다.

- 특수판매·전자상거래분야의 소비자피해 분쟁이 상당수에 달하고 있는 서울시, 부산시, 대구시, 대전시, 광주시 등 각 지자체에 공정위가 필요 예산을 지원한다면 분쟁조정기구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분쟁조정기구 편성 및 운용과 관련한 사항은 기본적으로 각 지자체가 자체 실정에 맞추어 정하도록 하되,

- 각 지역 내 사업자대표, 소비자대표, 공익대표 등 5명 정도의 위원을 위촉하여 위원회 형식으로 구성·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예산 지원은 분쟁조정 처리실적에 따라 소요된 경비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 분쟁조정위원회의 사무국 기능에 해당되는 예산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공정위는 위원회 위원 사례비 및 기타 회의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 경비에 대해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2년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는 기편성된 다른 예산을 절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는바,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이유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2001년에 위원회 창립 20주년을 맞아 향후 공정거래질서 조기 정착을 위해 꼭 필요한 역점 사업을 발굴하면서

- 미래 경제의 주역인 대학(원)생에게 공정거래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연구인프라 구축을 위해 모의 공정위 개최를 역점사업 중 하나로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1년에 대학별로 모의 공정위를 개최하게 한 결과 그 성과가 지대한 것으로 나타나 2002년에는 경연대회 방식으로 전환하여 이를 추진하였고,

- 소요경비는 예산에 반영되어 있지 아니한 관계로 기존 예산을 절감하여 집행하였습니다.

타 부처에서 경연대회를 개최하면서 국가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 타 부처의 사례가 정확하게 파악되고 있지는 않으나, 대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실시하는 유사 국가예산사업으로는 통일부의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여성부의 여성 디지

털콘텐츠 공모전, 해양수산부의 해양스포츠 대전 등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 참가 대학에 일률적으로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으므로 동 예산의 삭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장의 생각을 물으셨습니다.

□ 경연대회 참가 준비를 위해서는 자료수집·연구검토비, 교통비·숙식비 등에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는데,

- 이를 대부분 학생들로 하여금 자비로 충당하게 하는 경우 경연대회 준비가 미흡하거나 참가에 어려움이 있는 등의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참가대학생들이 경연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최소한도로 지원하기 위해 지원금을 계상하였으나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 삭감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 시상금액 증가와 관련하여 참가자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대회를 개최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시상금액을 증액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하시면서 위원장의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학생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유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시상금을 증액시킨 것은 각 대학별 평균 구성 인원이 20명을 상회하고, 준비기간이 평균 2~3개월이 소요되는 점 등을 고려한 것이나, 예산심의·의결과정에서 금년 집행액 수준으로 삭감·조정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과징금 집행정지액 중 2003년도 승소가능 예상액 52억 8000만 원의 산출사유와 동 승소가능 예상액 52억 8000만 원이 현대와 관련된 금액인지 물으셨습니다.

□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승소가능액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평균 승소율만을 고려하는 것보다는 사건의 성격, 재판 진행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03년도 승소에 따른 수납예상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집행정지사건 중 고등법원

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대자동차(주) 외 4개 사(52억 8000만 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 '03년도 승소가능 예상액으로 산출한 52억 8000만 원은 현대와 관련된 회사인 현대자동차(주), 현대중공업(주), 현대산업개발(주), 현대전자산업(주), (주)조흥은행(구 현대종합금융을 합병한 금융기관)등 5개 사입니다.

과징금 집행정지 계류사건은 총 45건 850억 원('02. 9월 말 현재)으로 이 사건들이 언제쯤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지 물으셨습니다.

- 총 집행정지 계류사건 중 '03년도 확정판결이 예상되는 현대자동차(주)등 5개사(53억 원)를 제외한
- 인천정유(주) 등 41개 사건(797억 원)은 '04년도 이후에 확정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산금 세입예상액을 산정함에 있어 과징금 세입예상액 산정방식과 다르게 통계수치의 왜곡을 가져올 수 있는 군납유류부과분 1212억 원을 제외하지 않아 가산금 수납률이 크게 낮아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적절한 산출방식인지를 물으셨습니다

- '03년도 과징금 및 가산금 세입예상액을 추계함에 있어 최근 3년간의 수납된 평균치를 이용하였습니다.
- '03년도 과징금 세입예상액을 추계함에 있어서는 '00년도에 부과된 군납유류 담합에 대한 과징금(1212억 원)은 특이사항으로 판단하여 평균 부과액 산출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반면, 가산금은 과징금 체납규모, 체납기간 등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세입예상액을 추계함에 있어서는 실제 수납액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 군납유류 과징금 수납액이 포함된 최근 3년간의 가산금 평균수납률(3.12%)을 적용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공정위가 소비자 안전에 관한 연구용역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는바, 동 연구용역은 재경

부에서 담당해야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전액 감액이 필요하다고 하시면서 위원장의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제품에 대한 안전·위해정보는 상품 선택에 있어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기 때문에 이들 정보가 원활하게 표시·유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도모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위의 연구개발비가 매년 불용과 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바, 적정한 사업성과를 위해 연구용역부문을 일률적으로 삭감할 필요성을 제기하시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연구개발비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시차로 인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 중 일부가 전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 그 이유는 예산확정 후 다음 연도에 여러 용역 사업을 위원회 전체 차원에서 종합적으로 심의하여 우선순위를 두어 집행하였기 때문이며 관련 용역사업의 중요성이 낮아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 2000년 전용 : 1억 100만 원
2001년 전용 : 1억 300만 원

- 내년도 소비자보호국 연구개발비 예산은 소비자정보 제공, 표준약관 보급,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정책 개발 등에 관한 것입니다.
 - 이러한 예산은 기본적인 소비자주권의 확보, 소비자문제의 구조적 해결 또는 새로운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필수적인 사업을 계상한 것으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것입니다.
 - * 2002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2002. 10월 현재) 총 4억 400만 원 중 3억 8900만 원 집행(96%)

대대적인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도, 고시 제14조에 의거, 현대상선과 관련한 공시내용을 확인해 그 결과를 본 위원에게 제출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답변을 물으셨습니다.

-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사회결정공시에 관한 규정 제14조(자료의 제출)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료는 '기업이 공시한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등'만을 의미하는데,
 - 현대상선과 산업은행 간의 대출 건은 계열회사간의 내부거래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상 공

시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공시내용이 문제가 있거나 대기업에서 자료제출에 응하지 않으면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해 자료제출을 강제할 수 있으며, 대기업부당내부거래 조사와 관련하여 금융정보요구권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느냐고 물으셨습니다.

- 공정위의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은
 - 계열회사 간의 부당내부거래의 상당한 혐의가 있어야 하고
 - 다른 방법으로는 자금 등의 지원여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조사대상기업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의 장에게 요구하는 것으로서 사용목적, 발동대상 및 범위가 엄격히 제한되어 있으며
 - 구체적인 금융거래를 특정하고, 요구하는 금융거래정보의 구체적인 내용을 명시하여 요구합니다.
- 따라서 기업을 대상으로 공시내용에 문제가 있거나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발동할 수는 없습니다.

공정위는 무작위식 대규모 부당내부거래 조사를 지양하고, 앞으로는 금융거래정보요구권을 사용하여 역외펀드를 이용한 부당내부거래 조사 등과 같은 테마형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입장과 또 이를 위해 기술적 보완을 위한 금융감독원과 업무 협조의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특정한 거래유형을 통한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포착되면 테마형 조사도 효과적일 것이므로 향후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역외펀드와 같은 새로운 첨단 금융기법을 이용한 부당내부거래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관련기관의 협조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 금융감독원 등과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대적인 현장주의 조사를 줄이기 위해 ‘조사여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당내부거래 조사 관련 예산’을 반액 삭감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98년 이후 매년 부당내부거래를 조사·시정해 왔음에도 여전히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 최근에는 대규모 기업집단 뿐만 아니라 공기업, 벤처 기업 등의 부당내부거래행위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이에 대하여도 조사·시정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2002. 7월 11개 벤처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적발하여 5억 4300만 원의 과징금 부과 등 시정조치함.

- 부당내부거래는 지원객체의 경쟁사업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히는 등 그 폐해가 크지만 기업 내부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는 적발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 또한 그동안 기업들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집단별로 우선 서면조사를 실시한 후 부당내부거래 혐의가 있는 5~6개 업체만을 현장조사 대상으로 선정해 왔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부당내부거래가 근절될 때까지는 예년과 같은 수준의 조사 관련예산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공정거래위원장 1인의 독단적인 조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공정위의 모든 조사계획들도 위원회 안건에 정식으로 회부하여 처리되도록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현행 공정거래법에서 사건의 인지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고 그 세부적인 절차 등에 관하여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규칙으로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공정위는 사건처리의 객관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운영및사건절차등에관한규칙(이하 “사건처리절차규칙”이라 함)과 위임전결규정 등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바,
 - 이 사건처리절차규칙에서는 심사(조사)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요건과 심사절차 개시 이후 조사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절차와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의·의결절차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모든 사건의 조사 및 처리는 이에 따라 집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1개 손해보험사 자동차 보험료 인상 담합사건에서 공정위가 패소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

는지, 그리고 향후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서울고법의 판결에 따르면, 보험회사들의 행위는 보험료를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요율로 인상하여 외관의 일치가 성립하고 실질적 경쟁제한성이 있어 부당공동행위로 추정되지만,
 - 이는 금감원의 보험업법에 의한 행정지도에 따른 것으로 합의의 추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 그러나 공정위는 금번 11개 손해보험회사 자동차보험료 공동인상담합사건과 관련하여
 - 손해보험회사들이 보험요율을 일정비율로 인상하라는 금감원의 행정지도 이후에 보험회사 업무부장들이 3회에 걸친 회의를 통해 금감원의 행정지도에 따르고, 서로 덤핑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등 담합의 정황증거가 충분하므로, 대법원 상고 등 적극적으로 대처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행정소송 예산이 매년 증가추세에 있고 그 집행도 매년 당초예산보다 초과되어 집행되고 있는데, 행정소송의 증가추세를 볼 때 내년도도 소송비용의 부족이 예상되는바, 내년 소송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된 것인지 그 편성근거와 예산 부족 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위원회에서 최근의 소송 증가추세에 맞추어 내년도 소송 예산을 올해 대비 8000만 원(23.6%) 증가된 4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 예산편성의 근거로는 전년도 집행실적 등을 감안하여 편성하였으나,
 - 최근 소송제기건수 및 계류건수의 증가와 승소율의 증대로 인한 변호사 선임료, 성공보수금 등의 증액 지출이 예상됩니다.
 - * 제기건수 : (2000) 40건 → (2001) 66건 → (2002.9) 42건
 - * 계류건수 : (2000) 102건 → (2001) 130건 → (2002.9) 138건
- 따라서 예산 집행과정에서 최대한 기 편성된 예산에 맞추어 집행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소송수행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타 과목 예산을 절감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최근 공정위 처분에 대한 소송 제기과 패소판결이 증가함에 따라 공정위의 위상과 신뢰성

이 큰 타격을 입고 있으며, 소송예산도 증가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를 방지하기 위해 행정처분을 내리기 전에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등 당사자들이 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최근 공정거래법의 엄정한 집행으로 인하여 과징금 규모가 커지고, 과징금을 부과받은 업체의 임직원들 간 책임전가문제 등으로 행정소송이 증가추세에 있으나,
 - 금년 들어 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 패소율은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 행정소송에 있어 위원회 패소율은 선고기준으로 2000년도 19.05%, 2001년도 19.75%였으나, 2002년도 8.31. 현재 17%로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사자들의 의견 진술기회를 더욱 확충하고, 사건처리과정에서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여 당사자들의 순응도를 더욱 높여 나가겠습니다.

- 담합 제보자 보상제도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 저조한 집행실적을 감안할 때 내년도 예산 역시 집행이 불투명하므로 동 예산을 삭감 조정하거나 보상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한바, 이에 대한 견해와,
- 내년도 예산(5000만 원)을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한 근거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담합 제보자 보상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그동안 홍보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왔으므로 앞으로는 실효성 있는 제도로의 정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향후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보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 보상금제도에 대한 홍보 강화 및 문제점 개선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는 동 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동 제도가 활성화 되면 내년도 예산 5000만 원은 충분히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2년 제1회 모의 공정위 경연대회가 당초의 목적대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는지 평가결과를 물으셨습니다.

- 모의 공정위 심판 경연대회는 향후 글로벌 경쟁시대 우리 경제의 주역이 될 대학(원)생들에게 공정거래법·제도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연구의욕을 고취하여 시장경제질서 구축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 2001년부터 추진한 모의 공정위 개최결과 많은 대학에서 경쟁법학회가 신설되거나 그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고,
 - 또한 경쟁법 연구전문과정의 신설이 추진되거나 활성화되는 등 공정거래법에 대한 연구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인해 2003년 대회에는 보다 많은 대학의 참여가 예상됩니다.
 - 아울러 모의공정위는 사회적 공감대가 크고 시사성 있는 소재를 발굴하여 가상의 공정거래사건을 다룸으로써 기업 및 일반국민들의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공감대 형성에도 기여하였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 아직 내년 대회의 일정 및 참가규모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예산을 편성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을 물으셨고,
 □ 아울러 내년 대회의 참가규모를 어떻게 예상하고 있으며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여 예산이 부족할 경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우선 경연대회의 성격상 내년에 참가할 대학수를 미리 확정하여 예산을 편성하기는 어려운 사안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년도 참가규모는 금년 경연대회 준비 미비로 불참하거나 마감 직후에 참여의사를 밝힌 상당수의 대학(3개)을 감안하고, 이번 대회 개최결과 각 대학 지도교수들의 평가와 반응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최소한 금년도 참가수준인 15개 대학 이상으로 예측하여 2003년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 만일 내년에 참가대학 수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할 경우에는 지역별 예선심사를 거치도록 하는 등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기업을 대상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추진 중인 방안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지적하신 바와 같이 기업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에 동참할 수 있도록 각종 교육·홍보사업을 적극 추진 중입니다.
 -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CP) 도입이 필요한 대기업과 공기업을 대상으로 자율준수프로그램의 도입 필요성, 도입방법에 대한 교육·설명회를 계속 추진 중입니다.
 - 업종별 사업자단체를 통하여 자율준수프로그램 안내자료집을 회원기업들에게 배포하였고,
 - 공정거래협회를 통하여 CP도입에 필요한 매뉴얼 작성 등 기술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 기업체 CEO들에게 CP 도입의 중요성을 설명하는 e-메일을 송부하였습니다.

<참고> 2002년 CP 도입 관련 교육실적

교육 행사명	일시	교육대상	참석기업수
공정거래의 날 기념행사	4. 1	일반 기업체	300여개
공정거래자율준수 프로그램 세미나	7. 8	대기업	74개
경제단체 간담회	8. 14	사업자단체	12개
공공사업자 공정거래교육	10. 4	공기업	48개
CP도입(예정)업체 실무책임자 교육	10. 7	CP도입(예정)업체	70개
공정거래전문 연수과정	10. 14~16	일반 기업체	59개
건설경제협의회 초청 간담회	10. 18	건설회사	28개

부당지원행위 조사 관련 예산이 감소하고 집행실적 또한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 금년도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소한 것은 금년부터 산업별 시장개선대책 관련 예산을 부당지원행위 조사 예산과 별도로 계상하였기 때문이며, 이를 감안하면 크게 감액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부당내부거래 조사 예산
 - 2001년 : 2억 9000만 원
 - 2002년 : 2억 1600만 원
 - * 산업별시장개선대책 관련 예산 : 5500만 원
- 금년도에는 상반기에 벤처기업에 대한 부당지

원행위 조사를 실시하였고, 하반기에 대규모 내부거래의 공시 이행 점검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 예산집행 실적이 당초 계획보다 저조한 것은 금년도의 경우 업무의 성격상 서면조사 비중이 컸던 데 기인한 것입니다.

내년도 부당내부거래의 구체적인 조사계획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아직 내년도 업무계획을 수립하지 않아 구체적인 조사계획을 말씀드릴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공정위는 6대 그룹의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혐의를 잡고 현장조사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결과 부당내부거래사실이 적발되었을 경우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금번 조사는 그동안 여러 차례 답변드린 바와 같이 부당내부거래 조사가 아니며,

○ 금년도 업무계획에 의한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이행실태 점검입니다.

○ 또한 현장조사도 공시 이행 점검을 위한 사실확인 차원에서 불가피한 경우 일부기업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며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혐의를 조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 공시 이행 점검 결과 대규모내부거래에대한이 사회의결및공시규정 위반행위 총 245건(미공시 119건, 지연공시 126건)에 대하여 총 56억 6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03년도 과징금 세입예산 산출 시 군납유류 과징금과 관련하여 산출근거에 대한 일관성이 결여되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 '03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액(1263억 원)은 '03년도 신규부과액과 미납이월액 중 당해년도 수납가능액을 합계하여 산출한 것입니다.

□ '03년도 신규부과예산액은 과거 3년간의 평균 부과액을 근거로 산출하였는 바,

○ 군납유류과징금은 부과액이 과다(1212억 원)하고 '00년도만의 특이사항으로, 평균부과액 산출근거로 사용하기에는 부적절하여 제외하였습니다.

□ 그러나 미납이월액중 '03년도 수납예산액을 산

정함에 있어서는 과거 3년간 실제 수납된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군납유류 과징금 수납액이 포함된 '01년도를 포함하여 '99~'01년도 3개년 평균 과징금 수납율을 산출근거로 사용한 것입니다.

집행정지액 중 '03년도 승소가능예상액 산출시 최근 3년간 과징금관련 소송의 승소율이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승소예상액을 지나치게 과소 계상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 소송 진행 중인 사건의 승소가능액을 예상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평균승소율만을 고려하는 것 보다는 사건의 성격, 재판 진행상황 등을 개별적으로 점검하여 추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 생각합니다.

□ 이에 따라 '03년도 승소에 따른 수납예산액을 산출함에 있어서는, 집행정지 사건 중 고등법원에서 승소하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승소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대자동차(주)외 4개 사(52억 8000만 원)를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과징금 세입예산을 일관성 없게 편성하고 승소예상액을 비관적으로 전망한 것은 저조한 과징금 수납문제를 비켜가기 위한 고육책이 아닌지 우려를 표하면서, 과징금 관련 정책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나 대책 수립의 의향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 '03년도 과징금 세입예산은 당해연도 부과예산액 및 전년도 미납이월액에 대한 최근 3년간의 평균수납률과 집행정지 중인 사건을 개별 분석하여 산출한 승소가능 예상액 등을 감안하여 책정된 것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과징금 제도는 법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 등과 함께 공정거래법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 과징금 관련정책에 대한 연구용역 등을 실시하여 종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사업, 전자상거래 및 특수판매분야에 대한 소비자피해 분쟁조정 및 방지활동 지원예산 등 신규사업의 의의와 필요성 및 구체적인 추진현황과 의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1.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 예산

□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지원사업의 의의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예산을 지원함으로써

○ 가맹사업거래 분쟁을 당사자 간에 사전에 신속하게 자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하고 가맹점의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분쟁 해결은 원래 공정위의 업무로서 거래당사자 일방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이라는 공공의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사무이므로

○ 이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분쟁조정협의회의 운영경비를 예산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당초 관련 소요예산을 2억 2300만 원으로 추정하였으나,

○ 이중 인건비 및 경비 1억 1200만 원은 지원 예산으로 편성하고 1억 1100만 원(인건비 및 경비의 일부, 사무실 임차료)은 사업자단체에게 부담토록 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및 특수판매분야 소비자 보호 예산

□ 전자상거래 및 특수거래분야의 소비자 보호 신규 예산은, 분쟁조정(1억 5000만 원), 공제조합 감독경비(5000만 원), 사업자단체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위탁(3000만 원), 소비자피해 상담요원 교육·양성(3000만 원) 등 총 2억 6000만 원입니다.

○ 우선 분쟁조정기구에 대한 지원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조치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조정기구 등 관련 기관에 분쟁조정을 의뢰하기 위한 것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과정의 일부인 분쟁조정을 수행하는 것에 대한 지원으로 예산 배정이 불가피하며 소비자피해 구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 공제조합 감독 관련 경비는 소비자피해 보상보험을 취급하는 공제조합의 재정 운용 건전성을 감독하기 위해 공인회계사, 보험전문가 등으로 하여금 관련 업무를 수행케 하고 그 비용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 사업자단체에 대한 신고수리 업무 위탁은 사업자 관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로 하여금 신고 수리 등에 필요한 정보처리업무를 수행토록 할 예정으로 그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상담요원 교육은 연간 수만 건 이상에 이르는 소비자 피해 상담 등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상담 전문요원을 양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 위에서 설명한 2개 분야의 신규 예산은 2002년도에 새로이 개정된 법률의 집행을 위해 불가피한 예산이며,

○ 이들 예산의 효율적 집행으로 가맹사업자의 보호 및 전자상거래·특수판매분야의 소비자 보호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소비자보호국의 내년도 연구개발비 예산의 내역과 그 필요성을 물으시고, 동 예산이 전용 또는 불용되는 관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강력한 집행의지를 밝혀 달라고 하셨습니다.

□ 연구개발비 예산편성과 집행 간의 시차로 인하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연구개발비 중 일부가 전용된 것은 사실입니다.

* 2000년 전용 : 1억 100만 원

2001년 전용 : 1억 300만 원

□ 내년도 소비자보호국 연구개발비 예산은 소비자정보 제공, 표준약관 보급, 전자상거래 관련 소비자시책 개발 등에 관한 것입니다.

○ 이러한 예산은 기본적인 소비자주권의 확보, 소비자문제의 구조적 해결 또는 새로운 법령의 원활한 집행에 필수적인 사업을 계상한 것이므로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집행될 것입니다.

* 2002년 연구개발비 집행실적(2002. 10월 현재)

총 4억 400만 원 중 3억 8900만 원 집행 (96%)

담합 제보자 보상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담합 적발 및 예방적 기능을 고려할 때, 보상금 지급기준 완화 및 홍보 강화 등 위원회 차원의 적극적인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 담합 제보자 보상제도는 제도 시행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보상금 지급실적이 다소 미흡한 것은 사실이나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 보상금 지급요건을 완화하는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문제가 있는 부분을 점차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田濬源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표시·광고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서는 소비자 오인성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시면서, 공정위가 지금까지 소비자 오인성 조사를 적극적으로 행하지 아니한 이유와 앞으로 표시·광고 심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대책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 표시·광고에 대한 소비자 오인성 조사는 모든 표시·광고사건에 대해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표시·광고 표현이 소비자 오인을 초래하는지 여부를 심사관이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일반인의 인식을 기초로 좀 더 과학적·객관적으로 검증해 보기 위해 하는 것입니다.
- 금년에는 지난 8월에 LG텔레콤(주)의 광고행위에 대해서 소비자 오인성 조사를 한 바 있으며(4.4백만 원)
 - ※ 설악산 대청봉이라는 특수지역에서 019 통화가 되었다는 독자투고를 이용해 “어 011은 안 되는데 019가 되네”라고 광고한 것이 일반적으로 019가 011보다 통화품질이 우수한 것으로 오인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함
- 금년 11월~12월 중에는
 - 담배의 표시·광고행위와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mild”와 “light” 등의 명칭을 사용하는 담배제품의 경우 니코틴과 타르 등 유해성분 함량이 일반 제품보다 적게 들어 있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가 오인하는지,
 -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상가 등의 부동산 분양광고를 하면서 허가여부를 적시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들이 동 분양광고를 보고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오인하는지 등에 대해 소비자 오인성 조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 최근 들어 광고기법이 고도화되고 경쟁사업자 간의 비교광고가 활성화되면서 부당한 비교광고와 비방광고, 기만광고가 증대하고 있는 추세에 있는바,
 -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소비자 오인성 여부가 모호하여 객관적인 검증이 필요한 사건의 경우 적극적으로 소비자 오인성 조사를 하여 표시·광고심사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질의서)

(국가보훈처)

○金富謙 委員

보상모델 정립을 위한 예산의 중복 설정

- 본 위원은 합리적인 보상체계 정립을 위해 노력하는 보훈처의 의견에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 현재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해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연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의 62.3%에 불과하고,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급1항 상이군경의 경우도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포함한 금액이 도시가구 가계비 소비지출액의 64.8%에 불과한 실정임(검토보고서 pp.30~31)
 - 이를 현실화 하기 위해 보훈처는 기본연금의 경우 13.3%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7% 인상만 반영되었고, 부가연금은 17.6%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8.1%만 반영되었습니다.
- 보훈처는 현 보상금 수준 및 중장기 계획의 재검토를 위해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 2002. 9. 26일 KDI에 의뢰하여 합리적인 보상체계 개편방안의 주제로 6000만 원의 용역비 계약체결 (내년 2. 25일 용역완료)
- 그런데 예산이 중복 책정되었습니다
 - 보상모델 정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비로 9998만 원이 신규 반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p.36)
 - 이 예산 중에서도 단체장 간담회 참가여비가 예산의 절반 이상인 5600만 원에 이릅니다.
- 보상모델은 KDI에서 나온 결과를 검토하면 될 것인데 멀리 여행을 가서 단체장끼리 간담회를 하여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 이 예산은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보훈처장의 견해는?

○金允式 委員

보훈처의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표지석 설치사업과 관련하여 2002회계연도에는 6억 원의 예산이 책정되었으나 2003년도 예산안에서는 50%가 감소된 3억 원만이 책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해외독립운동 사적지가 중국, 러시아, 미국 등지에 총 254개소에 이르고 있는 데 비해 국정감사 당시 불과 4개소만 표지석이 설치된 실정에서 관련 예산이 이처럼 50%씩 삭감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금년도의 경우 보훈처는 12월 말까지 애초 목표 15개 중 1개를 설치하여 당초 예산 6억 원 중 42%에 불과한 2억 5000만 원을 집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나머지 3억 5000만 원에 대해서는 국내현충시설에 대한 안내판 설치 등으로

전용될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 사업이 해당국과의 외교적 관계, 현지 사정 등을 비롯한 제약요건이 있다는 점은 충분히 감안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저조한 예산 집행실적과 그에 따른 전용, 그리고 예산안 삭감은 이후 보훈처에서 동 사업을 소홀히 취급하게 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바, 2003회계연도에 책정된 예산액의 구체적 집행계획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해외독립운동 사적지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호국정신과 보훈의식을 선양할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임과 동시에 외국인들에게는 한국을 알리고 한국인의 기상과 정신을 전파할 수 있는 소중한 창구로서 시설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기록한 표지석의 설치는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동 사업의 금년예산과 관련, 벌써부터 이런 소중한 예산의 58%를 불용액으로 기정사실화하고 그에 따른 전용계획을 세우는 것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보는데 불용 및 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처장의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에서는 2003년도 예산안에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금을 신설하여 1959년 이후의 북파공작원 중 사망하였거나 부상한 752명에게 기본연금으로 매달 64만 2000원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를 위해 총 57억 9340만 원을 계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진 대로 지난 59년부터 72년 7월 남북공동성명 때까지 대북첩보활동 등을 위해 파견한 북파공작원이 2150명인 점을 감안한다면, 책정된 보상금의 규모가 미약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지난 3월 15일과 9월 29일의 시위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설악동지회 등 8~90년대에 북파되었음을 주장하는 이들의 숫자를 고려한다면 동 예산만으로 이들 북파공작원들에 대해 충분히 보상할 수 있을지 의심스럽습니다.

금번 보훈처의 2003회계연도 북파공작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은 무엇이며, 향후 예상되는 대상자 확대요구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朴柱宣 委員

보상금 지급사업

○개 요

국가유공자의 국가에 대한 공헌과 희생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상금 지급사업은 연금 지급 대상자에게 균일하게 지급하는 기본연금과 공헌도 및 희생도 등 개별여건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부가연금 및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서, 2003년도 동 사업예산은 1조 4252억 9500만 원으로서 이는 전년도보다 1402억 4000만 원(10.9%)이 증액된 것입니다.

2003년도 보상금 지급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A)	2003예산(안)(B)	증(Δ)감	
				(B-A)	%
보상금 지급사업	1,138,330	1,285,055	1,425,295	140,240	10.9

현재의 보상금은 기본연금 11종의 부가연금, 5종의 수당, 3종의 일시금 등 복잡한 보상체계와 대상자 간 차등화 부적절 등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으며, 또한 최저생계비가 도시가구 가계비(소비지출부문) 등 사회경제지표와 비교할 때 아직도 크게 낮은 수준인 것으로 보입니다.

2003년도 보상금 예산은 정부예산 증가율(1.9%)에 비해 높게 책정된 것은 사실이나 여전히 보상금 인상에 대한 기준지표가 없이 과거 인상률과 정치적 고려에 의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회경제지표 및 수혜자의 기대수준 등을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등 보상금 지급체계의 확립을 통해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강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 연금대상자에게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금전적 급부인 기본연금은 '03년도에 9599억 9300만 원이 계상되었으며, 공헌과 희생의 정도와 고령, 무의탁 등 수급권자의 개별적 여건을 고려하여 대상별·등급별로 차등 지급하는 부가연금은 2507억 72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에 대한 기본연금은 7.0% 인상되어 일반 유족이나 미망인의 경우 월 60만 원에서 월 64만 2000원이 인상 지급되고, 부가연금은 8.1% 인상되어 월 1만 1000원부터 209만 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건국훈장 1~3등급 애국지사의 경우 월 273만 2000원, 상이 1급1항의 경우는 138만 7000원, 상이 6급2항의 경우는 7만 원씩 지급되어 연금 수급권자들의 생활안정

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기본연금(64만 2000 원)이 국민 기초생활보장법상의 최저생계비('03년도 103만 원으로 추정)의 62.3% 수준에 불과하고,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급1항 상이군경의 경우도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포함한 금액(138만 7000원이 도시가구 가계비 소비지출액('03년도 추정액 : 214만 원)의 64.8%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보훈처에서는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사회경제지표와 연계하여 보훈연금인상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기본연금을 2007년까지 최저생계비 중 현금 최고지급액¹⁾ 수준까지 인상 지급하기 위하여 '03년도에는 13.3% 인상된 68만 원을 요구했으나 7%(64만 2000원) 만이 인상 반영되었고, 부가연금은 1급1항 상이자의 기본연금을 포함하여 '07년도까지 도시가구 가계비 소비지출의 80%까지 보전하는 것을 목표로 17.8% 인상을 요구했으나 8.1%만이 반영됨으로써 사회경제지표와 연계된 보훈연금 인상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기본연금 인상계획

(단위 : 천 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최저생계비 (현금 최고지급액)	990 (871)	1,030 (910)	1,070 (950)	1,120 (990)	1,170 (1,030)	1,220 (1,070)
기본 연금	액 수	600	680	770	860	960
	인상률(%)	12.1	13.3	13.2	11.7	11.6
최저생계비 대비율(%) (현금 최고지급액 기준)	68.9	74.7	81.0	87.3	93.6	100

※ 최저생계비(자료 : 보건복지부)

- '03년도 이후는 '99~2002년(4년간)의 평균 인상률(4.3%) 적용하여 추계

부가연금 인상계획

(단위 : 천 원)

연 도 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도시가구 가계비 (소비지출)	1,942	2,140	2,358	2,599	2,864	3,155
1급1항 상이자 연금	기본연금	600	680	770	860	960
	부가연금	689	810	940	1,110	1,290
	계	1,289	1,490	1,710	1,970	2,250
	부가연금인상률	-	17.6	16.1	18.1	16.2
가계비 대비율(%)	66.4	69.6	72.5	75.8	78.6	80.2

※ 도시가구가계비(자료 : 통계청)

1) 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지급 시 의료진료나 교육 시 해당기관에서 면제받는 의료비와 교육비를 공제한 액수임.

- '02년도 이후는 '98~2001년(4년간)의 평균 증가율(10.2%) 적용하여 추계

따라서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확립을 고려하여 현 보상금 지급수준 및 중장기 계획의 재검토 등 급여수준의 적정성 및 지급체계 등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의료 지원사업

○ 개 요

전·공상군경등에 대해 국가보상 차원에서 가료를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생활 유지와 복지 증진을 목적으로 보훈병원 국비·감면 진료 및 위탁가료병원 진료, 고엽제 검진, 보철구 지급 및 병원시설장비 보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료지원사업의 2003년도 예산규모는 전년 대비 391억 100만 원(30.3%)이 증액된 1679억 8300만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구체적 사업으로는 국가유공자의 상이처 등 전 질환에 대한 보훈병원 및 위탁가료병원 진료비 1410억 5700만 원, 참전·제대군인, 국가유공자 유가족 등에 대한 감면진료비 55억 2200만 원, 상이처 보완용 보철구 지급비 42억 4300만 원, 재활체육시설 및 요양시설 등 의료시설장비 확충비 119억 6000만 원, 고엽제 검진 및 역학조사비 52억 1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003년도 의료 지원사업은 사업비 증가규모가 30.3%로 높은 편이나 전체 대상자 평균 연령이 63세이며, 특히 6·25 참전 전상자의 경우 68세에 달하는 등 노인성·만성질환이 증가추세에 있어 국가유공자의 진료수요 증가에 대처하기 위해 적정 진료비를 확보하고 진료여건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측면에서, 국가유공자의 건강하고 영예로운 노후생활 도모와 직결되는 의료 지원사업비의 증액 편성은 타당한 것으로 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진료범위 확대문제

의료 지원사업은 현재 상이가 있는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 등은 전 질환에 대해 국비 진료를 실시하며, 등급을 받지 못한 경상이제대군인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는 대해서는 해당 상이처 또는 질환에 한해 국비 진료를 실시하고, 기타 질환의 경우에는 참전·제대군인의 자격으로 보훈병원 진료비의 50%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중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진료는 고엽제 검진 결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결정된 질병에 대해서만 진료를 하고 있는데, 후유의증환자들은 해당질병 이외의 전 질환에 대한 진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 국가보훈처 국정감사 시 이와 관련한 예산 확보에 대해 질의하였습니다

《고엽제 현황(2002.6.30 현재)》

구 분	계	후유증환자	후유의증환자	2세환자
인원(명)	55,067	5,065	49,968	34

- * 후유의증환자 4만 9968명 중 장애등급 외 후유의증 환자는 2만 4000여 명 정도로 추산됨.
- * 후유의증환자의 전 질환에 대한 무료진료 시 추가비용은 년 17억 원 정도임.

즉, 고엽제후유의증의 특성상 해당질환(합병증 포함)과 기타 질환 간의 구분이 모호하여, 진료비 부담주체를 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적절한 질환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금부터라도 후유증질환의 악화를 막을 수 있도록 의료지원의 범위를 확대하는 조치가 시급하다고 보고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적절한 예우를 위해, 해당 질환으로 한정된 국비 진료혜택을 모든 질환으로의 확대를 촉구하는 질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가보훈처에서 고엽제 검진결과 장애등급을 판정받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해서 고엽제질병으로 판정된 해당질병과 합병증에 한해서 진료해 주던 것을 전 질환에 대하여 진료 지원하기 위하여 소요경비(17억원)를 요구하였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음.

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의 반발과 민원이 빈발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번 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전 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민족정기 선양사업

○개 요

민족정기 선양사업은 독립운동관련 기념사업 및 기념행사와 독립운동관련 현충시설물 건립 지원 등을 통해 독립유공자를 비롯한 국가유공자의 공훈을 선양하고 국민의 애국심 함양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3년도에는 2002년도(207억 4500만

원) 대비 31억 3700만 원이 감소(△15.1%)한 176억 8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전년도보다 감액 편성된 주요 이유는 백범기념관 건립사업의 종료 등으로 54억 8300만 원이 감액된 반면, 금년 7월부터 국립묘지로 승격된 5·18묘지 및 3·15묘지 등의 국립묘지관리비 20억 800만 원 등 모두 23억 4600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2003년도 민족정기선양사업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A)	2003예산(안)(B)	증(△)감	
				(B-A)	%
민족정기 선양사업	10,984	20,745	17,608	△3,137	△15.1

독립유공자 발굴 예산지원 확대 관련

지난 국정감사 시 친일경력 흠결 논란이 새롭게 드러나는 독립유공자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 것인지를 묻는 과정에서 새로운 독립유공자의 발굴이나 독립유공자로 인정된 인물 중 친일경력을 지닌 인사를 발체하기 위한 작업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예산의 적정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날수록 독립유공 관련자료의 멸실과 훼손을 우려하여 단기간에 예산을 집중지원하여 독립유공자 발굴에 적정을 가할 것을 요구하였는바 2003년 공훈심사 및 사료수집 예산을 보면 2002년과 비교해 거의 변동이 없습니다.

(단위 : 천 원)

예산 과 목	2002년 예산	2003년 예산
공훈심사 및 사료수집	163,567	168,158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독립유공자로서 공적에 흠결이 있는 인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국가보훈처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정감사 지적하였듯이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이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을 감안하여 보훈처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현충시설물 건립 지원 국고 지원비율 형평성문제

독립유공자 등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 조형물, 사적지 등 현충시설 건립 지원을 위하여 2003년도 예산안에 9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기존 현충시설물이 낡고 훼손되는 경우 현충시설로서의 가치를 상실함은 물론 혐오감을 주는 등 국민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 2003년도에는 현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 6억 1700만 원 중 4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특히 올해 대규모 수해로 많은 수의 현충시설이 훼손됐을 가능성이 있는데 현재 보존처의 현충시설물 실태조사현황은 어떻습니까?

올해 수해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현충시설물의 현황은 어떻습니까?

2003년 반영된 4억 원으로 개보수가 가능한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원대상 현충시설 선정에 있어서는 관련 국가유공자의 공훈도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과의 중복여부 및 관리상태, 건립주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나 그동안의 지원행태를 보면 지원시기, 규모, 보조금 지원율 등에 있어서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관련단체 및 유족의 요구에 의하여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었습니다.

독립운동관련시설물 건립에 따른 국고 보조의 지원기준을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처의 독립운동관련시설물건립지원지침에 의하면 사업의 성격, 규모, 파급효과 등을 종합 분석하여 단위사업 소요예산의 3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3년도 사업의 경우 40개 지원시설 중 국고보조율이 30%를 초과하여 예산이 편성된 사업이 절반에 가까운 19개에 이르고 있으며, 대한인국민회 북미총회회관의 경우는 건립비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체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자의적으로 국고보조율을 높임으

로써 예산 낭비적 요인이 있으므로 국고 부담비율 조정문제 등 개선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지원

○개요

참전유공자에 대한 명예수당 지급, 호국용사묘지 조성 및 관리, 군인보험료 환급 등을 위한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지원사업의 2003년도 예산안은 2002년도 대비 185.8%인 875억 7000만 원이 증액된 1347억 1100만 원입니다.

2003년도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 지원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1결산	2002예산 (A)	2003예산(안) (B)	증(Δ)감	
				(B-A)	%
참전유공자 및 제대군인지원	36,376	47,141	134,711	87,570	185.8

이와 같이 동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가한 것은 법령개정으로 인하여 70세 이상 참전유공자 전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금년 10월부터 지급하게 됨에 따라 2003년도에 이에 소요되는 경비 816억 7700만 원의 추가 반영 외에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 및 관리비 49억 500만 원과 군인보험제도 폐지에 따른 보험환급금 15억 6700만 원이 증액된 반면, 6·25 50주년 기념사업비 등에서 사업감소로 5억 7900만 원이 감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

참전유공자등에 대한 명예 선양과 국민의 호국정신 함양을 위한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은 경북 영천, 전북 임실지역에 이어 안장대상자의 46% (37만 명)가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지역 안장대상자의 근접지원을 위해 경기도 이천지역에 8만 5000평 규모의 부지에 총 사업비 280억 원을 투입, 금년에 착공하여 2005년도 준공을 목표로 2002년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계획

(단위 : 백만 원)

조성규모		사업기간	총 사업비	연차별 투자계획			
면적	시설(기)			'02	'03	'04	'05
8만 5천평	납골묘 20,000 납골당 30,000	2002~2005 (4개년)	28,000	2,400	5,800	9,900	9,900
			국고 : 24,000	1,400	4,800	8,900	8,900
			향군부담 : 4,000	1,000	1,000	1,000	1,000

도에는 14억 원을 지원하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 기본설계와 인허가 등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3년도에는 부지 매입잔금(24억 원), 토목·건축 기초공사 등(24억 원)을 위하여 48억 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수도권 호국용사묘지의 시설내용을 보면 납골묘 2만 기, 납골당 3만 기의 규모로 추진하고 있으나, 규모가 비슷한 기 조성된 영천이나 임실묘지의 납골당 안치실적을 볼 때, 아래 표와 같이 고작 7.5%와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지난 2001년 4월 보훈특위에서 참전용사나 제대군인들이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뜻이 국토의 사랑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현대적인 납골당의 건립을 향균에 주문하고 화장을 중심으로 한 장제문화에 개선에도 향균이 적극 나서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납골당 안치율이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장묘문화 영향 탓도 크지만 협소한 선반식 납골 보관 등 납골당 시설과 관련해서도 원인이 있다는 의견이 있는데 새로 건립하는 수도권 묘지의 경우 이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보훈처의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무엇입니까?

호국용사묘지 현황

(단위 : 백만 원)

지역별	규 모 (평)	조성비용		수용능력(기)		안장기수(기)		납골당 안치 비율(%)
		국 고	향 군 자부담	납골묘	납골당	납골묘 (미)	납골당	
경북영천	115,000	22,000		52,000		1,366		7.5
		17,800	4,200	22,000	30,000	1,264	102	
전북임실	106,000	17,800		50,000		188		16.0
		13,900	3,900	20,000	30,000	158	30	

○朴柱千 委員

보훈처 예산은 보상금 및 의료 지원, 교육보호, 선양사업 등 다다익선일 수밖에 없는 사업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2003년도 보훈처 예산이 사업비 기준으로 전년 대비 17.2% 증액 편성되어 정부 평균 증가율인 1.9%를 크게 상회하고 있는 점은 전향적인 것으로 평가합니다.

다만, 각종 보상금과 수당이 최저생계비 수준에 근접하기에는 아직도 크게 미흡하고, 참전명

예수당 등 당초 계획보다도 축소 지급하도록 편성된 일부 예산사업의 현실화가 장기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03년도 예산안과 관련해서 몇가지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세입 중 보상금 과오불 회수금 관련

2003년도 국가보훈처 세입예산 중 보상금 과오불 예산은 전년 대비 1.5%인 700만 원이 증액된 4억 6700만 원입니다.

매년 제기되는 문제고 지난번 국정감사에서도 과오불을 줄이고 회수율을 제고하라는 지적이 있었습디만 가시적인 성과는 보여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훈처에서는 보훈행정 정보화 및 정부통합전산망 연계와 같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디만 부처 간 협의가 충분치 못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압니다.

따라서 언제쯤이면 국가유공자의 신상 변동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과오불이 발생할 소지를 없앨 수 있는지, 또 과오불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회수를 위한 신상자료의 추적관리는 어느 시점에나 완비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전망이 가능해야 할 것입니다.

보훈처에서는 정부통합 DB사업의 진행경과와 이에 상응한 보훈전산망 확충, 운용과 같은 정보화 추진일정을 밝혀 주시고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보다 주도적이고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구체적인 복안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 보상금 현실화 방안 관련

2003년도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 대한 보상금 중 기본연금은 현행 60만 원보다 7% 인상된 64만 2000원이 계상되었고 부가연금의 경우 8.1%가 인상되었습니다.

하지만 기본연금은 내년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최저생계비 추정액인 103만 원의 62.3%에 불과하고, 부가연금까지 더한 최고액의 경우에도 도시가구 가계비 소비지출액의 64.8%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보훈처가 2007년까지 기본연금을 도시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맞추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지만 당장 내년도 예산에서 당초 요구안인 68만 원보다 못 미치는 64만 2000만 원이 반영됨으로써

계획에 차질을 빚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장기적인 보훈체계 정립에도 장애요인이 됨은 물론 자칫하면 보훈대상자들의 기대감만 부풀려 민원의 소지를 정부 스스로 제공하는 예기치 못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측면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과거에도 기본연금 현실화는 물론이고 각종 수당 신설과 같은 예산사업이 재정여건의 검토가 부족한 상태에서 발표되고 추진됨으로써 집단민원을 불러일으킨 경우가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최고 정책 결정권자나 집권당의 정치적 고려에 의해 예외수준이 결정되는 등 예측 불가능성이 상존해 있는 것도 중요한 요인이었다고 봅니다.

결국 보훈처가 추진하고 있는 보훈연금 인상 5개년계획이 시작부터 벽에 부딪치고 있는데, 보훈처가 당초 예산당국과 긴밀한 협의를 거치지 않고 의욕만 앞세운 결과가 아닌가 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5개년계획 수립 시 예산당국과 어떤 식으로 협의를 거쳤는지 먼저 밝혀 주시고, 동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의심받게 된 상황인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차제에 한두해 늦어지더라도 재정여건이 정확히 반영된 현실적인 보상금 확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를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3. 위탁진료비 적기 정산을 위한 예산 반영 필요성

2003년도 세출예산안 중 위탁진료비 예산을 보면 2001년도 미지급분 189억 8600만 원과 당해연도 소요예산분 95억 500만 원 등 284억 91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현행 위탁진료비 정산체계는 당해년 정산부족분을 차차기년도 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식으로 연평균 88.7%에 달하는 위탁진료 증가율에 비추어 매년 미정산액이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진료 편의를 확대하고자 시행 중인 동 제도가 기형적인 제도 운영으로 인해 위축되거나 보훈복지의료공단의 경영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점은 공지의 사실입니다.

따라서 해당연도의 위탁진료비 소요분을 일반회계 또는 기금에 반영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4. 집행되지 않는 공적심사 집필 수수료 삭감해야

독립유공자 포상심사를 위한 공적조서 등 심사자료 작성을 외부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 공적심사 집필 수수료가 편성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최근 3년간 동 사업 예산을 보면 매년 2200만 원이 계상됐다가 실제로는 전액 전용되고 있어서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훈처에서는 실제로 소속공무원 2인이 공적심사자료를 작성하고 있다고 하는데 작은 금액이지만 관행적으로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있는 점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보훈처장께서는 매년 전용되고 있는 공적심사 집필 수수료 예산을 전액 삭감하거나 현실화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5. 참전명예수당 관련

지난 2001년 참전유공자지원에관한법률이 개정됨으로써 금년 10월부터 70세 이상 참전자에 대한 명예수당이 지급되게 되었습니다.

2003년도 예산안에는 생계곤란자 3만 9000여 명에 대해 1인당 5만 원씩 839억 원의 참전명예수당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방대한 인원의 지급대상자로 인해 개개인에게 지원되는 금액은 미미하지만 참전유공자에 대한 실질적인 예우의 첫걸음이라는 의미에서 바람직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1인당 지급액이 당초 계획했던 6만 5000원에 못 미치는 5만 원으로 결정됨으로써 당사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가 남게 된 점은 아쉽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과도 같은 취지입니다만 작년에 광주민주화유공자법 통과 시 참전명예수당이 비교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높았다는 점을 잘 아실 것입니다.

보훈처는 5만 원이었던 기존 무공영예수당과의 형평성과 예산상 문제로 인해 참전명예수당을 5만 원으로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면 당초 법 개정 시 이같은 형평성 문제나 재정상 어려움이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몰랐다는 것인지 하는 점에서 보훈처의 정책운용이 대단히 안일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어 보입니다.

쉽게 말해 주기도 욕 먹는 상황이 뻔히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매년 예산철마다 참전명예수당 인상요구가 빗발치게 되는 또 하나의 문제를 보훈처가 자초했다는 지적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향후 복잡다기한 보상금체계를 단순화한다는 보훈처의 계획이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공염불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갖게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性憲 委員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사업 또 과다계상 아닌가

□ 질의사항

지난 9월, 2001년도 국가보훈처 결산심사 때 본 위원은 사립대학에 재학 중인 국가유공자의 자녀에게 공납금 중 50%를 보조하는 사립대학 공납금 보조사업의 경우 2001년 예산액 616억 99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표>에서와 같이 공납금 지급대상자 및 예산추계가 정확하지 못하여 2001년도에는 128억 9000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동 사업 예산은 2000년 대비 38.9%인 172억 6500만 원이 증가된 것인데 증가액만큼 불용이 생긴 것은 동 사업에 대해 당초 예산 확정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반증해 주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2001년도 미집행 예산 중 29억 5700만 원을 다른 항목으로 전용 조치하였고, 나머지 99억 3300만 원은 불용처리 한 것으로 드러나 학자금 지급대상자의 체계적 관리와 예비대상자의 사전조사 등 과학적 관리기법을 개발하여 단일사업에서 20% 이상 규모(12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되어 국가예산 배정의 비효율성이 초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 사업은 또한 2000년도의 경우에도 당초 예산액 444억 3400만 원 중 411억 600만 원을 집행하고 7억 6700만 원은 타 재원으로 전용 또는 목간 조정하였으며, 나머지 25억 6100만 원을 불용처리한 바 있었습니다.

2000년 5월에 보훈처에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2001년도 주요사업비요구예산설명서>에 따르면 동 사업비의 산출을 위한 인원 산출 근거로 국내고엽제(신규)의 자녀 1742명, 학점 인정 교육훈련기관(신규) 56명, 출가녀(신규) 377명, 무공수훈자 확대 399명 등 기존 대상자 대비 2574명을 신규

대상자로 산정하여 2만 7720명을 대상자로 산정하고 예산현액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기획예산처와 협의과정을 통해 2만 6835명으로 책정됐으나 집행실적은 2만 2700명에 이르러 예산 현액의 단일사업에서 20% 이상 규모(128억 9000만 원)의 예산이 미집행된 것입니다.

2001년도 사립대학 공납금 지급현황 및 예산집행현황(98~01년)

(단위 : 명, 백만 원)

구 분	계 획		실 적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일반대	신입생	3,553	9,615	2,894	7,529
	재학생	13,900	33,888	11,901	27,897
	계	17,453	43,503	14,795	35,426
전문대	신입생	4,516	9,510	3,341	6,600
	재학생	4,866	8,686	3,871	6,783
	계	9,382	18,196	7,212	13,383
합 계	26,835	61,699	22,007	48,809	

(단위 : 명/백만 원)

구 분	계 획		실 적		과부족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98	11,743	24,011	14,668	28,636	△4,625
'99	14,929	30,184	17,353	33,800	△3,616
'00	21,159	44,434	19,621	41,106	3,328
'01	26,835	61,699	22,007	48,809	12,890

본 위원이 2002년도 예산현액을 확인한 바에 따르면 2만 5093명을 산정했습니다. 2001년도와 집행대비해 보면 3000명 정도의 차이가 나서 2002년 결산에도 마찬가지로 대규모 불용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3년도 예산 중 보훈관리세항의 민간경상보조비 중 사립대학교 공납금 보조비는 2만 4922명을 대상으로 616억 3522만 9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국가보훈처가 기획예산처에 제출한 당초 예산안 요구자료에 따르면 2003년도에도 2만 8461명을 대상으로 추정해서 2002년 예산 대비 7%가 증액된 713억 9600만 원을 요구했으나 2만 4922명을 대상으로 한정된 것입니다. 2002년 7월부터 광주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가 포함돼 인원이 늘어날 수 있지만 이것은 2002년도 예산 현액 대비 대상인원 2만 5093명보다도 171명이 오히려 줄어든 것입니다. 2003년도 예산 집행인 대상인원이 2만 4922

명에 불과합니다.

대상인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은 2년 연속 예산 불용과 그에 따른 이·전용에 따른 결과라고 본 위원은 판단합니다.

본 예산 산정에 있어서 중요한 근거는 대상인원 수에 대한 측정과 사업대학 국고보조 지급단가의 증가추세입니다. 이 두 가지 변수 모두 본 위원이 판단할 때에는 예측 가능한 것이라 판단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2003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도 똑같은 규모의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2001년도 결산과 같이 계획에도 없던 사업에 전용하거나 이용할 것인지 밝혀 주기 바랍니다.

이·전용이 발생한다고 하는 것은 예산법상 그 절차를 지켰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은 예산편성부터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예산편성이 과다해서 설사 불용액이 생기더라도 모범적으로 이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이·전용하지 말기를 본 위원은 권고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전산기기 임차료 문제

□ 질의사항

2003년도 보훈처 기관운영 기본사업비 중 전산기기 임차료가 3억 3720만 3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이중 주전산기기 임차료 관련을 제외한 개인용 PC와 프린터 임차료 등이 1억 5839만 8000원이 계상돼 있습니다.

2002년도에는 동일한 항목으로 2억 1217만 5000원이 계상된 바 있습니다. 반면, 2002년도 예산 대비해서 임차료가 줄어들게 된 것은 2002년에 기관운영비에서 정보화기기 보급명목으로 사양미달 PC 교체를 200대(2억 8200만 원), 기관운영 기본사업비로 개인용 PC 40대와 레이저프린터 45대(7295만 8000원)를 구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2003년도 예산에도 기관운영비의 자산취득비항목에서 200대의 노후 PC 교체 명목으로 2억 8594만 8000원, 기관운영 기본사업비 중 자산취득비로 노트북 5대 962만 5000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2002년과 2003년에 개인용 PC가 445대가 신규로 취득하게 된 것인데 2003년도 전산기기 임차료 항목에 2002년과 비교할 때 변동이 없이 그대로 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02년도 전산기기 임차료 항목에 비

해 2003년도 전산기기 임차료 항목이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도에는 개인용 PC 375대, 노트북 93대, 프린터 117대, 레이저프린터 99대, 도트프린터 94대(2002년도 예산안 각목요구서 95쪽)인데 2003년에는 개인용 PC 464대, 노트북 4대, 프린터 117대, 레이저프린터 99대, 도트프린터 94대(2003년도 예산안 각목요구서 96쪽)로 2002년에 비해 노트북 89대가 일반 PC로 바뀌었을 뿐 그 숫자에 변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2002년에만 240대의 신규 컴퓨터가 도입됐는데도 예산항목에 이렇게 변동이 없는 것은 본 위원 으로서는 의문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본 위원 판단에 국가보훈처와 지방지청에 개인용 PC가 모두 몇 대나 있는지 확인되고 있지 않지만 2002년도와 2003년도에 개인용 PC 취득이 445대나 이뤄진다면 2003년도 전산기기 임차료는 2003년도분 신규 구입 전까지 필요한 임차료 정도로 계상돼야 하나 각목요구서에 따르면 12개월 전부를 계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문제라고 판단합니다.

본 위원은 2002년도에 240대가 신규 도입됐는데도 2003년도 기관운영 기본사업비 중 전산기기 임차료의 세부항목에 변동이 없는 경우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이 주먹구구로 이뤄지고 있다는 반증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경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

보훈기금 증식에 88골프장이 앞장서야

□ 질의사항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부 지원 등 생활 안정과 복지에 필요한 보훈기금의 재원 조달 등 기금 증식을 위해 위탁운영하고 있는 88골프장의 2003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9.4%인 27억 4400만 원이 감액된 114억 원입니다.

골프장 사업은 기금 증식을 위한 주요사업으로서 그동안 회원권 분양과 운영으로 기금증식에 막대한 기여를 한 것도 사실입니다. 88년 개장이 후 01년까지 511억 원의 순이익을 내 보훈기금 증식에 기여를 했습니다.

2003년도 계획에 따르면 107억 5900만 원을 예상 순익으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114억 원의 경상경비를 들여 107억 5900만 원을 순이익으로 남기는 것이 경영에 있어서 타당한 것

인지 판단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간 보훈기금 증식을 위한 88골프장 기여는 막대한 것이었으나 최근 국내 골프인구의 증가속도로 볼 때나 골프장 이용료의 인상에 힘입어 이 정도 수익을 내는 것은 특별한 경영 개선도 없이 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본 위원은 88골프장이 지속적인 경영개선 노력을 통해 불요불급한 경상경비 지출을 줄임으로써 보훈기금 증식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특히 88골프장의 경우, 보훈기금의 증식이라는 중차대한 역할에 비쳐 본 위원은 골프장 이용료에 붙은 막대한 각종 세금을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감액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충시설물 건립 지원

가. 사업개요

○사업목적

- 독립운동관련 시설물 건립을 통하여 독립유공자의 애국애족 정신을 기리고 우리 민족의 공동체의식을 제고하여 민족정기를 선양하기 위하여 현충시설물 건립 및 유지보수

○사업내용

- 사업기간 : 계속사업
- 지원형태 : 지방자치단체 및 기념사업회에 국고 지원하여 사업 추진
- 사업추진 시설물 :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등 38개

나. '03년도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02예산	'03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현충시설물 건립지원	14,283	9,000	△5,283	△37.0

○'03년도 현충시설물 건립 지원사업비는 전년 대비 37.0% 감소한 90억 원입니다. 주요 감소원인은 '02년도까지 진행되었던 백범기념관 건립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단위 : 백만 원)

구 분	'02예산	'03예산안	비 고
• 백범기념관건립 • 현충시설물건립	6,000 8,283	- 9,000	• 완료사업 • 신익희기념관 건립 등 38건
계	14,283	9,000	

○ 한편 '03년도 동 사업비로 추진되는 현충시설물 건립 또는 보수 사업은 총 38건으로 전년도 25건보다 13건(52%) 증가한 것입니다.

○ 기존 현충시설물이 낡고 훼손되는 경우 현충시설로서의 가치를 상실함은 물론 오히려 혐오감을 주는 등 국민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바, 새로이 현충시설을 건립하는 것 못지않게 기존 시설물에 대한 보수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03년도에는 현충시설물 보수에 필요한 예산 6억 1700만 원 중 4억 원만 반영되었습니다.

→ 특히 올해 대규모 수해로 많은 수의 현충시설이 훼손됐을 가능성(정부는 현재 현충시설물 실태조사를 실시 중)이 있으므로 그 증액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 국가보훈처장 실태조사 내용과 대책을 보고하여 주시고 이에 수반되는 예산이 어떻게 반영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한편 현충시설물 건립과 관련하여 백범 김구의 만년 거처 및 서거지 경교장(慶橋莊) 보존·관리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 경교장은 임시정부 수반이자 해방 후 통일운동에 앞장섰던 백범 김구의 만년 거처이며 서거지이나, 그 동안 정책당국의 무관심과 민간소유 건물이라는 한계 때문에 경교장 복원 관리를 위한 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은 미흡하여 체계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경교장은 서울시 유형문화재 129호로 지정('01. 4. 4)¹⁾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병원 건물로 활용되고 있어 문화재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상황임).

- 한편 경교장 소유주인 강북삼성병원은 그동안 병원건물로 사용되던 경교장에 백범기념관을 세워 일반에 개방한다는 계획을 발표²⁾하는 등 경교장의 역사적 가치를 재평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민족지도자로서의 백범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적 차원의 복원과 보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입니다.

1) 이승만 전 대통령의 거주지였던 이화장은 서울시 기념물 제 6호(1982. 12. 28)로 지정

2) 강북삼성병원은 현재 진행 중인 본관 증축공사가 마무리되는 오는 2004년 여름께 경교장 2층에 20평 규모의 백범기념실을 세워 이 곳에 백범 선생과 관련된 각종 사진과 도서를 전시하여 일반인에게 개방할 예정임. 연합뉴스. 2002. 8. 14

→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 관련
 - 20대에 망명하여 40년을 구국운동을 하였고, 임시정부 내무부장관, 대한민국 국회의 초대, 2대, 3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해공 선생의 기념관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회에서 국가보훈처에 47억을 건립지원비로 요청했는데 보훈처가 정부에 반영한 예산은 4억입니다. 이로써는 사업을 추진하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울러 기념사업회에서도 다양한 성금을 모금하여 선생을 기리는 국민의 마음을 모아야 할 것입니다. 해공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에 대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의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李訓平 委員

광주 5. 18단체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5. 18 관련 단체 현황을 보면 총 6개 단체로서 5. 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 외 1개 사단법인 1259명과 5. 18광주 민중항쟁 유족회 등 4개 임의단체 393명 등 총 1652명이 활동 중에 있습니다.

5. 18 단체운영 보조금 4억 2200만 원, 대부지원 사업비 14억 원, 전시관 건립비 30억 원 등 총 48억 2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법적 근거 미비에 따른 전액 삭감되었다고 하는데 광복회 등 9개 단체 내년도 지원 예산의 경우 총 62억 1300만 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똑같은 국가유공단체인데 지원규정이 없다고 운영비 삭감의 경우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관련규정 미비에 따른 예산 삭감에 대한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현재 5. 18재단에서 관련단체에 지원하고 있는 수준의 운영비를 지원근거 마련할 때까지 5. 18재단에 사업비 보조를 통하여 동 재단에서 관련단체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 등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바랍니다.

수도권 보훈병원 신축문제에 대하여

수도권 의료수요 증가 및 서울 보훈병원의 진료 집중화 분산을 통한 국가유공자의 진료서비스 향상에 필요한 200병상 규모의 보훈병원 신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가유공자의 45%인 11만 947명이 수도권 및 강원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들의 의료 수요를 800병상을 갖추고 있는 서울보훈병원에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서울 보훈병원의 국비 진료실태를 보면 1999년 159만 1000명, 2000년 185만 6000명, 2001년 223만 2000명 등 평균 17%씩 증가하고 있으며 4개 지방 병원의 경우 1999년 115만 5000명, 2000년 111만 5000명, 2001년 142만 6000명 등으로 매년 10%씩 증가하고 있어 서울 보훈병원의 진료 적체현상이 향후 뚜렷이 나타나 몇 년 안에 포화상태에 직면하게 될 것이 예상되는 실정입니다.

늘어나는 의료 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하여 수도권 보훈병원의 조기 건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바랍니다.

현충시설 건립 지원에 대하여

독립유공자 등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 등을 지원하기 위한 2003년도에 90억 원이 반영되었습니다.

국가유공자의 공훈도와 기 설치되어 있는 시설물 및 관리상태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에 의거, 추진 시행되어야 하나 지원형태를 보면 지원시기, 규모, 보조금 지원율 등에 있어 객관적인 기준 없이 관련 단체 및 유족의 요구에 의한 주먹구구식으로 처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객관적인 처리기준을 설정하여 지원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현재의 지원 형태는 무엇이며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독립운동 관련 시설물 건립지원지침에 의하면 단위사업장 소요예산의 3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내년 예산의 경우 40개 지원시설 중 19개 사업이 30%를 초과하고 있으며 대한인국민회 북미 총회회관의 경우 건립비 전액을 국고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체 규정을 무시하고 초과 지원된 사업의 합당한 사유는 무엇이며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국고부담비율 조정문제 등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바랍니다.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사업에 대하여

참전용사 등에 대한 명예 선양과 국민의 호국 정신 함양을 위하여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지역에 기 조성되었고 안장대상자의 40%(37만 명)이 거주하고 있는 수도권 안장대책으로 경기도 이천 지역에 280억 원을 투입하여 납골묘 2만 기, 납골당 3만 기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당합니다.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에 총 납골묘 4만 2000기, 납골당 6만 기를 조성하였으나 안장 기수를 보면 납골묘 1422기, 납골당 132기로써 납골당 안치비율이 8.5% 정도인데 이처럼 납골당 안치가 적은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 바라며 우리 나라 장묘문화의 영향 받은 있지만 협소한 선반식 납골 보관 등 납골당 시설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 시 납골당 설치문제는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의 경우를 고려한 새로운 납골당 설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국가보훈처장의 소상한 답변 바랍니다.

요양병동 신축 등 신규사업에 대하여

국가 유공자의 노령화에 따른 장기 입원환자 증가와 재활치료의 중요성 등을 감안할 때 단기적으로 서울보훈병원 내 요양병동 200실 신축 및 재활 체육관 개축을 위한 총 255억 원 중 내년도 설계비용 등을 위한 24억 9000만 원 예산편성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서울 병원의 경우 연간 진료인원이 약 290만 명에 달하는 등 이용자가 폭주할 것으로 예측되어집니다.

국가유공자의 의료 수요 중 41%가 서울 및 경인지역에 편중되어 있다고 하는데 수도권지역 병원이 한 곳으로 강동구에 위치하여 경인지역 의료 수요 충족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국가보훈처장의 답변 바랍니다.

○崔在昇 委員

위탁병원 가료비 부족 예산 현실화 시급
 - 보훈공단, 위탁 가료병원 진료비 지급 위해 자금 차입, 이자 부담 요인
 - 보훈병원 장기 중증, 위탁지정병원, 단기 경증환자 진료 등 업무 이원화 필요성

국가 유공자들에게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위탁병원의 위탁병원 가료비 현실화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위탁병원은 금년 8월 말 현재 전국적으로 129개소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 위탁 가료비 부족

현상은 연례적으로 지속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위탁 가료비는 지난해 예산액 95억 100만 원보다 189억 9000만 원이 늘어난 284억 910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나 부족분 보전 예산이 지난해 69억 3000만 원에서 189억 8600만 원으로 늘어나 위탁가료병원 진료지 적기 지급에 차질이 초래되는 것은 물론 부족 가료비를 지급하기 위해 보훈복지공단은 자금 차입을 통한 이자부담이 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등 악순환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표 1 참조)

<표 1 - 연도별 위탁가료비 발생 및 정산내역>
(단위 : 백만 원)

구 분	'97	'98	'99	'00	'01	
발 생(A)	4,208	4,737	5,914	9,229	22,468	
계	계	2,468	4,729	4,478	5,251	7,186
	당해연도(B)	1,940	1,785	2,210	2,299	3,482
	과년도 정산액	528	2,944	2,268	2,952	3,704
당해연도미지급액(B-A)	△2,268	△2,952	△3,704	△6,930	△18,986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 현실화를 통해 위탁 가료비 부족현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가보훈처장의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보훈병원의 진료능력으로는 늘어나는 보훈환자들의 원만한 진료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표 2 참조)

<표 2 - 연도별 위탁 지정병원 진료실적>
(’02.10 현재)

구 분	'98	'99	'00	'01	'02.8
지정병원 수	66	69	80	104	129
진료 연인원(천 명)	524	739	1,018	1,202	760

늘어나는 보훈 환자들의 진료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정병원 수를 점차로 확대해 가고 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보훈병원은 장기·중증환자들을 중점적으로 진료하고 위탁 지정병원은 좀 더 확대 지정하면서 단기·경증환자 위주로 진료하는 이원화

체제로 가는 것이 보훈 환자들에게 좀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보상금 과오불 수입문제는 전혀 개선되지 않아
 - 보상금 과오불 발생 최소화 대책 적극 수립해야...
 - 최근 5년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평균 80% 이상 차지

금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상금 과오불 예산은 지난해 4억 600만 원보다 1.5% 증가한 4억 67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이 문제 역시 지난번 예산결산심사 시 지적이 되었던 내용이지만 전혀 개선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전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답습하고 있습니다.

지난 '99년도 세입예산 총액 대비 보상금 과오불이 73.8%를 기록한 이래 '02년의 경우 97.8%를 차지하는 등 그 비중이 평균 80%를 넘고 있는 상태입니다.(표 1 참조)

<표 1 -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보상금 과오불 비중 추이>

(단위 : 백만 원)

구 분	'99년	'00년	'01년	'02년	'03년(안)
세입예산총액	404	650	654	470	560
보상금과오불	300	549	553	460	467
B/A(%)	73.8	84.5	84.6	97.8	83.4

이러한 것은 정부 예산의 적정 편성과 효율적인 운용이라는 기능을 상실한 내용이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보훈처가 보상금 지급업무 처리에 보다 정확성을 기하고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보훈행정통합시스템과 더불어 정부 차원의 5대 정보통합(주민전산망, 부동산, 자동차, 기업, 세금)과 연계해서 국가유공자 등의 사망, 개가, 행방불명 등 신상 변동사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등의 적극적인 방안 강구를 하는 등 과오불 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와 향후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단체장 간담회 참가여비 명목으로 5600만 원 편성
 - 실제 의도한 목적에서 이탈되게 운영될 가능성 상존

- 단체장 중심의 여론 수렴은 한계, 다양한 계층까지 확대할 필요성 있어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에 대한 적정 지급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 전문가 및 보훈 단체장들의 의견 수렴을 목적으로 한 경비로 9998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표 1 참조)

<표 1 - 보상모델 정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수렴 예산안>
 (단위 : 백만 원)

구 분	설문조사 인쇄	설문발송 우편료	단체장 간담회 참가여비	간담회 개최경비	계
금 액	9	5	56	30	100

현재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해 설립된 보훈단체는 광복회를 비롯한 9개 단체에 각 시·군·구 지회 936개, 회원 수 20만 4763명이 등록돼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예산 중 55.9%인 5600만 원이 이들 단체의 단체장(지회장 포함)들은 물론 전문가들을 초빙해 간담회 시 참석 여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지급하고 있는 보상금의 지급 수준에 대해 설문조사로 그 만족도를 파악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한 적정 보상모델을 개발하겠다는 의도는 충분히 공감되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제 중요한 것은 이들 단체장들의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고 있는 만큼 회원들의 권익 신장과 보상금 체계에 대한 의견 개진을 위한 회의 참석 시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여비로 지급한다는 것은 예산 운용의 효율성 측면과 의견 수렴 대상을 단체장(지회장 포함)만으로 한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 등 예산 신규 반영 긍정 평가
 - 9400만 원 신규 반영, 철저한 관리와 대책 수립으로 성과 거둬야...
 - 낮은 임금 및 승진기회의 원천적 봉쇄로 선호도가 낮은 것도 문제점 대두

지난 국정감사 시 국가유공자등 기능직공무원의 취업문제와 관련, 많은 지적을 한 결과 금년도 정보화 사업 등 기타 항목으로 취업 지원을 위한 관련 예산을 9400만 원 반영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였다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일부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능직공무원의 채용 및 퇴직 등의 변동사항들에 대해 어떻게 보고 받아 취업 알선을 할 것인지가 1차 과제로 생각되는데 국가보훈처장은 어떤 방법으로 이를 파악하고 취업 알선을 극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기능직공무원의 경우 업무가 단순하고 낮은 보수 및 승진기회의 원천적인 봉쇄 등 현실적인 문제점들로 인해 일반 기업체의 취업률이 50%에 달하는 데 비해 국가 기능직공무원의 취업률은 평균 16%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점 등에 대한 적절한 개선대책이 고려되어야 취업 알선의 가시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국가보훈처장은 제도적으로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그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금년도에 처음 반영된 예산을 충분히 활용, 여건은 열악하지만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들이 국가기관으로부터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취업에서조차 소외받고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각별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국가보훈처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취업실적이 전무한 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을 상대로 한 실태 조사계획 및 그 결과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서)

○國家報勳處長 李在達

(金文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참전군인 명예수당 개념과 취지가 다른 참전군인 생계보조비를 유지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참전유공자예우법에서 종전의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보조비 제도를 폐지하고 70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법률을 개정할 배경은

○ 참전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소수인원에게만 생계보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일정연령 이상자 전원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참전관련단체와 다수 참전유공자들의 여망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생계보조비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이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본인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조사 등을 통한 생활정도를 구분할 의미는 크지 아니하며 또한 참전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은 현행과 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이나 경로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는 현행과 같이 명예수당 지급제도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2.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예산 지원 방안은?

□ 사업개요
 향일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 유물 전시 등을 통하여 위훈을 기리고 선생의 애국애족정신과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 추진주체 : (사)해공신익희 선생 기념사업회
 ○ 장 소 : 서울지역(종로구 효자동 또는 강북구 수유동)
 ○ 사업기간 : 2003~2004
 ○ 주요시설 : 기념관 및 부대시설
 ○ 총 사업비 : 47억 원

□ 예산 지원방안
 ○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3조 (국가의 시책)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 국고지원이 필요한 사업이므로
 ○ 부지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사업규모, 사업비 확보방안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연도별로 소요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여 '03년도에는 설계비 등 4억 원 지원계획

(金富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연금 지급 필요성 및 대책

□ 현행제도

○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 대한 연금 지급은 광복 이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경우만 손자녀 1인에 한하여 연금을 지급하고 있음.

※ 연금을 제외한 교육, 취업, 대부 등 간접지원은 제한 없이 실시

○ 광복 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 호주승계 손자녀에 한하여 연금수급권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는 광복 이전에 이미 배우자 및 자녀가 대부분 사망하여 연금수혜를 받지 못한 점을 고려, 예외적으로 연금을 지급하여 독립유공자의 유지를 계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 손자녀까지 연금 지급 확대 시 문제점

○ 사망시기에 관계없이 손자녀까지 연금을 지급할 경우 일반국가유공자의 자녀세대(미성년자녀)에 한정하고 있는 일반적 보상기준과 비교 시 형평성이 결여되어 전몰군경유족 등 여타 대상자들의 성년자녀는 물론 손자녀까지 연금지급 요구가 예상되고

○ 광복 이전 순국한 독립유공자는 대부분이 손자녀 1대만 연금혜택을 받은 반면, 생존지사는 본인·처, 자녀, 손자녀까지 3대가 연금혜택을 받게 되어 독립유공자 유족 간에도 보상 격차가 심화되는 등 파급영향이 지대하므로 연금지급은 곤란하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향후 추진계획

○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광복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에게 가계지원비 명목으로 순국선열·애국지사 사업기금에 전출하여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애국지사 손자녀로서 연금 비대상자 517명에게 매월 15만 원씩 가계 지원을 위한 소요예산 9억 3000만 원을 '03년 예산에 요구하였으나 미반영 상태

2. 보훈처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재산수입(임대료)에 관하여

○ 재산수입 중 임대료 수입은 4개 지방보훈청에서 약 500만 원임.

○ 4개 지방보훈청의 구내식당 등의 임대료가 1년에 500만 원에 불과

- 대전의 경우 1년에 26만 원, 임대료를 가장 많이 내는 대구에 있어서도 월 16만 8000원에 불과하였습니다.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및 사용료 징수 근거

○ 국유재산에 대한 사용 또는 수익허가는

- 국유재산법 제24조 내지 제29조

-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5조 내지 제31조

- 국유재산법시행규칙 제16조 내지 제26조에 의거, 재산의 용도 또는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재산을 사용 또는 수익허가함으로써 국유재산의 활용도 제고 효과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허가재산에 대한 사용료는 동법(제25조)·동시행령(제26조) 및 동시행규칙(제19조)에 의거, 허가재산의 사용목적, 재산의 위치, 규모에 따라 재산평가액에 규정된 사용료율을 곱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 4개 지방보훈청에서 사용·수익 허가한 재산은 모두 동시행령(제1항제2호 : 공무원 후생 목적)에 의거, 청사 일부를 허가한 재산으로 연간 사용료 또한 동시행령(제26조제1항제2호 : 재산평가액의 40/1000)에 의거, 산출한 것입니다.

- 사용료 산출 세부내역

· 부산지방보훈청 : 3878만 7480원(재산평가액) × 0.04 = 155만 1499원

· 대전지방보훈청 : 699만 4760원(재산평가액) × 0.04 = 27만 9790원

※ 2001년 사용료(23만 0730원) 대비 21.3% 증가로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사용료 조정(10% 이상 증가 시 조정)

· 대구지방보훈청 : 5056만 7600원(재산평가액) × 0.04 = 202만 2704원

· 광주지방보훈청 : 2896만 6800원(재산평가액) × 0.04 = 115만 8672원

□ 사용료 징수의 향후 전망

○ 4개 지방보훈청에서 사용·수익허가한 재산은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것으로

-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근거하여 적정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며

- 청사 내 지하층 일부공간에 위치함에 따라 이용자 또한 해당기관 근무 공무원으로 국한되는 실정으로 운영자의 인건비 이상의 운영수익 전망이 낮음에 따라 새로운 운영희망자가 없어 수익계약에 의해 허가하고 있습니다.

○ 국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는 행정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한해 허가할 수 있도록 국유재산 관계법령에 규정하고 있고,

국유재산 사용 허가현황

(금액단위 : 원)

기 관 별	소 재 지	허 가 자 (대상구분)	허가면적	연간임대료 (사용용도)	재산평가액 ('01.12월)	사용인원 (정원)
합 계	4개기관	-	147.23m ²	4,993,880		
부산지방보훈청	부산 중앙동	최희봉 (일반인)	19.83m ² (지하1층)	1,551,490 (구내이발소)	38,787,480	68
대전지방보훈청	대전 문화동	채미숙 (일반인)	22.30m ² (지하1층)	261,020 (구내식당)	6,994,760	50
대구지방보훈청	대구 대명동	황위수 (미망인)	33.40m ² (지하1층)	2,022,700 (구내식당)	50,567,600	78
광주지방보훈청	광주 주월동	최미자 (일반인)	71.70m ² (지하1층)	1,158,670 (구내식당)	28,966,800	59

- 지방기관 청사의 규모를 볼 때 공무원후생 복지시설(구내식당 등)이외의 목적으로 허가할 수 있는 공간적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음에 따라 사용료(임대료) 징수액의 증가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 다만, 개별공시지가 변동, 건물에 대한 재평가 등으로 인해 다소의 증감사유 발생은 예상되었습니다.
- 재산평가액(토지평가액+건물평가액)
 - 토지 :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
 - 건물 : 1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액
- 구내이발소 등 운영실태
 - 구내이발소 : 이발료 5000원
 - 구내식당 : 2000원~2200원/1식

3. 독립운동가 심산 김창숙 선생의 공적 및 기념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견해

- 심산 김창숙 선생의 공적
 - 심산 김창숙 선생은 경북 성주 출생(1879년)으로 1905년 을사조약 체결 당시 을사5적의 참형을 요구하는 상소를 제기한 사건을 계기로 성주 경찰서에서 8개월간의 옥고를 치른 것을 비롯 국내 및 중국 등지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항일운동을 전개, 그 공로로 1962년 건국훈장 대한민국장을 수여받았습니다.
 - 대한협회 성주지부를 결성, 국채보상운동을 전개
 - 사립학교인 성명학교를 세워 민족주의 교육 실시
 - 친일단체 일진회의 한일합병론을 매국행위

- 로 규탄
 - 중국 상해에 임시의정원 조직 (김구, 이동녕, 이시영 등)
 - 독립운동기관지 사민일보 창간 및 천고 간행 등
- 심산기념관 건립 (필요성)
 - 심산 김창숙 선생 기념사업회에서 추진 중
 - 우리 처에서는 필요성을 인정하여 2003년도 예산에 반영할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4. 보상모델은 KDI에서 나온 결과를 검토하면 될 것인데 보상모델 정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비로 9998만 원이 신규로 반영되어 중복 책정 되었고, 그중 5600만 원은 단체장 참가 여비로 이는 전액 삭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보상모델의 중복 책정여부 및 경비의 필요성
 - KDI에 용역 의뢰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개편방안은 복잡 다양한 보상금 종목의 조정과 적정한 보상수준에 따른 기준지표 설정 등 장기적인 보상체계의 합리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 보상모델 정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수렴 경비의 용도는
 - 그동안 보상금의 적정 인상수준과 관련하여 중앙 보훈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 매 연도말 및 연초에 인상률에 대한 전체 대상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증하는 등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훈관련

전문가와 전국의 각급 보훈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로 보상금의 적정 지급수준을 수렴하여 보상금 예산요구 시 반영하고,

- 보상금 인상률이 결정된 후에는 보훈단체에 정부의 재정여건과 인상배경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로서 KDI에 용역 의뢰한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개편방안과 중복되는 경비가 아님을 나타냅니다.

- 보훈단체장 등 임원들에 대한 여비 지급문제
 - 보훈단체에 대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보조금은 사무실을 겨우 운영 및 유지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소액으로 1년에 1~2번 정도의 간담회 때 보훈단체장들에게 여비 지급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 현행 공법상의 보훈단체는 9개 중앙회와 85개 시·도지부, 936개의 시·군·구 지회로 구성되어 있어 지급단위별로 보면 큰 금액이 아니며(1회 5만 원 정도 지급), 또한 지방보훈관서의 숫자가 25개소로서 관할구역이 광역화되어 있어 원거리 소재 보훈단체 대표에게 여비 지급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金允式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해외독립운동 사적지 표지석 설치사업비가 '03년에 감액 편성되어 동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02년도 표지석 설치 관련 예산은 일부분은 전용되거나 불용될 것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

- 해외 독립운동사적지 표지석 설치 관련 예산
 - '02년도 대비

(금액단위 : 백만 원)

구 분	2002	2003	증 감	비 고
금 액	600	300	△300	

- 해외독립운동 관련 사적지에 대한 표지석 설치 사업은 설치에 따른 장소 사용 승인, 허가 등을 위해 관련국 정부 또는 소유주와의 사전 접촉을 통한 정지작업이 필요하며 건립 후의 관리방안 등을 마련하는 등의 절차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 따라서 국내 추진 사업보다 사전 협조 등을 위한 추진기간이 더 필요하였습니다.

- 2002년도 표지물 설치예산 집행현황

- 금년도 표지물 설치사업은 중국 용정지역의 3·13 독립만세사건 관련 사적지 5개소, 러시아 지역 이범진 공사 순국지 및 미국지역 박용만 선생 소년병학교 등 총 17개소에 6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 이중 중국지역 5개소, 러시아지역 1개소, 미국지역 1개소 등 7개소에 3억여 원을 들여 표지물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 금년 말까지 중국지역의 한국광복군 훈련지, 광복군 제1.2지대 및 만주 신흥무관학교 등 4개소와 미국 상항지역의 장인환·전명운 의사 의거지 등에 표지물을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2003년도 표지물 설치계획

- 미국 이민 100주년이 되는 내년에는 북미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 관련시설인 LA 대한인 국민회관 복원 및 표지물 설치, 워싱턴 DC의 대한제국 구미공사관과 구미위원회 등 3개소와
- 중국지역의 광복군 활동 관련 시설물, 러시아 지역의 무장항일운동 사적지 및 유럽지역의 구한말 외교관련 시설물 등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현지공관 등과 긴밀 협조로 반영된 예산범위 내에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 2003년도 예산안 중 북과공작원에 대한 보상금 지급과 관련하여 1959년 이후 북과공작관련 사망자 및 상이자 752명에 대하여만 예산을 책정한 것은 이 기간 중 희생자가 총 2150명임을 감안할 때 책정된 규모가 미약한데 보상금 지급 대상자 선정기준과 향후 예상되는 대상자 확대요구에 대한 대책은?

- 60년대 이후 북과관련으로 국가유공자로 등록되는 자와 그 유족을 위한 보상금 지급인원 752명 추계는 1959. 12. 31 이전에 북과관련으로 희생된 인원(5575명)과 동 기간에 민간인으로서 전투 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등록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1957명의 인원 수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였습니다.
 - 1957명 / 5575명 = 35%
 - 북과관련으로 60년대 이후에 희생된 자(언론 보도) : 2150명
 - 보상금 지급 예상인원 : 752명(2150명×35%)
- 위의 1957명 중 북과관련으로 등록된 인원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는바, 이는 국방부에서 전공

사상자 통보 시 북파관련 여부와 구체적인 사망·상이원인 등을 통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 북파와 관련하여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으로 등록결정될 경우는 군경과 동일하게 상이정도와 개인별 여건에 따라 법령이 규정한 보훈연금 등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상이등급(1급~7급)에 의거, 유족은 배우자, 미성년 자녀, 부모 순위로 보훈연금을 지급하고, 1953. 7. 27 이전이나 법률이 규정한 전투기간 중 전사·순직자 자녀에 대하여는 6·25 전몰군경 자녀수당을 지급합니다.

□ 2003년도 보상금 지급 인원을 752명으로 예상하였으나 민간인으로서 1959. 12. 31 이전에 전투등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고 등록된 국가유공자 중 북파관련자는 일부인 점, 북파관련 희생자 중 소재불명 등 경우는 국방부에서 관련 규정에 의거, 사망으로 행정처리해야 국가유공자로 등록될 수 있고 이 경우 그 기간이 상당 기간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할 때 북파관련 보상금 지급 예산은 부족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朴柱宣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03년도 기본연금 및 부가연금이 각각 7%와 8.1%만이 반영됨으로써 사회경제지표와 연계된 보훈연금 인상계획에 상당한 차질이 있게 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이에 합리적인 보상체계의 확립을 위하여 현 보상금 지급수준 및 증장기 계획의 재검토가 필요하다 하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2003년도 예산 반영내용

○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우리 처에서는 보훈정책 증장기 발전계획에 의한 보훈연금 인상 5개년계획에 의거, 기본연금을 13.3% 인상을 요구했으나 7% 인상되었고, 부가연금을 17.6% 인상 요구했으나 8.1% 인상에 그쳐 사회경제지표와 연계된 인상계획에 차질이 우려되지만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국가유공자에 대한 정부의 특별한 관심 표시로 판단되었습니다.

□ 합리적인 보상체계 확립

○ 보상체계 확립과 관련해서는 금년 9월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보훈보상체계의 합리화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연구기간 5개월, 2002. 9. 26~2003. 2. 25)

○ 연구결과에 따라 전문가와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현 보상금 지급수준 및 증장기 인상계획 등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재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에 대한 국비 진료범위를 당해 질병에서 전 질병으로 확대하는 대책은?

○ 고엽제 후유의증질환은 대부분 고혈압, 악성종양 등 성인성 질환이나 중증질환이 많고, 대다수 환자가 월남전 참전자로 노령화 추세가 뚜렷하여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가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 또한 해당 상이에 대한 치료비를 일시금으로 보상받고도 전 질환에 대해 국비 진료를 실시하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참전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고엽제 피해자의 예우 증진 차원에서도 장해등급 판정을 받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등에 대한 전 질환 국비 진료는 바람직하다고 보여집니다.

○ 앞으로 모든 질환의 국비 진료를 위해 소요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소요예산 : 17억 700만 원

3. 독립유공자를 발굴하고 공적에 흠결이 있는 인사를 규명하는 작업은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야 할 사업이나 시간이 지날수록 자료의 멸실이나 훼손으로 작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앞으로의 대책은?

○ 지적하신 바와 같이 시간이 지날수록 독립운동 관련자료의 멸실과 훼손의 우려가 증가하는 것에 대비하여 정부기록보존소 및 국사편찬위원회 등 국내 사료소장기관 간의 협력체제를 긴밀히 하여 소장사료의 공동활용으로 숨은 독립유공자 발굴 포상에 보다 주력하겠습니다.

○ 외국학자나 국외에 유학 중인 사료관련 전문가들을 사료 수집 위원으로 활용하여 국외소장 사료 수집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사료 수집에 소요되는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 현충시설물 실태조사 결과 및 금년 수해로 훼손되거나 파괴된 현충시설의 현황과 2003년도 예산안 4억 원으로 개보수 가능성?

- 현충시설 실태조사 결과
 - 지역별, 시설별 실태조사 현황

기관명	계	독립운동 관련	참전관련	비고
합 계	1,612	711	901	
서울청	452	150	302	
부산청	339	136	203	
대전청	258	135	123	
대구청	246	144	102	
광주청	317	146	171	

- 실태조사 자료 (항목별) 우리 처 홈페이지에 게재

- 금년 수해로 훼손 또는 파괴된 시설현황과 '03년도 예산 4억 원으로 개보수 가능성
 - 수해로 인한 훼손시설 : 훼손 확인된 시설 없습니다.
 - ※ 2003년 개보수 예산 4억 원은 그 외 개보수를 필요로 하는 시설에 지원(예정)

5. 현충시설 건립 지원 시 합리적인 국고보조율 지원기준과 개선방안

- 현충시설 건립 지원 대상 및 선정기준(국고보조율)
 - 대상(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독립운동 및 국가수호 활동에 관련된 기념시설
 - 기념관, 기념탑, 기념비, 조형물, 생가, 사당 등
 - 선정기준 (규정 제12조)
 - 현충시설에의 해당여부
 - 국가유공자의 훈격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 사업주체의 능력(부지 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 2003년 국고 보조기준
 - 사업의 성격, 규모, 파급효과 등 종합검토
 - 전국적 대표시설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정액 지원, 기타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고려, 연차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 현충시설 건립 지원에 따른 합리적 국고보조율 지원 개선방안
 -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국고보조 기준율을 현충시설 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으로 제정,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할 계획입니다.

6. 수도권 호국용사묘지에 조성되는 납골당 안치율을 제고하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과 대책

- 호국용사묘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제문화 선도 차원에서 묘지와 납골시설을 동시에 갖추고 있으나 아직까지 매장에 대한 오랜 관습과 납골시설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안장대상자 대부분이 납골당보다는 묘지를 선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따라서 수도권 묘지 납골시설은 위와 같은 안장대상자의 정서와 기 조성된 영천/임실묘지 납골시설 운영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개선·보완하고
-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납골시설 설치 등을 위하여 의뢰 중인 전문연구기관(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용역결과와 민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장수요에 부응하는 시설을 설치토록 하여 안치율을 제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朴柱千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보상금 과오불 회수와 관련하여 정부통합 DB 사업의 진행경과와 이에 상응한 보훈전산망 확충·운용과 같은 정보화 추진일정 및 차질 없는 사업 추진을 위해 부처 간 협의를 적극적으로 수행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

- 그동안의 과오불 발생 방지대책
 - 보상금 과오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 본부에서 연 4회 전체 대상자 명단을 M/T에 복사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사망 사실여부 등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 대사하여 오고 있으며,
 - 보훈지청에서는 사망 개연성이 높은 80세 이상 고령자와 무의탁 부가연금 수령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안부전화나 행자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사망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훈신문에 신상 변동 신고 안내문을 연

4회 이상 공고하고, 보훈단체를 통하여 수급권자 신상 변동사항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와 사망 등 신상 변동사항의 신고 지연으로 보상금 과오불이 매년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향후 계획

- 행정자치부와 협조하여 추진 중인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사업인 G4C사업이 금년 내 구축이 완료되면, 이를 적극 활용하여 2003년도부터는 전체 대상자에 대한 사망 사실 여부 등 신상 변동사항을 수시로 조회·확인함으로써 보상금 과오불이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 한편, 우리 처 자체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보훈행정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부처와 연계, 과오불 방지 등 종합적인 전산정보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2. 보상금 인상 5개년계획 수립 시 예산당국과 협의를 거쳤는지와 동 계획의 실현가능성이 의심받게 되는 상황인데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다고 보는지, 그리고 차제에 한두 해 늦더라도 재정여건이 정확히 반영된 현실적인 보상금 확충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견해

□ 보상금 인상 5개년계획

- 우리 처에서는 현행 보상금 지급수준이 미흡하다고 판단하여 보상금 인상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2007년까지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을 통합한 보훈연금이 근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1급1항 상이자를 기준으로 기본연금을 포함하여 도시가구 가계비(소비지출부문)의 80% 수준 보전을 목표로 연차적으로 인상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보상금 인상 5개년계획은 보훈정책 중장기 발전계획에 의거, 자체적으로 수립한 것으로써 계획 수립 시 예산당국과 재정 확보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는 없었습니다.

□ 향후 계획

- 보상금의 적정수준 실현은 재원의 뒷받침이 있어야 가능하나 2003년도 기본연금과 부가연금의 인상률이 우리 처의 보상금 인상 5개년 계획에 의거, 요구한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

- 실상 정상적인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 금년 9월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보상금 적정수준 및 종목 조정 등 보훈보상체계의 합리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였으며, (연구기간 5개월, 2002. 9. 26 ~ 2003. 2. 25)
- 연구결과에 따라 보훈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예산당국과도 긴밀히 협의하여 중장기 보상금 인상계획 등 급여수준의 적정성을 재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 위탁가료비 적기정산을 위해 당해 연도 위탁가료비 소요분을 일반회계 또는 기금에 반영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노령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 도모를 위해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위탁가료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 '02년 10월 현재 전국 129개소 운영
- 위탁병원의 지속적인 확대 지정 등으로 집행액이 예산을 초과하고 있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이를 우선 지급함에 따라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선 2003년도 위탁가료 예산으로 금년 대비 199% 증액한 28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당해 연도에 가료비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4.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 시 공적조서 작성을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기 위해 계상된 공적심사 집필 수수료가 목적 외로 집행된 경우와 이에 따라 삭감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공적심사 집필 수수료 목적 외 집행 경우
 - 당초 공적심사 집필 수수료(2150만 원)는 독립유공자 포상 심사를 위해 작성하는 공적조서를 외부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집필토록 하고 그에 대한 사례비를 지급할 계획이었으나
 - 이 달의 독립운동가 홍보를 위한 달력 및 포스터 제작비 예산이 부족하여 동 사업비 충당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공적심사 조서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한 직원(2명)에게 작성토록 하여 공적심사 집필 수수료를 미집행
- 삭감에 대한 견해
 - 현재 담당직원을 통한 공적조서 작성이 이뤄지고 있습니다만 향후 발굴 포상을 확대하기

위해 담당직원 2명만으로 공적조서를 작성하는 데 한계가 있고

- 외부 전문가들에게 공적심사에 대한 집필 의뢰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예산의 존속이 필요하였습니다.

5. 명예수당 지급액 월 5만 원이 당초 예정금액인 월 6만 5000원에 미치지 못하여 대상자 불만소지가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명예수당 지급액에 대하여 우리 처에서는 종전 생계보조비 수준인 월 6만 5000원은 되어야 한다는 판단에서 예산 반영을 추진하였으나 정부 재정사정과 타 국가유공자와의 형평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월 5만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 참전명예수당 지급수준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련단체 등을 방문 이해·설득하여 단체 차원에서의 항의는 없으나
- 다수의 참전유공자들이 개별적으로 민주화관련 보상수준 등과의 형평성을 들어 항의가 빈번함으로 이에 대하여는 정부의 재정 부담능력과 제도 마련 의의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 이해·설득시키고 있습니다.
- 향후 인상문제는 물가상승률과 정부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예산당국과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安大崙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영천/임실묘지의 안장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시기·규모 등에 대한 판단근거

- 영천/임실묘지 안장실적이 저조한 사유
 - 호국용사묘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장묘 문화 선도 차원에서 납골묘, 납골당 중심으로 조성하였으나 아직까지 화장문화에 대한 인식이 높지 아니하고
 - 개원 초기의 호국용사묘지에 대한 인식 부족과 안장대상자 정서가 원거리 타 지역인 경북 영천이나 전북 임실묘지보다는 연고성이 있는 선산이나 거주지 인근지역 안장을 선호하고 있으므로 안장률이 비교적 저조하였습니다.
-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시기, 규모 등에 대한 판단근거
 - 호국용사묘지 주 안장대상자인 6·25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이 72세의 고령이고
 - 수도권 지역 약 37만의 안장대상자가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묘지 이용에는 거리상 불편한

점이 있으며

- 호국용사묘지는 안장기능 뿐만 아니라 호국안보교육장으로서의 역할(현충일 행사, 호국백일장, 안보관련 시청각실 운영 등)을 동시 수행하는 현충시설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 2005년까지 5만기 규모의 납골시설(납골묘, 납골당)과 현충시설물(현충탑, 기념탑, 상징조형물 등)을 갖춘 묘지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李性憲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사립대 공납금 보조사업 예산 산정에 있어 중요한 근거는 대상인원 수의 측정과 국고 보조 지급단가의 증가추세로써 이는 예측가능한 것이라고 판단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2003년 예산 집행 시 불용액이 발생한다면 2001년과 같이 타 사업에 이·전용할 것인지 및 이·전용 자제 권고에 대한 견해는?

- 2000년, 2001년 불용액 발생
 - 사립대 공납금 국고보조금의 적정한 편성을 기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법령 개정으로 인한 신규대상자 발생, 교육부의 제도 변경, 휴학자의 급증 등으로 인한 인원 추계의 한계로 매년 불용액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2000년 25억, 2001년 99억)
- 2003년도 사립대 공납금 국고 보조 예산편성 내역
 - 2003년도 예산편성은 보다 정확을 기하고자 노력하여 2002년 예산(594억 5000만 원) 대비 1.2% 증액된 601억 4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인원은 △171명)
- 대상인원 및 지급단가 추계의 예측가능성 여부에 대한 견해
 - 지급 대상인원의 추계
 - 최근 4년간 예산의 과부족이 발생한 것은 계획상 지급인원과 실제 집행인원과의 차이에 기인하였습니다.
 - 매년 법령 개정과 교육부의 제도 변경, 취업여건 악화 등으로 인하여 인원 변동추이의 기복이 심하여 추계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 그러나 인원 추계 판단 시 직전 연도 상반기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하고, 2학기 및 연간 실 지급인원의 변동추이를 감안할 경우 오차를 최소화하여 계획과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었습니다.

- 2003년도의 경우는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최소한의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하여 신규대상인 광주민주유공자를 감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02년 대비 171명을 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 사립대학 국고 보조 지급단가의 추계
 - 예산편성 시 다음 연도의 등록금 인상률 등을 고려하여 지급단가를 정하는데, 실제 사립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학내 등록금 투쟁 등 다양한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되고 있습니다.
 - 연도별 등록금 인상률,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지수 등을 고려할 경우 어느 정도 오차범위 내에서 예측은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2003년도의 경우 3% 인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 2003년도 불용액 발생 시 이·전용 여부 및 자체 권고에 대한 견해

- 예산의 이·전용은 예산편성 후의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발생 시 이루어지는 현실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 그러나 이·전용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예산의 적정한 사용도모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목적의 제한이 있고,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광범위한 이·전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되었습니다.
- 예산편성 시 지급대상 및 지급단가의 정확한 추계를 통하여 불용액 발생 등 과부족현상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설사 불용액이 발생하더라도 가급적 이·전용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2002년도에 240대의 PC를 구입하였는데도 2003년도 임차료 항목이 변동되지 않은 사유

- PC 보유현황
 - 2002년 현재 우리 처가 보유한 PC는 총 1631대로서 그중 리스로 도입한 것이 536대이고 자체 예산으로 구입한 것이 1095대입니다.
- 임차료 예산항목이 변동되지 않은 사유
 - 리스물품 대부분이 내용연한 3년을 경과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물품이나 계약 당시의 리스 계약기간 5년이 만료되는 2003년 12월까지의 임차료를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3. 88골프장 운영수익을 높여 보훈기금을 증식할 수 있도록 경상경비를 절감하고, 재경부와 협의하여 골프장 세금을 감면 받는 등의 방안에 대한 견해?

- 경상경비 중 인건비를 절감하기 위해 1998년 이후 정원을 축소하여 동일규모(36홀 기준)의 타 골프장보다 적은 인력으로 운영 중이며, 퇴직금 지급제도를 개선하는 등 자체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 중입니다.
 - 정원 감축(8명) 및 직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1년씩 단축
 - 퇴직금 지급제도 개선(누진제→단년제)등
- 또한 2002년부터 전동카트 운영, 2003년에 야간 조명시설 설치 등을 통해 영업수익을 획기적으로 증대시키는 한편, 월요 개장을 실시하는 등 보훈기금 증식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습니다.
 - 전동카트 도입에 따른 연간 수익 : 16억 원
 - 조명시설 설치에 따른 연간 수익 : 33억 원
- 이에 따라 2003년도 88골프장의 영업이익 목표를 2002년도 목표 95억 원보다 12억 원이 증가한 107억 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한편, 88골프장은 보훈기금 소유의 국유재산으로 현재 관련법에 의거, 부가가치세,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는 면제받고 있습니다.
- 그러나 입장객에게 일률 징수 후 납부하는 특별소비세·농어촌특별소비세·교육세·체육진흥기금 등 4종은 입장요금에 부가되는 세금으로 면세가 불가능하며, 이는 골프장 수익에 영향을 주는 세금이 아닙니다.

4. 수해로 현충시설 훼손이 우려되는바 실태조사 내용과 대책, 백범 김구 선생 거처인 경교장 복원 및 보존대책,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 예산 증액에 대한 입장은?

- 수해로 인해 훼손된 현충시설 및 대책
 - 수해로 인한 훼손 현충시설 : 훼손 확인된 시설 없습니다.
- 경교장 복원(보존) 등에 대한 여론
 - 경교장의 의의 및 현 사용실태 등 여론
 -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해방 이후인 1945년 11월 중국에서 귀국하여 1946년 6월 26일 암살 당할 때까지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되었던 장소로서 서울시 유형문화재 129호(2001. 4. 6)로 지정되어 있으며 현재 병원 부속건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소유주인 강북삼성병원은 2004년까지 경교장 2층에 20평 규모의 백범기념실을 마련 백범 선생과 관련된 자료를 전시하여 일반

인에게 개방할 계획 등이 언론에 보도된 바 있으며

- 또한 백범기념관과 묘소가 있는 효창공원으로 경교장을 이전하여 테마공원으로 조성하거나 또는 문화재 원형 유지를 위해 현 위치에 복원 유지하자는 의견 등 민족지도자로서의 백범의 위상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복원과 보존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여론도 대두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우리 처에서 관리하고 있는 현충시설의 정의

- 우리 처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이란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2에서 정한 바와 같이 국가유공자 또는 이들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각종 건축물·조형물·사적지나 국가유공자의 공훈이나 희생이 있었던 일정한 구역 등으로서 국민의 애국심을 함양함에 상당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독립운동 및 국가 수호 관련시설을 말하였습니다.

□ 경교장의 현충시설 해당여부

- 경교장은 백범 김구 선생께서 해방 이후인 1945년 11월 중국에서 귀국하여 1946년 6월 26일 암살 당할 때까지 집무실과 숙소로 사용되었던 장소이며 그 후 타이완 대사관저, 미국특수부대(6·25 당시) 주둔지 등으로도 사용되었던 건물로 우리 처 관련법상 현충시설에 포함되지 않은 시설로서 현재 서울시 유형문화재 129호(2001. 4. 6)로 지정되어 있고 소유주인 강북 삼성병원에서 부속 건물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 경교장 보존에 대한 우리 처 의견

- 이와 같은 경교장은 백범 선생의 직접적인 독립운동 활동사실과는 무관하므로 현충시설로 관리하기보다는 현재 서울시 문화재로 지정되어 있으므로 서울시에서 삼성 측과 협의하여 백범 선생의 유지가 계승될 수 있도록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예산 증액에 대한 의견

○ 사업개요

향일독립운동가인 해공 신익희 선생의 기념관을 건립, 유물 전시 등을 통하여 위훈을 기리고 선생의 애국애족의 정신과 사상을 계승·발전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사업내용

- 추진주체 : 기념사업회

- 장 소 : 서울지역 (종로구 효자동 또는 강북구 수유동)

- 사업기간 : 2003~2004
- 주요시설 : 기념관 및 부대시설
- 총사업비 : 47억 원

○ 우리 처 의견

- 해공 신익희 선생 기념관 건립사업은 독립유공자예우법 제3조 (국가의 시책)에 의한 독립유공자의 공훈을 기리기 위한 현충시설로 국고 지원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 따라서 부지 선정 및 구체적인 사업계획서 (사업규모, 사업비 확보방안 등)를 종합적으로 검토, 사업기간별로 필요 예산을 반영,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李訓平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광주 5·18단체 운영비 지원예산 삭감에 대한 대책, 지원근거 마련 시까지 5·18재단에 사업비 보조를 통해 단체에 지원하는 방안 에 대한 견해?

- 5·18관련단체는 현재 5·18기념재단에서 운영비를 일부 지원받고 있으나 5·18단체 등이 우리 처로 이관될 경우에 대비하여 단체 운영 지원에 소요되는 예산 4억 22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지원 근거규정이 없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 운영비 지원 근거규정이 마련될 때까지 5·18관련단체의 활동 지원을 위하여 5·18기념재단의 지원수준인 연간 1억 원의 운영비 예산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2. 늘어나는 의료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수도권 보훈병원 조기 건립대책

- 수도권의 인구 집중화에 따라 국가유공자 전체의 41%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어 서울, 인천, 경기, 강원도의 진료권역을 담당하는 800병상 규모의 서울보훈병원 1개소만으로는 증가하는 의료수요 대처에 한계가 있습니다.
- 이에 따라 서울병원에 200병상 규모의 전문요양시설 및 재활체육시설, 부산병원에 병동 증축(340→540병상) 및 장례식장, 수도권 보훈병원(200병상 규모) 건립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정부 예산 사정상 우선 서울보훈병원 전문요양시설 및 재활체육시설 건립예산 25억 원과 부산보훈병원 병동 증축 및 장례식장 건립

예산으로 22억 원이 반영되었고, 수도권 보훈병원 건립예산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앞으로 정부 예산사정을 감안하여 예산당국과 수도권 보훈병원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 현충시설 건립 지원기준 및 향후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기준 마련에 대한 견해, 사업 예산의 30% 기준을 초과한 현충시설 건립 지원사유,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해 국고 부담비율 조정 등 개선방안

- 현충시설 건립 지원기준 등 마련에 대한 견해
 - 현충시설 건립 지원대상 및 기준 <법제화 완료>
 - 대상(현충시설의 지정·관리등에 관한 규정 제3조)
 - 독립운동 및 국가 수호활동에 관련된 기념시설
 - 기념관, 기념탑, 기념비, 조형물, 생가, 사당 등
 - 선정기준 (규정 제12조)
 - 현충시설에의 해당여부
 - 국가유공자의 훈격과 그 공훈 또는 희생의 정도
 - 대표성, 유사시설과의 형평성 또는 지역별 분포
 - 사업주체의 능력(부지 확보 및 자기부담자금의 확보상태 등)
 - 사업의 실현 가능성 등
 - 국고 보조기준
 - 사업의 성격, 규모, 파급효과 등 종합검토
 -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고려, 연차적 지원
- 현충시설 건립예산 30% 기준 초과하여 지원 하는 사유
 - 2002년 국고 보조기준
 - 사업의 성격, 규모, 파급효과 등 종합검토
 - 전국적 대표시설로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인 경우 정액 지원, 기타 사업의 경우 단위사업 총 사업비의 30% 범위 내에서 사업연도를 고려, 연차적으로 지원
 - 2003년도의 경우
 - 전 사업에 대해 총 사업비의 30%(1/3)를 적용, 예산 반영하였습니다.
 - * 미주지역의 대표적 독립운동 관련 시설인 대한인 국민회 북미 총회회관 복원사업

업은 전액 국고 지원으로 추진되는 해외 독립운동 사적지 보존사업의 일환으로서 30% 지원 적용으로는 사업이 불가능하여 사적지를 보존할 수 없어 전액 국고로 지원하였습니다.

- 검토보고서에서 19개 사업이 국고보조율 30%를 초과하였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이는 사업 계획서상의 총 사업비 중 사업주체가 국고로 확보하려고 목표로 한 금액을 기준으로 잘못 산정하였기 때문입니다.

- 예산 낭비 방지를 위한 국고 부담비율 개선방안
 - 현행 현충시설 건립 지원 시 국고 지원기준 - 30%(1/3) 적용
 - * 위 기준 철저 준수로 불필요한 예산 지원 억제
 - 국고보조율 개선방안 (검토)
 - 현충시설 건립 및 개·보수 지원 국고보조 기준율을 현충시설관리에 관한 지침(훈령)으로 제정, 보다 합리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 시행할 계획입니다.

4. 경북 영천과 전북 임실의 납골당 안치가 적은 사유, 수도권 호국용사묘지 조성 시 새로운 납골당 시설 설치방안

- 납골당 안치율 저조사유
 - 영천/임실 호국용사묘지는 장묘문화 선도 차원에서 납골묘와 납골당으로 조성하고 본인 또는 유족의 희망에 따라 묘지 안장 또는 납골당 안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아직까지 안장자 대부분이 납골당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골묘를 선호하고 있어 납골당 안치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 수도권 묘지 납골시설 개선대책
 - 수도권 묘지 납골시설을 환경친화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현재 전문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용역 의뢰 중이며 용역결과와 민간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장자 수요에 부응하는 시설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5. 경인지역 의료수요 충족을 위한 대책

- 800명상 규모의 서울보훈병원에서 서울 뿐만 아니라 수도권지역 거주 국가유공자까지 진료를 전담하고 있어 경기·인천지역 거주 국가유공자들이 보훈병원을 이용하기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 이에 우리 처에서는 보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하고자 129개소의 일반병원을 지정하여 위탁가료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인천지역에도 인천의료원 등 20개소를 지정하여 보훈병원과 동일하게 국비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기·인천지역 등 수도권지역 거주자 진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200병상 규모의 수도권 보훈병원 건립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03년도 예산에 건립 1차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을 반영코자 하였습니다.
- 그러나 정부 예산 사정상 우선 서울보훈병원 전문요양시설 및 재활체육시설 건립예산 25억 원과 부산보훈병원 병동 증축 및 장례식장 건립예산으로 22억 원이 반영됨에 따라 수도권 보훈병원 건립예산은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 앞으로 수도권 보훈병원을 조기에 건립하여 경기·인천지역 거주자의 진료 편의를 도모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趙在煥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보철용 LPG차량 세금 감면 대상자 내역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예산으로 LPG차량 연료비를 지원하는 방식 대신 농어업용 석유류 세금감면 방식으로 전환할 용의

-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유공상이자 중 LPG차량 사용자는 '02. 9월 말 현재 3만 1732명입니다.
- 석유가격구조 개편에 따른 수송용 LPG의 특별소비세 인상은 세수 확보 차원이 아닌 휘발유 등 타 유종과의 가격구조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며, 인상된 세금 자체가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에 편입됨에 따라 동 회계에서 정산하여 지원하게 된 것입니다.
- 감세 등 지원방식 변경은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에서 검토할 사안이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농어업용 면세유 지원방식이 2003. 6월까지 한정적이고, 실 사용자 파악 예로·공급과정상 혼란·목적 외 사용방지 곤란 등에 따른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 따라서 LPG차량 보유자가 실제 사용한 만큼만 세금 감면하는 것이 바람직하여, 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신용카드 기능을 부가한 복지카드를 발급·사용토록 하게 된 것이므로 동 방법에 의한 세금 인상분 지원은 곧 세금 감면

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2. 광복회관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으로 독립유공자 복지시설과 광복회관을 같은 장소에 건립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 현 광복회관 매각 후 복지시설과 함께 건립하는 데 대한 견해
 - 복지시설 부지는 서울시와 협의해서 확보할 계획이나 여의치 않을 경우 위원님 지적대로 현 광복회관을 매각 후 독립유공자 복지시설을 함께 건립하는 문제를 광복회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복지시설 건립계획
 - 건립위치 : 서울시
 - 건립규모 : 대지 600평, 건물 800평(지하1층, 지상5층)
 - 복지시설 : 독립운동자료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목욕탕, 회의실, 관리실, 근린생활시설 등
 - 건립소요예산 : 25억 7000만 원
 - 국고보조금 : 15억 원
 - 지방비보조금 : 10억 원
 - 자체부담 : 7000만 원
 - 공사기간 : 2003. 6~2004. 5

3. 참전유공자 생계보조비 부활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금년 10월부터 시행된 참전유공자예우법에서 종전의 65세 이상 저소득자에 대한 생계보조비 제도를 폐지하고 70세 이상 모든 참전유공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토록 법률을 개정할 배경은
 - 참전유공자 중 생활이 어려운 소수인원에게만 생계보조비를 지원하는 것보다는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과 자긍심 함양을 위한 예우 차원에서 참전명예수당으로 전환하여 일정연령 이상자 전원에게 지급하여 달라는 참전관련단체와 다수 참전유공자들의 여망을 수렴하여 제도를 개선한 것입니다.
- 생계보조비 제도를 별도로 유지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이 근로에 종사하지 아니하여 본인소득이 없으므로 소득조사 등을 통한 생활정도를 구분할 의미는 크지 아니하며 또한 참전유공자 중 생계가 곤란한 분들은 현행과 같이 국민기초생활

보장이나 경로연금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참전유공자 예우 차원에서는 현행과 같이 명예수당 지급제도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었습니다.

4. 광개토대왕 묘비 및 일송정 예산 지원 검토

□ 현충시설의 정의

○ 국가보훈처에서 관리하는 현충시설이란 일제의 국권 침탈(1895년) 전후로부터 1945년 8월14일까지 국내외에서 항일 운동을 전개한 독립운동 관련시설과

○ 6·25 및 월남전에 참전한 국가유공자의 공훈 및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한 국가 수호 관련시설을 말하였습니다.

※ 관련 근거조항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74조의2

□ 광개토대왕 묘비 및 일송정에 대한 지원

○ 광개토대왕 묘비는 우리 처 법 적용 대상시설이 아닙니다.

○ "일송정"은 중국 용정시 비암산에 위치한 정자로서 일제시대 당시 용정에 거주하는 민족운동가들이 자주 올라 조국의 독립을 염원했던 장소입니다.

- 비석1식, 6각 정자1식으로 현재 용정시 원림 관리처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용정을 찾는 관광객들의 주요 순방코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 2000년 중국지역 실태조사 당시 관리 보존상태가 우수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일송정에 대한 국고 지원은 동 지역이 우리나라 및 중국, 북한 등과 외교관계상 미묘한 지역이므로 정부에서 직접 추진하기 보다는 민간 차원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 사전 중국정부의 협의 등을 거쳐 추진하고 정부는 행정적, 측면 지원을 통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崔在昇 委員 질의에 대한 답변)

1. 연차적으로 예산 반영을 현실화하여 위탁진료비 부족을 해소하는 데 대한 견해와 향후 추진계획, 그리고 보훈병원은 중증환자를 중심으로, 위탁병원은 경증환자 위주로 진료를 이원화하는 데 대한 견해

○ 노령 국가유공자의 진료 편의 도모를 위해 보

훈병원 이용이 어려운 지역 위주로 위탁가료병원을 지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 '02년 10월 현재 전국 129개소 운영

○ 위탁병원의 지속적인 확대지정 등으로 실 집행액이 예산을 초과하고 있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이를 우선 지급함에 따라 자금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이에 따라 우선 2003년도 위탁가료 예산으로 금년 대비 199% 증액한 28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당해 연도에 가료비 전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 앞으로 서울보훈병원 전문요양시설 및 재활체육시설 신축 등을 계기로, 보훈병원은 상이처 및 장기 요양성질환 진료 위주로 운영하는 한편, 위탁가료병원을 전국 시·군지역에 1개소씩 확대 지정하여 거주지 인근에서 가벼운 질환을 진료케 하는 등 효율적 진료분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2. 국가유공자의 사망, 개가, 행방불명 등 신상 변동사실을 실시간으로 조회하여 적극적인 방안강구를 하는 등 과오불 발생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그동안의 과오불 발생 방지대책

○ 보상금 과오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처 본부에서 연 4회 전체 대상자 명단을 M/T에 복사하여 행정자치부의 주민전산망과 연계하여 사망 사실여부 등 신상 변동사항을 확인 대사하여 오고 있으며,

○ 보훈지청에서는 사망 개연성이 높은 80세 이상 고령자와 무의탁 부가연금 수령대상자에 대하여 매월 안부전화나 행자부 주민전산망을 통해 개인별 사망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 또한 보훈신문에 신상 변동 신고 안내문을 연 4회 이상 공고하고, 보훈단체를 통하여 수급권자 신상 변동사항 신고를 철저히 하도록 홍보도 하고 있으나 행정력의 한계 등으로 보상금 과오불이 매년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 향후 계획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범정부사업인 G4사업이 금년 내 구축이 완료되면 이를 적극 활

용하여 2003년도부터는 전체 대상자에 대한 사망 사실여부 등 신상 변동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한편,

- 우리 처 자체 정보화 전략계획(ISP)을 수립하여 2003년 상반기까지 보훈행정 통합시스템을 구축하여 관계부처와 연계, 과오불 방지 등 종합적인 전산정보망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3. 보상모델 정립을 위해 단체장을 중심으로 여비를 편성하는 것은 예산운용상 문제가 있고, 여론수렴상 한계가 있는바, 보다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

□ 현 실태 및 보상모델 정비의 필요성

- 그동안 보상금의 적정 인상수준과 관련하여 중앙 보훈단체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 그러다 보니 매 연도말 및 연초에 인상률에 대한 전체 대상자들의 불만과 민원이 폭증하는 등 후유증이 많았습니다.
-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훈관련 전문가와 전국의 각급 보훈단체장들과의 간담회를 통한 의견 청취로 보상금의 적정 지급수준을 수렴하여 보상금 예산요구 시 반영하고,
- 보상금 인상률이 결정된 후에는 보훈단체에 정부의 재정여건과 인상배경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기 위하여 반드시 필요한 경비입니다.

□ 보훈단체장뿐만 아니라 다양한 계층의 의견 수렴 필요에 대한 견해

- 이러한 보훈단체의 장은 각 단체를 대표하면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회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분들로서 단체장들의 의견이 곧 회원들의 의견으로 볼 수 있어 이분들을 간담회 대상으로 하였으며,
- 이와는 별도로 일반국가유공자에 대하여는 간담회 대신 보상금 적정수준에 대한 설문조사와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 아울러 여론 수렴은 위원님 지적대로 보훈 단체장뿐만 아니라 보훈업무 심사평가위원 및 퇴직 보훈공무원 등 보훈업무 전문가 등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4. 국가유공자 취업 지원의 활성화와 관련하여

-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기능직공무원 채용·퇴직의 변동사항 파악방법과 취업 알선을 극대화하는 방안은?
- 최근 몇 년간 취업실적이 전무한 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실태조사 및 조사결과에 따른 대책
- 기능직공무원 우선 채용과 관련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 2003년 신규 반영된 취업보호 예산이 취업 활성화에 요긴하게 사용되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우선 기능직공무원 채용률 제고를 위해 행정 각 부·처에 국가유공자 등 우선 채용을 내용으로 하는 국무총리훈령(제393호)을 철저히 이행토록 촉구하고, 국가보훈처장의 서한문 발송 등 다각적인 채용 협조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 기능직공무원으로 국가유공자를 1명도 채용하지 않은 11개 기관에 대하여는 그 이유 등 실태를 분석한 후 임용자격 구비자를 추천하고 기관장 등과 직접 협의하여 우선 채용률을 제고할 계획입니다.
- 이와 함께 기능직공무원 취업 희망자명단을 임용자격 구비 여부 등을 확인하여 별도 관리토록 하고, 우선채용 적격자를 월별로 명단을 통보하여 채용을 협조하겠습니다.
- 또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의 기능직공무원 채용계획 정보를 적기에 입수하여 자격요건자들에게 응시토록 안내함과 동시에 현행제도를 보완하고 우선채용 희망자명단을 인터넷에 등재하여 국가기관 등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지방자치단체의 우선 채용률 제고를 위해서는 2002. 10. 11. 부자치단체장 회의 시 안건으로 상정하여 국가유공자 등 우선채용을 협조하였으며, 지방 보훈관서에서도 특별 실태조사 후 그 결과를 분석하여 개별적으로 협조를 하도록 하는 한편
- 실태조사 결과, 우선 채용률이 낮은 기관 등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국가유공자 등 채용 협력을 추진하겠습니다.
- 국가기관 등의 우선채용 특별 실태조사에 있어서는 1·2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우선 1단계로 10. 17~10. 26까지 국가기관·중앙행정기

- 관·광역자치단체 등 89개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하였고, 2단계로 1단계 조사에서 제외한 모든 기관(1251개 기관)에 대하여 11. 20~12. 20까지 서면 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 조사 시에는 2000년 이후 기능직공무원 총 채용·퇴직 실태와 국가유공자 등 우선채용 추천 및 채용실적을 파악함과 동시에 연금관리공단에 협조하여 기능직공무원 퇴직·신규채용자를 확인할 계획입니다.
 - 특히 법령 보완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취업률 제고를 위해 기능직공무원 결원 시 국가보훈처에 통보토록 하는 내용 등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40조)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함과 아울러
 - 현행 국가기관 등 실태조사서 내용이 국가유공자 채용·퇴직 위주로 되어 있어 기능직공무원 결원 등 파악이 어려운 면이 있으므로 일반인과 국가유공자 등을 포함한 채용·퇴직사항을 조사·파악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한편, 2003년도 신규 반영된 취업 보호 예산은 능동적인 취업 알선을 위한 기업체의 장 및 취업자 등과의 간담회 개최, 기업체 실태조사비 등 여건이 열악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등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게 효율적으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